



Green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개정일 2025년 11월 25일

발행처 스포츠안전재단

발행인 이사장 박장순

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정진우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대표변호사 송영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사 김성수

기획편집 안전관리실 안전연구팀

연구기관 한국능률협회플러스

안전연구팀

TEL 02-2023-5561

FAX 0507-0303-5562

E-Mail imtw@sports.or.kr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테尼斯경기장 3 층

www.sportssafety.or.kr

※ 본 매뉴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매뉴얼은 스포츠안전재단이 연구·개발한 저작물로 무단 복제·재가공 유통을 금합니다.

CONTENTS

I	1.0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이해	006
개요	2.0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활용	042
<hr/>		
II	3.0 체육 행사 종목/유형/기간 및 참석 예정 인원	058
체육 행사 전	4.0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074
	5.0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역할	084
	6.0 안전요원, 의료요원 등 각 인력 확보 및 배치 방안	090
	7.0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방안	102
	8.0 관계 기관 협조 필요사항 및 협조방안	108
	9.0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116
	10.0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128
	11.0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140
<hr/>		
III	12.0 체육 행사 안전관리(운영)	164
체육 행사 중	13.0 체육 행사 안전관리(구역)	190
	14.0 체육 행사 안전 점검	216
<hr/>		
IV	15.0 체육 행사 안전관리 현황 종합 검토	230
체육 행사 후	16.0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	234
<hr/>		
※ 별첨: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244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개요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1.0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이해

- 1.1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법적 책임 및 의무
- 1.2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
배경 및 필요성

2.0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활용

- 2.1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적용 범위
- 2.2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활용 방법



1.0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이해

-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은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 다중인파에 대한 리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체육 행사 주최 및 주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체육 행사 개최 시 체육 행사 전·중·후에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됨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을 통해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와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법적 의무 강화 요소 내용을 이해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실행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의 이해 파트는 체육 행사 주최 및 주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조해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됨
-

1.1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법적 책임 및 의무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체육 행사와 관련된 안전관리상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룸

1.2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로 인한 관심도 제고, 주요 판례 분석, 국내 체육 행사 안전관리 지침 부재 등을 배경으로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함

1.1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법적 책임 및 의무

-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 및 주관자, 보안업체, 지자체,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은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안전공제(보험) 관련법(체육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연법, 대상별 복지법(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시민재해), 경비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체육 행사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주요 법령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체육 행사 개최 시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할 안전관리 관련 규제와 제도 등을 포함함
-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 및 주관자와 이해관계자 등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 주요 법령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 체육 행사 안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작되었지만 관련 법령 및 판례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참고자료라는 점을 인지해야 함

가.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법령으로서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요 항목, ▲체육 행사 안전교육 대상/내용/교육 시간, ▲체육 행사 안전점검 내용 및 안전점검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체육 행사 주최 및 주관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법적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1천명 이상 참여(관중 포함)가 예상되는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 점검의무
- (안전관리계획)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 개요, 안전 인력 확보, 관계 기관 협조, 사고 발생 시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내용 규정
-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활용 안전점검 실시(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13서식)
- (관련 법 점검) 본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령들은 매뉴얼이 작성된 2025년 9월 기준이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따라서, 체육행사 개최자는 법제처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함

표 1. 국민체육진흥법(안전관리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법 제13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 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 · 점검 방식 등에 관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표 2. 국민체육진흥법(안전관리 세부 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행령 제11조의9>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p>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p> <p>②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 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 예정 인원 2.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3.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및 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성명 및 역할 4.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5.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6.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7.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8.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p>③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체육 행사 개최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p> <p>④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⑤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p>

표 3.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내용(문화체육관광부 FAQ)

구분	주요내용
1천명 이상 인원 밀집 체육 행사 규모 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 대상 인원은 체육 행사 운영인력과 행사에 참여가 예상되는 선수, 지도자, 관계자, 관중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 체육 행사의 ‘행사 장소 내 순간 최대 밀집 인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등 개정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 다만, ‘행사 장소 내 순간 최대 밀집 인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체육 행사가 여러 장소에서 개최되어 각 장소의 순간 최대 밀집 인원 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개정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권고한다.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예시</p> <p>○○체육 행사가 A, B, C 장소에서 개최되며, 각 장소별 순간 최대 밀집 인원수가 400명일 경우, ‘○○체육 행사의 총 순간 최대 밀집 인원 수는 1,200명’이 되므로 이런 경우 안전관리 조치 권고</p> </div>
법령 적용 체육 행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이 적용되는 체육 행사의 범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정의 조항을 바탕으로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이 주목적이 되는 행사를 말한다.
1천명 미만 인원 밀집체육 행사의 법적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명 미만’의 행사는 법에서 규정하는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한 체육 행사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 스포츠안전공제(보험) 관련법

- 체육 행사 주최 및 주관자는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체육인복지법 제9조, **스포츠클럽법**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체육 행사 개최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함
- 체육 행사 개최 시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가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이 어려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육 행사 주최 및 주관자는 안전계획수립 시 반드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확인해야 함(11.5항의 ‘나. 스포츠안전공제(보험) 의무가입’ 참조)
- 체육 행사 개최 시 보험 가입 의무 위반은 체육 행사 주최 및 주관자가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정적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누락한 경우 발생함
 - ▷ 특히 소규모 체육 행사나 아마추어 체육 행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함
 - ▷ 체육 행사 주최 및 주관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표 4. 생활체육진흥법(보험 가입 의무화)

구분	주요내용
<법 제12조> 보험 등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 보험 가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표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의무보험)

구분	주요내용
<법 제3조> 정의, 재난안전 의무보험	<p>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p>
<법 제76조의2> 재난안전의무 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할 기준 등	<p>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2.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게을리 한 자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입의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7.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시행령 제84조의2> 재난안전의무 보험의 보상 한도	<p>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표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보험 가입 의무화)

구분	주요내용
<법 제26조> 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7. 체육인복지법(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의무화)

구분	주요내용
<법 제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학생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입대상,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8. 스포츠클럽법(보험 가입 의무화)

구분	주요내용
<법 제10조>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안전관리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안전점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 및 위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등을 포함함
- 체육 행사 개최자 및 행사 개최와 관련된 시설의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정기적 실시 : 반기마다 실시
 - ▷ 체육시설 안전점검 위임·위탁 대상과 범위
 - ▷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교육
- 체육시설을 보유한 자가 체육 행사를 운영할 경우 또는 체육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개최자의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이 임대하는 시설 내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함

표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안전관리 조항)

구분	주요내용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p>
<법 제4조의3> 체육시설 안전점검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법 제4조의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법 제4조의8>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표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전관리 세부 조항)

구분	주요내용
<시행령 제2조의3> 체육시설 안전점검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2조의4> 위임·위탁 대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시행령 제2조의5>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구분	주요내용
<시행령 제2조의5>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 · 위탁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p>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 ·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체육 행사 개최 시 요구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다중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 조치’ 법조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새롭게 추가되어 시행(25년10월)됨으로서 체육 행사 전·중·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인파의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법적 규정을 강화하고 있음
- 지자체 및 체육 행사 개최자는 체육 행사 운영 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 및 다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체육 행사장의 수용능력’,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표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 조치)

구분	주요내용
<법 제66조의12>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시설·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제31조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과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0조와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및 제6항에 따른 권고와 협조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마. 공연법

- 공연법 안전관리는 공연장의 안전한 운영과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연장 운영자의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교육 실시 등에 대한 법적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체육 행사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공연법 위반 사례는 주로 재해대처계획 미흡, 안전관리 소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 체육 행사 개최자는 행사 내 공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연장 운영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안전진단을 받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다중인파가 예상되는 경우 화재예방, 인명피해 방지 조치,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체육 행사 운영 시 공연장 설치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대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안전시설이 파괴되어 행사 참여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연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표 12. 공연법(안전관리 예방 및 안전관리 법적 의무 조항)

구분	주요내용
<법 제11조> 재해예방조치	<p>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법 제11조의2> 안전관리비	<p>①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 제11조의3> 안전관리조직	<p>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들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p> <p>②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 제11조의4> 안전교육	<p>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표 13. 공연법 시행령(안전관리 예방 및 안전관리 법적 의무 세부 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행령 제9조> 재해대처계획 신고 등	<p>①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p>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시행령 제9조의2> 안전관리비	<p>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구분	주요내용
<시행령 제9조의2> 안전관리비	<p>② 공연장운영자 등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3. 보호장비의 구입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 안전 관련 보험 7.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hr/> <p>③ 공연장운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연장운영자: 매년 2월 말일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hr/> <p>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설치 기준(공연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1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연장운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나. 객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div>

구분	주요내용
<시행령 제9조의3> 안전관리조직	<p>②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들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시행령 제9조의4> 안전교육	<p>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연자 : 공연 전 1시간 이상 2. 안전총괄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3. 안전관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p>②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들은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③ 안전교육의 내용은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참조한다.</p>

바.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체육 행사 참여 및 체육 행사 관람이 증대됨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자 등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및 안전대책 마련, 장애인석 마련 등 체육 행사 관련 안전조치와 장애인 지정석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 **편의시설** : 장애인의 체육 시설 안전 이용
 - ▷ **안전대책 강구** :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대비 장애인을 위한 피난용 통로 확보, 점자 등 장애인용 안내물 설치 등
 - ▷ **문화시설 및 문화생활** :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접근 지원 및 보장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며, 안전사고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체육 행사 개최자가 안전 대책을 미비하게 마련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장애인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등 관련 조항을 위반할 수 있음

표 14. 장애인복지법(안전관리를 위한 장애인의 권리, 편의시설, 안전대책 및 문화생활)

구분	주요내용
<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법 제23조> 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물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노인복지법

- 고령자 비율 증대 및 고령자의 체육 행사 참여와 관심도 제고에 따른 노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 체육 행사 개최자 등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준수해야 함
- 체육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시설 이용 등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시 체육 행사 개최자의 노인복지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노인의 안전을 위해 체육 행사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체육 행사 개최 시 통로에 있는 적치물로 인하여 노인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을 경우, 체육 행사 개최자는 장비나 시설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노인의 안전관리 예방과 관련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표 15. 노인복지법(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시책)

구분	주요내용
<법 제4조의2> 안전사고 예방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p> <p>②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제2조> 안전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시민재해)

- 체육 행사와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체육 행사 개최 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체육 행사 개최자를 비롯하여 안전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법률임
- 체육 행사 중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중대재해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조치 등 안전경영체계 마련을 철저히 해야 함
- 체육 행사 전 개최자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비, 체육 행사 진행 중 위험 요소 사전 제거 실패 등 관리 결함으로 인해 참가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 행사 주최 측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실시, 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함
 -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함
 - ▷ 체육 행사 전 잠재적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함
 - ▷ 파악된 위험성에 대한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표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시민재해 정의 규정 및 공중이용시설 범위)

구분	주요내용
<법 제2조> 중대시민재해	<p>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p> <p>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p> <p>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p> <p>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p>
<시행령 별표2> 공중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행사 관련 공중이용시설 범위 <p>18.「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p> <p>1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p>
<시행령 별표3> 공중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표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구분	주요내용
<시행령 제10조>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p>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p>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p>4.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p>5.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관련된 규정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p>

표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

구분	주요내용
<시행령 제11조>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p> <p>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연 1회 이상(위탁 점검 여부 포함)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

자. 경비업법

- 체육 행사 개최자는 행사 참여자가 1백 명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다중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경비원 배치를 요청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경비업법 관련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체육 행사 개최자가 법적으로 명시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경비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경비업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경비업법은 경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행사 개최자는 이러한 경비업체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협력해야 함
- 체육 행사 개최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원 배치를 요청받았음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통지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대규모 인원이 밀집할 수 있는 행사에서 현장 상황에 대한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 인력 배치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표 19. 경비업법(경비업자 경비 요청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내용
<법 제2조> 정의	1.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장소를 말한다.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법 제7조의2>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②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자나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행사장등에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행사의 주최자나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행사장 등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사개최일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1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체육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 및 응급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춰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체육 행사 개최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는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로서 주로 응급의료 인력 미배치, 응급의료 장비 미비, 응급차 미확보 등이 주요 위반 사항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체육 행사 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배치된 응급차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체육 행사 개최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따라서 소규모 체육 행사일 경우에도 응급 사고 발생은 참여자들의 생명과 연계되므로 체육 행사 개최자는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출 것을 권고함

표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응급장비 확보 의무)

구분	주요내용
<법 제54조의3>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7조의3> 대규모 행사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44조의2>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54조의3 및 영 제27조의3에 따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의료 인력: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응급이송수단: 응급차등 1대
<법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p>
<시행령 제26조의5>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p>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p>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난구조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을 규정하여 체육 행사 운영 시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 기준 위반 사례로는 유도등의 설치 위치 부적절, 비상 전원 미비, 유도표지의 누락이나 오기입, 화재 시 점등 불량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소방점검 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따라서 체육 행사 개최자는 체육 행사 안전계획수립 시 유도등이나 유도표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육 행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표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구분	주요내용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액석유도등”이란 액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입체형”이란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을 말한다. “3선식 배선”이란 평상시에는 유도등을 소등 상태로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충전하고, 화재 등 비상시 점등 신호를 받아 유도등을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는 방식의 배선을 말한다.

표 22. 법적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항목	설명	점검 여부
국민체육 진흥법	참여자 수 기준	• 1천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점검의무	<input type="checkbox"/>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 예정 인원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역할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안전교육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input type="checkbox"/>
생활체육 진흥법	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지부와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손해보험이나 공제 의무 가입 	<input type="checkbo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 의무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보상 한도 지정(사망 시, 1억 5천 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 공간의 수용능력 -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의무 가입 	<input type="checkbox"/>

구분	점검항목	설명	점검 여부
체육인 복지법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동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 위해 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 훈련 및 운동경기 대회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의 국가 가입 지원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클럽법	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의무 가입 	<input type="checkbox"/>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의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반기마다) 	<input type="checkbox"/>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시행 	<input type="checkbox"/>
공연법	재해 예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대처계획 수립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 사항 포함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연비용에 반영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포함하는 안전관리조직 구성 	<input type="checkbox"/>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 실시 	<input type="checkbox"/>

구분	점검항목	설명	점검 여부
장애인 복지법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정책 강구 •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해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책 강구 	<input type="checkbox"/>
	안전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장애인을 위한 피난용 통로 확보 • 점자/음성/문자 안내물 설치 및 긴급 통보체계 구축 등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강구 	<input type="checkbox"/>
	문화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 복지법	안전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 	<input type="checkbox"/>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공중이용시설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관련된 규정 사항을 반기1회 이상 점검 	<input type="checkbox"/>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연 1회 이상(위탁 점검 여부 포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 	<input type="checkbox"/>

구분	점검항목	설명	점검 여부
경비업법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행사의 주최자나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행사장 등에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요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상 참여자가 1천명 이상이 예상될 시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확보 	<input type="checkbox"/>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input type="checkbox"/>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의 응급장비 구비 	<input type="checkbox"/>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피난유도선 등을 설치 	<input type="checkbox"/>

1.2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 배경 및 필요성

- 체육 행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체육 행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2025년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 2025년 7월 27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안내 간판 구조물 추락 등 체육 행사장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체육 행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 행사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의무화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연구집(2023년)’의 체육 행사 안전사고에 대한 주요 판례에 따르면, 체육 행사 개최자(또는 주최 및 주관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중요함을 판시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체육 행사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은 종목별, 대상자별, 군중밀집 등 부문별로만 보급되고 있으며, 영국 SGSA와 같은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체육 행사 개최 흐름에 따른 종합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 지침은 부재한 상황임

【참고】 SGSA(Sports Grounds Safety Authority) 및 Green Guide

구분	주요내용
기관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Sports Grounds Safety Authority(SGSA)는 1989년 영국 힐스버러 참사 이후 경기장 안전 강화를 위해 Football Licensing Authority(FLA)를 전신으로 하여, 이후 대규모 이벤트 경기장 관리까지 역할을 확대한 SGSA로 개편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관임. SGSA는 스포츠안전과 관련된 선진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 체육 행사 안전관리 기준 수립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됨
역할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장 안전관리 감독 및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라이선스 기준 제시 - 경기장 안전점검 및 컨설팅 - 경기장 안전 인증 안전정책, 안전지침 개발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종합가이드 발간(그린가이드 등) - 군중관리 등 안전기술정책 연구 및 보급 교육 및 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요원·관리자, 경기장 운영자 교육 지원 - 지방정부, 스포츠단체 및 국제기구 교육 지원·컨설팅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 가이드(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는 경기장 관리, 운영, 설계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지침으로 경기장 내 모든 사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항상 운영 주체에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한 경기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안전관리 요소를 다루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관중 수용능력 산정, 군중 관리, 구조·시설 요건, 안전 운영체계, 응급의료·화재·통신 등 안전 설비 기준 등 경기장 안전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안전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따라서 본 매뉴얼은 체육 행사 주최 및 주관자가 행사 준비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시간 흐름 순으로 구성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 총체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가. 체육 행사 주관(주최)자 안전관리 책임 의무

- 체육 행사 주최 및 주관자는 대회 참가자들(선수, 관중 및 제3자 등)이 신체적 생명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고, 대회 안전요원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 대회 요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를 법원은 인정하고 있음
- 체육 행사 주최자(자신의 이름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자)와 체육 행사 주관자(대회를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 체육 행사 주최·주관자에게 행사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로서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체육 행사 주최자와 주관자가 별개의 단체일 경우, 주최자에게 스스로 직접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관리할 의무 외에도 주관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휘·감독할 의무까지 인정하고 있음
- 체육 행사 주최자는 스스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론, 행사 주관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의무를 과실 없이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체육 행사 주관자와 공동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행사 주관자의 주의의무 수준 이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함

표 23.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법적 책임 유형

구분 ¹⁾	주요내용
민사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 책임
형사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손과 또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 벌금, 금고, 징역 등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당하는 책임
행정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도자 자격, 선수선발권 등 제반 행정적 권한을 정지 또는 박탈당하는 책임

1)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나. 체육 행사 주관(주최)자 안전관리 사고사례²⁾

표 24. 줄다리기 대회 사고사례 (2014년)_관중에 대한 민사적 책임

구분	주요내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다리기 대회를 취재하던 기자가 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다리기 대회 취재 기자가 줄다리기 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데, 법원이 해당 상해는 체육 행사 주최자가 대회 시작 전 대회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 보아 행사 주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행사 주최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은 체육 행사 주최자에게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촬영기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행사 주최자는 경기 종목의 특성, 외부인의 대회 출입 목적, 외부인의 동선 등을 예측하여 대회 진행 중 참가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촬영기자 등 외부인에 대한 안전조치 또한 주의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표 25. 자전거 대회 사고사례 (2015년)_선수에 대한 형사적 책임

구분	주요내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대회 참가자들이 내리막 코스에서 이탈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대회 참가자들이 내리막 코스에서 가속을 이기지 못하고 코스를 이탈하여 계곡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법원이 해당 체육 행사를 주관한 회사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체육 행사 주관사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대회 주최 측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판결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행사 주최자는 대회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고위험이 큰 코스에 위험을 알리는 입간판이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펜스 등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2)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사고 주요판례 연구」, 2023

표 26. 야구 경기 사고사례 (2016년)_선수에 대한 민사적 책임

구분	주요내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구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선수가 악송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구 경기 중 선수가 던진 공이 다음 경기를 위해 대기 중이던 다른 팀 선수를 충격하여 공을 맞은 선수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이 공을 던진 선수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하였으나, 행사 주관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행사 참여자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및 의무 이행 판단 기준 체육 행사 주관자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판결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행사(야구 경기) 주관자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파울볼, 악송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기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장 안팎을 구분하는 펜스를 높이 설치하고 참가자의 대기구에 보호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대기구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

표 27. 배드민턴 대회 사고사례 (2016년)_선수에 대한 민사적 책임

구분	주요내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드민턴 대회 참가자가 매트 위의 스티커 부착 부분에 착지하다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는 상해를 입은 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드민턴 대회에서 참가자가 매트 위 스티커 부분에 착지하다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는데, 법원이 해당 상해는 대회 주관자와 매트 제공자의 사고 방지 및 안전한 매트 제공·설치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 보아 대회 주관자와 매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 주관자와 매트 제공자의 주의의무 대회 주관자 판단의 요건
판결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 주관자와 매트 제공자는 이 사건 대회의 선수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매트를 제공·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대회 주관자나 대회 시설 제공자는 대회 시설에 대회 후원사 또는 스폰서를 홍보할 경우 그 표시가 선수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





2.0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활용

-
- 종목별 체육 행사 개최자는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종목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행사가 계획한 바와 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체육 행사 종료 후에는 미흡한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 체육 행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2.1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적용 범위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적용 범위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분류하는 스포츠종목과 실내/실외/실외(이동형), 참여형/관람형, 1천명 이상/1천명 미만의 모든 체육 행사에 적용됨
- 체육 행사는 실내 또는 실외에 따라, 참여자가 선수인 경우와 관람객인 경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체육 행사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음
 - ▷ 실내 체육 행사/실외 체육 행사/실외(이동형) 체육 행사
 - ① **실내 체육 행사:** 농구, 배드민턴, 탁구, 배구 등 실내에서 진행되는 체육 행사로서 날씨나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력이 실외 체육 행사 대비 낮음
 - ② **실외 체육 행사:** 야구, 축구, 골프 등 실외에서 이뤄지는 체육 행사로서 날씨나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력이 실내체육 행사 대비 높음
 - ③ **실외(이동형) 체육 행사:** 마라톤, 걷기, 철인3종 등 시설 외 장소를 이용하는 체육 행사로서 광범위한 장소를 사용함에 따라 환경의 영향이 높음

표 28. 실내·실외·실외(이동형) 체육 행사 유형

구분	실내	실외	실외(이동형)
스포츠 종목	배구, 농구,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유도 등	축구, 야구, 인라인스케이트, 육상, 럭비 등	걷기, 마라톤, 패러글라이딩, (도로)사이클, 등산, 철인 3종 등
활동 장소	지붕으로 폐쇄된 시설	지붕이 없는 폐쇄된 시설	시설 외 장소
특징	제한된 시설/ 장소 이용, 환경(재난)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음	제한된 시설/장소 이용, 환경(재난)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광범위한 장소 이용, 환경(장소)영향이 높음

▷ 참여형 체육 행사와 관람형 체육 행사

- ① **참여형 체육 행사:** 선수가 아닌 일반인 또는 체육 동호인 등이 참여하므로 참여자와 관람객의 경계가 거의 없으며, 관람과 참여의 활동이 혼재되는 생활체육 행사와 유사한 체육 행사에 해당
- ② **관람형 체육 행사:** 프로, 국제 스포츠대회 등 전문체육 행사와 유사한 체육 행사로서 관람과 참여의 물리적 공간이 구분되는 체육 행사에 해당

▷ 1천명 이상/1천명 미만 체육 행사

-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1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매뉴얼은 해당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행사 유형은 참여 인원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함
- ② 1천명 미만의 행사는 법에서 규정하는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한 체육 행사를 위해 본 매뉴얼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함³⁾

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의2)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2024

2.2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활용 방법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이 모든 상황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나, 체육 행사 개최자는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수립해야 함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체육 행사 전·중·후에 따른 가이드를 참고하여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수립할 것을 권고함

가. 종목별 가이드

- 종목별 체육 행사 개최자는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종목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에 포함된 기본 원칙들은 경기장에서 열리는 모든 체육 행사에 적용 가능하나, 규모, 유형 및 관객 특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이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 따라 매뉴얼 적용이 어려울 경우, 스포츠안전재단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함

나. 체육 행사 전·중·후 가이드

- (체육 행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세부 항목별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표 29. 체육 행사 전 가이드

구분	주요내용
체육 행사 참석 예정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행사 개최자는 일 최대 참여 인원, 면적당 최대 수용인원,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 참가자 특성을 파악해야 함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구역에서는 종목별 경기구역 규정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함 참석 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경기구역 적정시설을 선정하고 체육 행사장의 시설 안정성을 파악해야 함 경기 외 구역에서는 필수로 구비해야 할 안전요소(의무실 및 응급차 대기장소 등)와 경기 외 구역 시설 안정성을 파악해야 함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안전요원, 의료요원 확보 및 배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요원, 보안요원, 의료요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안전요원 등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인력별 전체 필요 수 산정을 해야 함 출입구와 사고 우려 지역을 고려한 배치계획 안전요원간 연락수단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이 법정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요원, 의료요원 등에 체육 행사 전 브리핑을 실시해야 함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시설점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함
관계 기관 협조 필요사항 및 협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행사 전,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관계 기관을 정의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관계 기관과 주최(주관)단체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해야 함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기타 안전사고에 대해 발생 방지 방안을 수립해야 함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 및 안전 관련 인력과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안전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내용을 고려하여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 관련 예산을 적절히 확보해야 함

- (체육 행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용이 현장에 적용 및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세부 항목별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표 30. 체육 행사 중 가이드

구분	주요내용
안전관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시작 전에 참석 일정 및 참석 인원 변동사항을 파악해야 함 행사에 투입되는 안전물자가 계획한 바와 같이 공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참여자에 대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밀집이 예상되는 구역 및 동선에 안전요원 등을 다수 배치해야 함 의료, 소방 및 응급 등 안전구역 설정을 검토해야 함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 관련 인력이 법정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 관련 인력의 업무분장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 관련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대응방안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안내표 등 안전정보 안내물 등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안전관리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주차구역, 출입구역, 이동구역, 관람구역, 부대시설, 접근불가구역, 비상구역, 미디어 구역, 경기구역 및 시설 안전물자 등에 대해 관람객과 선수 등 동선 분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참여자의 체육 행사장 내 원활한 흐름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 등 방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체육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설비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의료 물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체육 행사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체육 행사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경기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체육 행사 지속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함 체육 행사가 종료되면,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요원 등에 대해 체육 행사 전체 내용에 대해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설명해야 함

- (체육 행사 후) 체육 행사 안전 관련 자료 수집 및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세부 항목별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표 31. 체육 행사 후 가이드

구분	주요내용
체육 행사 안전 관련 자료 수립	체육 행사 종료 후,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등을 통해 안전관리 내용이 계획한 바와 같이 실행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행사 중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잘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도출해야 함
차기 체육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체육 행사 종료 후, 행사 진행 내용에 대해 미흡한 부분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개선 방안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선방안 분석보고서는 문서화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차기 체육 행사 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야 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체육 행사 전

3.0 체육 행사 종목/유형/기간 및 참석 예정 인원

- 3.1 체육 행사 개요
- 3.2 참석 예정 인원 관리

4.0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 4.1 경기구역
- 4.2 경기 외 구역

5.0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역할

- 5.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수행 업무
- 5.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6.0 안전요원, 의료요원 등 각 인력 확보 및 배치 방안

- 6.1 안전요원, 보안요원 수행 업무(제록 변경)
- 6.2 의료요원(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수행 업무
- 6.3 안전요원·보안요원·의료요원 확보 계획
- 6.4 안전관리 인력 배치 계획

7.0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방안

- 7.1 안전교육 계획 수립
- 7.2 안전점검 계획 수립

8.0 관계 기관 협조 필요사항 및 협조방안

- 8.1 관계 기관 정의 및 역할
- 8.2 관계 기관 협조

9.0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 9.1 안전사고 유형 분석
- 9.2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 9.3 기타 고려사항

10.0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 10.1 안전사고 대응 체계 수립
- 10.2 연락 체계 구축
- 10.3 사고별 시나리오 수립

11.0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 11.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시기
- 11.2 통합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성
- 11.3 안전물자 현황 파악
- 11.4 참가자 서약서
- 11.5 안전예산 편성
- 11.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공유



체육 행사 전 체크리스트

3.1 체육 행사 개요 059

- 다. 체육 행사 일정
- 최신 버전의 체육 행사 세부 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 및 공유되었는가?
 - 개별 행사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었는가?

3.2 참석 예정 인원 관리 064

- 가. 일 최대 예상 참여자 수
- 과거 동일 또는 유사 체육 행사 실적 및 행사장 참여자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대 예상 참여자 수를 예측하였는가?
- 나. 체육시설 수용인원 산정
- 참여자 및 경기(대회), 행사장 특성을 고려하여 행사장 수용규모를 산정했는가?
 - 체육 행사 수용인원 산정 시, SGSA 등의 권고안(스탠딩석 기준 1평방미터당 4.7명 상한)을 준용하여 산정했는가?
- 다.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수
- 주차구역, 출입구역 및 이동구역에 대한 과밀화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가?
- 라. 참여자 특성 파악
- 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는가?
 - 선수 장비(양궁 및 스케이팅 등)와 관중 특성(반사회적 행동 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했는가?

4.1 경기구역 075

- 나. 경기구역 선정 시 고려사항
- 법령 및 종목별 국내외 규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경기구역 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는가?

4.2 경기 외 구역 078

- 가. 경기 외 구역의 정의 및 구역별 안전관리 고려사항
- 8가지 경기 외 구역에 대해 구역별 필수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는가?
- 나. 경기 외 구역의 안정성 사전 파악
- 시설관리 주체가 법적 요건에 근거하여 시행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확보하여 체육 행사장의 안정성을 사전에 파악하였는가?
 - 체육 시설 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행사에 대해 시설관리 주체 등이 위험구역과 제한구역 등을 사전에 분류하였는가?

5.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수행 업무 085

- 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 지식/기술/태도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5.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088

-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 안전관리책임자는 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보유했으며,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임직원으로 지정했는가?
 - 주최기관, 주관기관 및 대행기관 등 참여하는 단체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적절히 지정했는가?

6.1 안전요원, 보안요원 수행 업무 091

- 가. 안전요원 직무
- 안전요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했는가?
- 나. 보안요원 직무
- 보안요원은 참여자 안전을 위해 보안 검색 및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을 적절히 보유했는가?
- 다. 안전요원 안전핸드북 및 행동요령
- 체육 행사장 내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안전핸드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경기 중 향시 휴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 안전요원은 행동요령을 참조하여 안전요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6.2 의료요원(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수행 업무 095

가. 의료요원 직무 의료요원은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을 적절히 보유했는가?

6.3 안전요원·보안요원·의료요원 확보 계획 097

- 가. 안전요원·보안요원·의료요원 확보 계획
- 체육 행사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요원, 보안요원 및 의료요원 등을 내외부 위탁을 통해 적절히 확보했는가?(SGSA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참여자 250명 당 안전요원 1명 확보 및 참여자 예상 인원이 1만명 넘을 시 의료요원 1명이 행사장에 반드시 상주)
 - 안전요원, 보안요원 및 의료요원 등에 대해 관련 자격 또는 수료증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6.4 안전관리 인력 배치 계획 099

-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배치 계획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해 행사 규모 및 행사 장소에 따라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 등에 대해 행사 규모 및 행사 장소에 따라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나. 의료요원 배치 계획
-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요원에 대해 행사 규모 및 행사 장소에 따라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7.1 안전교육 계획 수립 103

- 가. 안전교육 대상 선정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및 보안요원은 안전계획서 내 안전교육 이수 대상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그 외, 의료요원 등에게 체육 행사 및 안전관리 관련 브리핑을 계획하고 있는가?
- 나. 안전교육 계획
- 각 인력별 법정교육에 대한 세부 실행내용이 안전관리계획서 내 포함되어 있는가?

7.2 안전점검 계획 수립 106

가. 안전점검 계획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점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했는가?

-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위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8.2 관계 기관 협조 112

가. 관계 기관과의 협조 시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받을 계획을 마련했는가?

나. 관계 기관 협조 방법

-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시, 문서 수발신 증빙 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계획을 마련했는가?

9.2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119

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모든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형별 대응 기준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을 마련했는가?

- 재난 발생 가능성이 예상될 시, 행사 주최, 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및 전문기관(응급구조 및 경기장 시설 주체 등),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통해 협의하여 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가?

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사회재난으로부터 체육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재난 유형별 대응 기준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을 마련했는가?

- 재난 발생 가능성이 예상될 시, 행사 주최, 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및 전문기관(응급구조 및 경기장 시설 주체 등),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통해 협의하여 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가?

9.3 기타 고려사항 125

- 가. 응급처치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스포츠응급처치 매뉴얼에 제공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응급처치 대응 방안을 확보 및 운영하고 있는가?
- 나.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야구, 골프, 사이클 및 마라톤 등 종목별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발생 방지 방안을 마련했는가?

10.1 안전사고 대응 체계 수립 129

- 가. 안전사고 대응 체계도 화재, 심정지, 대형 낙상 및 군중 압사 등 생명 및 시설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 기관 등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구축됐는가?
- 나. 안전사고 대응 체계도 수립 시 고려사항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및 시설관리팀 등 외부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조체계가 구축됐는가?

10.2 연락 체계 구축 132

- 가. 내부 연락 체계 구축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주관단체 소속 임직원 및 대행사(인력, 시설 및 이벤트 담당 등) 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사전에 구축했는가?
- 나. 외부 연락 체계 구축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중 안전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및 시설관리주체 등과의 연락 체계를 확보했는가?

10.3 사고별 시나리오 수립 134

- 가. 사고별 행동요령 수립 체육 행사 개최자는 자연 및 사회재난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참여자의 행동요령을 마련했는가?
- 나. 사고별 안내방송 시나리오 수립 체육 행사 개최자는 자연 및 사회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체육 행사에 적용되는 안전사고별 안내방송 시나리오 대책을 마련했는가?

11.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시기 141

- 안전관리계획서는 체육 행사 개최 2주 전까지 수립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는가?

11.2 통합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성 142

- 가.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성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 조직체계, 주최기관, 주관기관 및 대행사 안전관리 인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했는가?
- 나. 조직체계 구성 시 고려사항
- 업무 분장 시, 특정 안전관리 인력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분배되지 않았는가?

11.3 안전물자 현황 파악 144

- 가. 안전물자 확보
- 체육 행사에 사용되는 안전물자의 확보 및 배치 계획을 수립했는가?
- 나. 안전물자 확보 시 고려사항
- 안전물자 확보 시, 법적 요구사항 및 체육 행사 현장을 고려하였는가?
 - 안전물자는 즉시 사용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점검하고 안전물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문서화하여 보관할 계획이 있는가?

11.4 참가자 서약서 146

- 가. 서약서 작성 및 주요 포함사항
- 참가자 서약서는 매뉴얼에서 제시한 필수 포함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는가?
 - 서약서 내용에 대해 사전 안내, 설명 후 인지, 동의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확인, 동의 절차 필수)
- 나. 서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서약서 작성 시 매뉴얼에서 제시한 유의사항이 모두 검토, 반영되었는가?

11.5 안전예산 편성 150

- 가. 안전예산 확보
- 체육 행사 안전확보를 위한 예산은 안전관리계획서 내 모든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 되었는가?
- 나. 스포츠안전공제(보험) 의무가입
- 관련 법령에 따라 스포츠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였는가?(예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대인담보 1.5억 이상)
- 다. 안전예산 편성 계획
- 안전예산 편성 시, 안전예산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예산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1.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공유 152

-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체육 행사 개최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언급한 8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했는가?
- 나. 안전관리계획서 공유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 관련 주요 인력에게 공유할 계획을 마련했는가?



3.0

행사 전

체육 행사 종목/유형/기간 및 참석 예정 인원

-
- ‘체육 행사 종목/유형/기간 및 참석 예정 인원’ 파트는 체육 행사 개요, 참석 예정 인원 관리 등으로 구성됨

 - “체육 행사 개요”는 체육 행사의 정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행사명, 행사일정, 세부 행사 일정 및 행사 유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참석 예정 인원 관리’는 일 최대 예상 참여자 수, 체육시설 수용인원 산정,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수, 참여자 특성 파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3.1 체육 행사 개요

- 체육 행사에 대한 개념은 각 단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 매뉴얼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체육 행사 전·중·후에 포함되는 참여자, 장소 및 물자 등과 역할 및 책임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체육 행사 유형은 활용 주체와 행사 장소에 따라 참여형과 관람형 체육 행사, 실내형, 실외형 및 실외(이동형) 체육 행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체육 행사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1천명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고 있음

가. 체육 행사의 정의

- ‘체육 행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의 정의 조항을 바탕으로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이 주목적이 되는 행사를 말함⁴⁾
- 영국 SGSA에서는 ‘체육 행사’를 스포츠, 오락 또는 다른 형태의 모임과 관계없이 일반인이 입장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를 의미한다고 정의함⁵⁾

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의2)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2024

5)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 “지역 축제”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 및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를 말함⁶⁾

표 3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구분	주요내용
<법 제2조> 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나. 행사명

- 체육 행사명은 유사 행사들과 구별되도록 고유하게 붙여진 이름임
- 체육 행사의 공식 명칭을 의미하며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서, 공문서, 홍보물 등 각종 매체에서 동일하게 표기해야 함

예시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제25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 대회, 2025 경기도교육감배 수영대회
- 2025 한화생명 시그니처 63 RUN, 제20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제6항)

다. 체육 행사 일정

- 통상적으로 체육 행사 일정의 경우 본 행사가 개최되는 당일부터 종료까지를 의미함
- 영국 SGSA에 따르면, 체육 행사는 첫 번째 운영요원이 입장하는 즉시 시작되며 마지막 운영요원이 퇴장해야 종료된다고 언급함⁷⁾
- 본 매뉴얼에서는 체육 행사 일정에 따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체육 행사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영국 SGSA와 동일한 개념으로 서술함
- 체육 행사 일정은 행사 규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기운영, 방송, 관중관리, 관중경험, 보안, 의견 등에 영향을 끼침. 따라서 최신 버전의 체육 행사 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공유할 것을 권고함

라. 세부 행사 일정

- 세부 행사 일정은 체육 행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각 활동의 진행 시간, 장소, 참여자, 세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간표를 말함
- 기존의 행사 일정을 보다 구체화한 문서로, 개별 행사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 세부 행사 일정은 경기 운영 시간, 경기장 구역 분리, 현장 안전요원 배치, 방송중계 및 다중 인파 사고예방 등을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에 따라 계획된 일정대로 행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대체할 수 있는 행사 일정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야 함
- 다중인파 참여가 예상되는 마라톤, 걷기대회 등과 같은 체육 행사의 경우 참여자를 분산할 수 있도록 세부 행사 일정(소집, 출발의 시간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

7)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예시

구분	날짜	시간	내용	비고
행사 시작	0. 0.(-)	00:00~00:00	첫 번째 안전요원 입장	
		00:00~00:00	언전요원 집합 및 교육시행	
		00:00~00:00	근무 위치 배치	
식전 행사	0. 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개회식	0. 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종목별 경기	0. 0.(-)	00:00~00:00	5km 참여자 대기	
	0. 0.(-)	00:00~00:00	5km 참여자 출발	
	0. 0.(-)	00:00~00:00	10km 참여자 대기	
	0. 0.(-)	00:00~00:00	10km 참여자 출발	
시상식	0. 0.(-)	00:00~00:00		
행사 종료	0. 0.(-)	00:00~00:00	VIP 퇴장	
	0. 0.(-)	00:00~00:00	선수 및 관중 퇴장	
	0. 0.(-)	00:00~00:00	안전요원 디브리핑 마지막 안전요원 퇴장	

마. 행사 유형의 구분

- 본 매뉴얼에서는 '2.1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적용 범위'에 따라 체육 행사 유형을 참여자들의 행사장소, 참가 형태, 행사 규모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구분함
 - ▷ **행사장소:** 실내/실외/실외(이동형)
 - ▷ **참가 형태:** 참여형/관람형
 - ▷ **행사 규모:** 1천명 이상/1천명 미만

3.2 참석 예정 인원 관리

- 체육 행사의 유형에 따라 과거 동일 또는 유사 체육 행사 실적, 경기별 입장권 판매량 정보 및 참여자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 최대 예상 참여자 수를 예측해야 함
- 체육 행사 수용인원 산정 시, SGSA의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기준 준용을 권고하며, 행사장 최종 수용 인원이 결정되면 결정된 수용 인원보다 많은 참여자를 입장시켜서는 안됨
-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은 주차구역, 출입구역, 이동구역 및 퇴장구역이며, 참여자 과밀 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구역 및 퇴장구역의 흐름률은 SGSA의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기준 준용을 권고함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참여자 성별, 연령 및 장애 여부 등과 선수의 장비 특성 및 관람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가. 일 최대 예상 참여자 수

- (공통) ‘일 최대 예상 참여자’는 행사 운영 인력과 행사 참여가 예상되는 선수, 지도자, 관계자, 관중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을 의미함⁸⁾

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의2)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2024

- (참여형 체육 행사) 경기장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행사의 경우 과거 동일 또는 유사 체육 행사 실적 및 행사장 참여자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 최대 예상 참여자 수 예측
- (관람형 체육 행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체육 행사의 경우 경기별 입장권 판매량 정보, 행사장 관중 수용능력 등을 활용하여 일 최대 예상 참여자 수 예측
- (관람형 체육 행사) 경기 빈도가 높지 않은 관람형 체육 행사(국가대항전 등)는 과거 유사 체육 행사 실적으로 일 최대 예상 참여자 수 예측

나. 체육시설 수용인원 산정⁹⁾

- (공통) 이 파트의 주요 목적은 체육 행사장 내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인원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며 경기장 각 구역 또는 전체 최종 수용 능력을 산정하는 것임
- (공통) 참여자가 대규모이고 행사장에 빠르게 모이며 행사장 이동 경로가 협소하고 단일 이동 경로로 몰릴 경우, 행사장 수용규모는 해당 면적에 대한 참여자 수용능력보다 낮게 산정되어야 함
- (공통) 「Introduction to Crowd Science¹⁰⁾」에 따르면, 참여자가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경우 1평방미터당 최대 4.7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이동하는 경우 최대 1평방미터당 4.0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예시

행사장 공간이 300평방미터일 경우, 약 1,410명(300평방미터×4.7명) 이상 모이면 안 되며, 10m 너비와 30m 길이의 통로 등을 이동 시, 약 1,200명((300평방미터)×4.0명) 이하의 밀도를 유지해야 함

9)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2.0 스포츠 경기장의 안전한 수용능력 산정하기

10) G Keith Still, 「Introduction to Crowd Science」

- (공통) 군중 밀집도 관련 이론들을 정리한 논문에서도 1평방미터당 6명의 군중 밀집도가 발생할 경우 군중난류에 따른 경고 단계의 위험도가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음¹¹⁾

표 33. 군중 밀집도별 상태 및 위험도

군중 밀집도(1평방미터 당)	혼잡 상태	단계별 위험도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이 자유롭고 여유로움 	안전(1단계)
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불비나 개인공간 유지 가능 	관심(2단계)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접촉 증가 및 혼란 발생 • 군중 밀도 임계치(위험 징후) 	주의(3단계)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중난류 현상 발생 • 안전 자세 유지 어려움 	경고(4단계)
7~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곤란 발생 • 높은 사고 발생 가능성 	위험(5단계)
9~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절 가능성이 높음 • 참사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심각(6단계)
12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참사 확실시 	

11)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afety, 「군중 밀집 위험도 시뮬레이션 기반의 인파 관리 안전대책 수립」

- (공통) 최근에는 이러한 인파밀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등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인파밀집 솔루션을 운영 중에 있음

예시 인파밀집 솔루션 도입 사례¹²⁾

인파밀집 솔루션은 AI 기반 군중 밀집 감지 및 경고시스템은 영상정보와 딥러닝을 활용하며,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군중의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지능형 시스템임. 서울시 종구에서 AI 군중안전 솔루션을 시범 운영하면서, 대규모 인파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1평방미터 당 밀집 인원수를 6명 이상일 경우 ‘위험’ 단계로 판별하여 유관 부서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에 있음

- (공통) KT 위즈파크는 프로야구 구단인 KT 위즈의 홈구장으로 경기 중 관중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구장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중에게 혼잡 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혼잡 구역 중심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로 관중 혼잡도를 줄여 관중 만족도를 제고함

예시 KT 위즈파크 혼잡도 분석 솔루션 사례¹³⁾

- 관중 관리 주요 이슈
 - 게이트, 매점 및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실시간 혼잡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경기 중 특정 구역의 과밀화로 안전 문제를 사전 예방 필요
 - 혼잡 상황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핵심 구현 기능
 - 실시간 인원 카운팅: 주요 구역별 관중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하여 밀집도 파악
 - 직관적인 혼잡도 시각화: 구역별 혼잡도를 초록색(여유), 노란색(보통), 빨간색(혼잡)으로 표시
 - 관리자용 웹 대시보드: 경기장 전체 혼잡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리자 전용 대시보드 제공
 - 전광판 연동: 관중에게 실시간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 연동 표시
 - 이상 상황 알림: 특정 기준 이상의 혼잡 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 제공
- 핵심 성과
 - 안전관리 효율성 향상: 혼잡 구역 중심의 인력 배치로 안전관리 효율성 증대
 - 관중 만족도 향상: 혼잡 구역을 피해 이동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관람 만족도 개선
 - 매점 및 편의시설 이용 분산: 혼잡 시간대 정보 제공으로 시설 이용 대기 시간 감소

12) (주)알체라 홈페이지(www.alchera.ai), 「AI 기반 군중 밀집 감지 및 경고 시스템」, 2025

13) 수퍼브인사이트 뉴스레터, 「고객사례, KT위즈파크」, 2025

- (실내) 행사장 수용인원 산정을 위해서 1:50 또는 1:100, 이상적으로는 1:200 이상의 도면이 필요하며 해당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을 기반으로 행사장 전체의 최종 수용 능력을 결정해야 함. 또한 관람구역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파손 등 이용 불가능한 좌석은 사용 가능한 좌석 수량에서 제외해야 함
- (실외) 체육시설이 아닌 특정 공간(야외 공간, 광장 등)을 행사장으로 운영할 경우, 경기장 밖 체육 행사 최종 수용능력은 특정 공간의 면적(평방미터당 4.7명 상한)을 최종 수용능력으로 고려하여야 함. 다만, 특정 공간의 면적에 대한 수용 능력 산정 시, 참여자 규모, 참여자의 행사장 집합 속도 및 행사장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야 함
- (공통) 행사장 최종 수용인원이 결정되면 어떤 경우에도 더 많은 참여자가 입장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통) 동선은 가급적 일방통행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선이 중첩되거나 겹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표 34. 체육 행사 수용인원 비교

구분	SGSA	키스스틸(Keith Still)
1 평방미터 당 관람객 밀집 상한	4.7명	4.7명
특징	경기장 스탠딩석 기준	실외 행사장 기준

다.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수

- (공통) 행사 참여자는 경기 시간에 맞춰 체육 행사장으로 모여 일시적으로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구역, 행사장 출입구역, 이동구역의 과밀화 방지가 중요함
- (공통) 순간 최대 인원수에 도달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경기 시작 1시간 전¹⁴⁾과 경기 종료 직후임
- (공통) 영국 SGSA¹⁵⁾의 경우, 행사장 입구 및 통로 흐름은 각 입장 지점에서 시간당 660명 이상 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열을 형성하고 있는 참여자의 과밀화를 초래하기 때문임(입장 지점의 1평방미터당 통과 참여자 최대값은 평평한 노면일 경우 1분에 66명임)
- 행사장 구역별 인원 밀집에 대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음
- 주차구역
 - ▷ (입장) 행사장 내에 주차구역이 별도로 제공되어 경기 시작 전에 참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해당 구역에 주차하려는 차량으로 차량 대기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기장으로 이동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입장) 주차 후 입장을 위해 행사장 입구로 모여드는 인원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차할 때부터 원활한 주차 지원과 행사장 입구로 모여드는 참여자 밀집을 분산 안내하는 안전요원의 역할과 안내표지판의 적절한 배치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 (퇴장) 체육 행사 종료 후,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순간적으로 참여자가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경기장 안에 배치되어 있던 안전요원 등을 행사 종료 전 주차구역으로 이동 배치하여 분산 안내 및 충분한 수의 퇴장구역을 개방하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4)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2.0 스포츠 경기장의 안전한 수용능력 산정하기

15)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7.0 동선 - 입구

■ 출입구역

- ▷ **(공통)** 체육 행사 시 입장 및 퇴장구역에서 참여자가 통과하는 속도보다 도착하는 속도가 빠를 때 대기열이 발생하게 되고, 대기열은 먼저 도착한 인원을 압박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 **(입장)** 일반적으로 많은 인원은 경기 시작 전에 도착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의 입장 구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압박이 더욱 심해질 수 있음
- ▷ **(입장)** 인파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를 실시하여 출입구에서 경기장 내부로 진입하는 인파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 **(입장)** 필요 시, 계수기를 확보하여 출입구를 담당하는 안전요원에게 지급하여 진입 인원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입장)** 보안 검색을 할 경우, 물품 확인을 진행할 수 있음. 영국 SGSA¹⁶⁾의 경우, 물품 확인 시 시간당 통과율은 240명 정도로 더 많은 대기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일반적으로 평평한 노면에 1시간 동안 1평방미터당 최대 660명이 통과할 수 있으나, 참여자의 물품확인 시 통과율이 더 저연될 수 있음)
- ▷ **(퇴장)** 체육 행사가 종료되면 서둘러서 퇴장하려는 군중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퇴장구역도 인원이 몰리는 대표적인 장소임
- ▷ **(퇴장)** 행사장 내 충분한 수의 퇴장구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퇴장 시, 대기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이동구역

- ▷ **(공통)** 행사장 이동구역은 참여자가 입장한 이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입장 속도가 빠르거나 퇴장 시 일시적으로 인원이 몰릴 경우 해당 구역 과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공통)** 경사로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난간(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조치가 필요하며, 경사로에 참여자의 집중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연쇄 전도사고 예방이 필요함
- ▷ **(공통)** 전체 동선 관련 계획 수립 시 통로에 장애물 등이 적치되어 이동에 방해가 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함

¹⁶⁾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7.0 동선 - 입구

- ▷ (공통) 인파가 밀집된 경우, 내부에서의 질식과 압박 외에도 주변 시설에 대한 압력으로 인한 시설파손, 붕괴 및 난간파손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 주의가 필요함
- ▷ (공통) 참여자가 가고자 하는 구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배회할 경우 과밀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분산 유도를 위한 이동구역별 안전요원 배치계획 수립이 필요함

라. 참여자 특성 파악

- (공통) 체육 행사 참여자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등 사전 세부내용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며 참여자가 선수 또는 관람객에 따라 부상 및 충돌 등 위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육 행사 개최자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
- (안전취약계층별 안전관리) 취약계층의 경우, 위험 상황 인지가 느리고 안전사고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대처 능력의 저하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음. 따라서 체육 행사 개최 시 장애인, 노인, 유아 및 아동 등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유아 및 아동 특성 고려사항) 유아 및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¹⁷⁾을 살펴보면, 미끄러짐과 넘어짐(25.1%), 추락(21.3%, 부딪힘(18.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자 부재나 보살핌이 미흡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 유아 및 아동의 체육 행사 참여 시 넘어짐과 추락, 부딪힘 등에 대비한 계단, 안전난간 및 이동 경로에 따른 적치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이 요구됨
 - ▷ 유아 및 아동의 이동 시 보호자가 함께 할 것을 공지하고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 및 아동의 참여 비율이 높은 행사 개최 시 이를 고려한 안전요원 대상 안전 수칙 교육의 강화가 요구됨과 동시에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 배치 계획 수립이 필요함

17) 소비자안전센터, 「어린이안전사고 동향분석」, 2019

- ▷ 체육 행사 특성에 적합한 유아 및 아동 참여자의 안전모, 보호대 등 적절한 보호장비의 사전 준비가 요구됨
- (장애인 특성 고려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 행사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 1.1항의 '마.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피난용 통로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 점자·음성·문자 안내물을 설치하여 체육 행사 참여 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중요 정보에 대한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 장애인석을 마련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를 고려하여야 함
- (노인 특성 고려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체육 행사 참여 시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 1.1항의 '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등 필요 시설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 ▷ 고혈압, 소화기능 약화 등 특정 질환을 앓는 노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람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함
 - ▷ 노인 참여자를 위한 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하고, 노인 관람객의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여형 체육 행사) 일반인 또는 동호인이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양궁 등 개인소유의 장비를 선수가 직접 보유 및 이동하면서 다른 참여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장비로 인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빙상경기장 내 선수가 스케이트 보호대를 장착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다른 참여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스케이트날 등에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어 체육 행사 개최자는 참가자 특성을 파악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관람형 체육 행사) 안전계획서 내에 홈/원정 관중 간 충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SGSA¹⁸⁾에 따르면 관중 난동 및 반사회적 행동 계획을 작성하여 사고를 줄이고 대응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고 있어 안전계획서 내 관중의 반 사회적 행동 및 난동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할 것을 권고함

18)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3.0 관리-안전책임과 계획



4.0

행사 전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사용하는 경기장, 훈련장 및 관람시설 등 모든 장소와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수와 관중을 포함한 모든 체육 행사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체육 행사 개최자는 1.1항에서 언급한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해당 종목의 국제·국내 경기 연맹 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한 체육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4.1 경기구역

- 경기구역은 실제 경기가 진행되는 장소로서 경기 외 구역과 관람구역과도 별도로 구분됨
- 경기구역은 선수 및 심판 등 관계자만 출입 가능하며, 경기구역이 별도로 없는 체육 행사는 참여자 밀집을 방지하는 등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함

가. 경기구역(Field of Play)의 정의

- 경기구역은 체육 행사장 내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구역을 의미하며 관람구역과는 별도로 구분됨(보조경기구역도 경기구역에 포함됨)
- 주로 체육 행사에서의 경기구역은 종목별 규정에 따라 접근이 허용된 참여자(선수, 코치, 심판 등)만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 통제 시스템과 인력에 의해 관리됨
- 종목별 경기구역의 설계와 규격은 기준에 따라 다르며, 주로 국내 종목 단체 및 국제경기연맹(IFs)의 규정에 따라 정해짐

표 35. 종목별 경기구역의 정의(예시)

구분	주요내용
축구	터치라인과 골라인, 골네트로 제한해 사용하는 플레이 공간 ¹⁹⁾
보치아	모든 코트가 포함된 구역으로 기록실 구역 포함 ²⁰⁾
사격	경기하는 선수와 근무 종인 임원에게만 접근이 한정되는 사선 후방, 사선, 사대 및 표적, 후방 방어 구역 또는 안전지대를 포함한 경기구역을 말함 ²¹⁾

나. 경기구역 선정 시 고려사항

- 체육 행사 개최자는 법령 및 종목별 국내외 규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경기구역 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경기구역 내 안전관리 고려사항
 - ▷ 종목별 경기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 운영 구역 준비
 - ▷ 종목별 경기 규정에 의거 심판, 경기 임원 및 의료요원 등 필수 인원 배치
 - ▷ 출입 통제 관리
 - ▷ 경기구역 내의 시설물, 종목별 필수 안전 장비 및 기구 점검
- 별도의 경기구역 규정이 없는 체육 행사의 경우 참여자(선수, 관중, 운영요원)의 동선 분리와 참여자 밀집 방지, 종목 특성에 따른 안전시설 및 물자 설치를 사전에 계획하여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기구역 설정이 필요

19) 대한축구협회, 「IFAB 2024/25 축구경기규칙」

20) 대한보치아협회, 「2025~2028 World Boccia 월드보치아 경기 규정 버전 1.1 (한글 번역본)」

21) 대한사격협회, 「ISSF 국제사격연맹 기술 규칙 (한글 번역본)」

표 36. 종목별 경기 규정 중 안전관리 요소(예시)

복싱	쇼트트랙
10.6 링사이드 닥터 10.6.2. 세계 복싱 대회의 모든 세션 동안 최소 1명에서 최대 2명의 링사이드 닥터가 배치되어야 함	A. 트랙 및 경기장 – 패딩 ²²⁾ 시스템 f) ISU 경기 및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경우, 최소한 이동식 패딩 시스템 또는 하이브리드 패딩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출처: 국제복싱협회 대회 규정 (World Boxing Competition Rules)	출처: 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 경기 규정 International Skating Union Special Regulations & Technical Rules Short Track Speed Skating

22) 선수 보호용 매트로서 기본형, 하이브리드 형, 이동형 패딩 시스템이 있음

4.2 경기 외 구역

- 경기 외 구역은 주차구역, 출입구역, 이동구역, 관람구역, 매점 등 부대시설, 접근불가 구역, 비상구역 및 미디어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역별 필수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경기 외 구역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차 등의 대기 구역과 경비업법(1.1항의 ‘자. 경비업법’ 참고)에 따른 경비원을 경기 외 구역에 배치할 것을 권고함

가. 경기 외 구역의 정의 및 구역별 안전관리 고려사항

- 경기구역을 제외한 체육 행사가 개최되는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구역을 의미함. 본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에서는 경기 외 구역을 일반적으로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표 37. 8가지 경기 외 구역 정의 및 고려사항

구역	주차구역
정의	체육 행사에 참가하는 선수, 관계자, 관중 등 참여자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행사장 내·외부에 지정한 구역
구분	선수, 관계자, 관중, 장애인, 비상 상황 대비(응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주차구역 등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2 주차구역’을 참고하여 행사 규모에 맞는 주차구역 확보 • 참여자 별 주차구역 설정 • 차량 통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내 표식 및 안전 요원 배치 • 비상 상황 대비(응급차, 소방차 및 경찰차) 주차 및 신속한 진출입 구역 확보 • 시설물 점검결과 확인(바닥, 벽, 하중, 낙하물, 소방시설 및 위생 등)
구역	출입구역
정의	체육 행사 참여자들이 출입하는 구역과 동선
구분	매표구역, 검표구역, 보안 검색대, 선수/VIP/행사 관계자/장애인 출입구역 등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수용인원 확인 • 병목현상 및 군중밀집 관리를 위해 대기열 설정 • 보안인원 및 안전요원 배치, AD카드 운영, 반입금지 물품 고지 • 출입구역 인근 적치물 금지 • 시설물 점검결과 확인(바닥, 벽, 하중, 낙하물, 소방시설 및 위생 등)
구역	이동구역
정의	체육 행사장 내 참여자들이 각 구역과 구역 사이에 이동하고 체류하는 구역
구분	복도, 부대시설 간 이동동선, 주차구역 내 보행로 등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중 밀집 관리 및 원활한 통행 관리 • 동선 내 적치물 제거, 안내 표식의 설치 및 안전 요원 배치 • 시설물 점검결과 확인(바닥, 벽, 하중, 낙하물, 소방시설 및 위생 등)

구역	관람구역
정의	체육 행사장에서 관중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구역
구분	스탠딩, 좌석, 잔디석, 장애인 관람구역 등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구역과 명확한 구분 필요 관람구역 안내를 위한 안전요원, 안전표식 배치 안전시설의 설치(펜스, 난간, 안전바 등) 관람구역 이동 동선 내 방해물 금지(전선 및 적치물 등) 종목별 안전시설 설치물 필요(예시: 야구 파울볼 안전 네트) 비상시 대피 안내를 위한 안전장치 등 시설물 점검결과 확인(바닥, 벽, 하중, 낙하물, 소방시설 및 위생 등)

구역	부대시설
정의	체육 행사 참여자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구분	화장실, 음수대, 매점, 종합안내소, 수유실, 관중 의무실, 휴게실, 팀 스토어 등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비상 연락망 제공 군중관리, 위생관리, 시설물 관리(미끄럼 주의, 난간 주의, 화재 등) 부대시설별 적절한 안전물자 구비(예시: 매점 K급 소화기, 의무실 응급처치 용품, 팀 스토어 대기열 관리를 위한 차단봉) 시설물 점검결과 확인(바닥, 벽, 하중, 낙하물, 소방시설 및 위생 등)

구역	접근불가구역
정의	시설관리, 안전 확보 및 체육 행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
구분	시설 관련(상황실, 발전기실 및 소방설비 구역 등), 경기 운영 관련(선수 대기실, 심판실, VIP 라운지 및 계측실 등)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 금지에 대한 안내표식 제공 시설관리 주체 비상 연락망 제공 CCTV, 보안요원 및 안전요원 배치 필요시 잠금 상태 유지 시설물 점검결과 확인(바닥, 벽, 하중, 낙하물, 소방시설 및 위생 등)

구역	비상구역
정의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참여자들의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 대피로 및 집결지
구분	비상구,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집결지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 관중 수용 능력 검토 • 비상구 개수 및 비상구 개폐 관리 • 피난 안내도 게시, 비상시 대피 안내방송·전광판 안내 등 • 시설물 점검결과 확인(바닥, 벽, 하중, 낙하물, 소방시설 및 위생 등)

구역	미디어 구역
정의	언론·방송사 취재 및 중계 등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허가 받은 미디어 관계자만 출입 가능한 구역
구분	기자석, 인터뷰존, 믹스트존, 중계석 및 방송장비 설치 구역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 통제 및 관람구역과 동선 분리 • 미디어 장비 안전관리(전선 정리, 장비 고정, 구조물 점검 및 낙하물 방지 등) • 시설물 점검결과 확인(바닥, 벽, 하중, 낙하물, 소방시설 및 위생 등)

나. 경기 외 구역의 안정성 사전 파악

■ (체육시설 내) 체육 행사 개최 시설 안정성 사전 관리

-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체육 행사 시설이 확정되면 국민체육진흥법²³⁾,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²⁴⁾등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안정성을 사전 확인해야 함

23)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시설관리 주체가 법적 요건에 근거하여 시행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확보하여 체육 행사장의 안정성을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결과보고서 내용에 기반하여 위험구역과 제한구역 등을 사전에 분류할 필요가 있음
 -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임차하는 시설 등의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공문서, 메일 등을 통해 요청해야 함
 -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체육 행사가 운영되는 구역과 동선을 고려하여 체육 행사 개최 전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안전점검 사항은 ‘7.2 안전점검 계획 수립’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내 세부 내용을 작성해야 함
 - ▷ (체육시설 외) 장소에서 개최되는 체육 행사 안정성 사전 관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체육시설 외 장소에서 개최되는 체육 행사의 경우 장소에 따라 시설관리 주체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관리 주체가 시행하는 안전점검 기록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함
 - 행사 규모에 따라 지역 축제로 분류될 경우 지역 안전관리 위원회/지역 안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사전 합동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조례는 지자체별 확인이 필요함

예시 시설에 따른 관리주체 현황

장소	관리주체
일반 건축물	시설 관리자
한강 등	미래 한강 본부 등
공원	해당 지자체 공원녹지과
도로	관할 구청

[공문 예시]

대한 00경기 연맹

수신 00개발공사

(경유)

제목 제10회 대한00경기연맹 회장배 전국대회 개최 관련

체육시설 안전점검 확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0회 대한00경기연맹 회장배 전국대회가 아래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에서 개최되는 바, 행사 중 안전관리를 위해 귀 기관이 시행했던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요청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 1) 일 시: 2026년 0월 0일(0) ~ 0월 0일(0)
- 2) 장 소: 00시 00구 00로 00, 다목적 체육센터
- 3) 참석인원: 선수 00명, 관중 00명, 운영인력 00명 등

나. 협조요청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공유

※ 해당 시설의 안전 취약구역 사전확인 목적

붙임

1. 제10회 대한00경기연맹 회장배 대회 개최 계획서
2. 제10회 대한00경기연맹 회장배 대회 안전관리계획서. 끝.



5.0

행사 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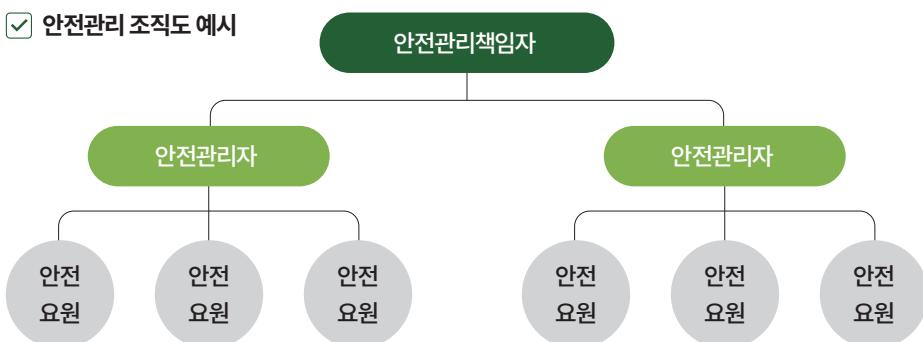
-
-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관리자는 안전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함
 -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국민체육진흥법²⁵⁾에 의거하여 안전계획 수립,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안전계획 수립 시점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의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책임자는 필요 시(안전사고, 각종 재난 발생 등) 경기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체육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25)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5.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수행 업무

- 안전관리책임자는 체육 행사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적 지식과 관계자 및 협력 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보유해야 함
-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요원 등의 확보 및 교육,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의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체육 행사 운영 경험이 풍부해야 함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체육 행사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안전관리 조직도 예시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

- 안전관리책임자는 체육 행사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체육 행사 내·외부 조직과 소통을 통해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의미함
-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 하에 안전요원 관리, 교육 및 현장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표 38.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

구분	주요내용
안전관리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법적 책임 및 의무’에 따른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관리, 시설 안전관리, 응급의료 및 관련 법규 등과 관련된 지식 보유(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한 안전교육 이수 필수) 체육 행사 안전관리 총괄 기획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담당자 수, 위치 및 역할 결정 -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명령체계 수립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임명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교육 및 수료 관리 - 체육 행사 전, 참여자에 대한 위험 평가 수행(안전점검 시행) 협력 기관 관리 등 안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 관리 체육 행사에 대한 운영매뉴얼 관리 체육 행사 안전관리 모니터링 내용 문서화(정보화) 관리 비상 상황 시, 체육 행사 중단을 포함한 체육 행사 운영 관리 조치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등 관련 지식 보유(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한 안전교육 이수 필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체육 행사 안전관리 운영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실행 - 안전요원 업무 분배 및 행사장 배치 - 위험구역 포함한 전 구역 모니터링(안전점검 시행) - 체육 행사 전, 참여자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안전점검 시행) - 체육 행사장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사후관리(공제 업무 등) - 안전요원 등 안전 관련 인력 교육 및 수료 관리 안전요원 지정 및 선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안전요원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보유 - 병원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의사소통 능력 등 참여자가 입장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평가하고 관리

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식/기술/태도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역량을 인지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발 시 해당 역량을 참조하는 것을 권고함

표 39.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지식/기술/태도 역량

구분	지식(K)	기술(S)	태도(A)
안전관리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관리 법령 및 정책 등 이해 ② 재난 및 위기관리 이론 및 지식 ③ 통합 안전관제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 ② 안전관리 조직 구축 및 운영 ③ 관계 기관 협상 및 조정 ④ 종합 위험성 평가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 문화 내재화 ② 위기상황 판단 및 통솔력 ③ 책임감과 윤리의식
안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장 안전관리 규정 숙지 ② 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이해 ③ 안전 관련 인력 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② 현장 인력 지휘 및 감독 ③ 현장 위험요인 평가 및 통제 ④ 돌발상황 초동 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 ② 철저한 안전관리 의식 ③ 명확한 소통 능력

5.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언급된 바와 같이 체육 행사 안전교육에 대해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주최 및 주관기관 임직원 각 1명 이상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해야 함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 안전관리책임자는 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가진 임직원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며,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임직원으로 주최 및 주관기관 각 1명 이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함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아래 내용과 같이 체육 행사 안전 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²⁶⁾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 일 전 2년 이내 위 교육 내용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 안전관리계획 내용 및 수립 절차·방법
 - ▷ 참석자 안전대책 수립 및 대피경로 확보
 - ▷ 체육 행사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 ▷ 체육 행사 안전점검 방법 및 시기

26)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 안전조직 구성 및 인력 선발·교육·배치
- ▷ 체육 행사 장소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

- 대행사와 함께 체육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대행사 소속의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지정하여야 함

**표 40. 주최기간/주관기관/대행사 참여 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인원 수
최소권고(안)**

구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주최기관만 참여하는 경우	주최기관 1명	주최기관 1명
주최기관과 주관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주최기관 1명	주최기관과 주관기관 각 1명
주최기관, 주관기관, 대행사가 참여하는 경우	주최기관 1명	주최기관, 주관기관, 대행사 각 1명



6.0

행사 전

안전요원, 의료요원 등 각 인력확보 및 배치 방안

-
- 체육 행사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요원, 보안요원, 의료요원 등 각 인력별 직무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각자 부여받은 업무에 대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요령과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핸드북 내용을 숙지해야 함

 - 안전요원, 보안요원, 의료요원은 겹직을 금지해야 함
-

6.1 안전요원, 보안요원 수행 업무

- 구역별로 배치된 안전요원은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구역의 보안요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안전관리와 관련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함
- 안전요원은 구역별 주차 관리, 출입 보안, 참여자 안내 및 체육 행사 관리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보안요원은 VIP 및 접근불가구역 등의 보안 검색, 출입 통제, 비상상황 대응 및 참여자 고객 서비스 대응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구역별 안전요원과 협업할 필요가 있음
- 안전요원, 보안요원 등은 인력별로 안전핸드북과 행동강령을 지참 및 숙지해야 함

가. 안전요원 직무

- 안전요원의 기본 임무는 관중의 이동을 돋고, 혼잡을 방지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초동 조치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체육 행사 내 투입되는 안전요원의 세부 직무는 아래와 같음²⁷⁾
- 안전요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아래 내용과 같이 체육 행사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7) 스포츠운영자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1st Edition, II. 스포츠 안전관리, 3. 안전인력

- ▷ 체육 행사 개요
- ▷ 역할별 담당 업무
- ▷ 비상 상황 대처 및 응급처치 방법

나. 보안요원 직무

- 안전은 참여자가 부상이나 신체적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안은 안전에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음²⁸⁾
- 보안요원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 검색,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 직무는 아래와 같음

표 41. 안전요원과 보안요원의 직무

구분	내용
안전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중의 안전, 보안 및 서비스 요구 지원 • 체육 행사 출입, 이동 등 참여자 통제 및 안내 • 경기 및 관람구역 안을 출입하는 참여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 유지 • 잠재적 위험 식별 및 안전관리자 보고 • 각종 분쟁 초기 대응 및 필요 시 안전관리자 보고 • 재난, 참여자 부상, 체육시설 결함 등 응급, 비상 상황 대응 및 안전관리자 보고
보안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검색 및 검사: 출입 통제 구역에 대한 보안 검색 및 검사 • 출입 통제 및 감시: 허가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구역 관리 • 비상 상황 대응: 화재 및 테러 위협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참여자에 대한 고객 서비스: 참여자 안내 등

28)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3.0 관리 – 안전 책임과 계획

다. 안전요원 안전핸드북 및 행동요령

- 안전요원 등 안전핸드북 제작/배포²⁹⁾
 - ▷ 모든 인력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육 행사 개최자는 인쇄본 또는 디지털 형식의 안전핸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권고함
 - ▷ 체육 행사장 내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안전핸드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경기 중 항시 휴대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안전핸드북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표 42. 안전핸드북 포함 내용

구분	내용
안전핸드북 포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행사장 내 안전물자 및 인력 배치도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연락처 • 안전요원, 보안요원 및 의료요원 세부 직무 • 안전요원 행동요령 • 참여자에 대한 고객 서비스 내용(참여자 주요 질의 사항 및 모범 답변) • 입장 조건 및 행사장 내 이용 규정(반입금지, 이동금지 및 경기장 출입제한 등) • 체육 행사 전·중·후 의무 • 화재 등 비상 상황 종류에 따른 구역별 대응 요령

29)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4.0 관리 - 스튜어딩 재정리

- 안전요원은 행동요령³⁰⁾을 참조하여 안전요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표 43. 안전요원 행동요령

구분	내용
안전요원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요원은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에게 항상 도움이 되어야 하며 정중해야 함 • 안전요원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며, 깔끔한 복장을 유지해야 함 • 안전요원은 항상 자신의 직무를 이해하고 이행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체육 행사장 내 투입되는 안전요원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금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중 편파적으로 보이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 - 경기를 축하하거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행위 - 외설적, 모욕적, 차별적 및 위협적인 언어 또는 행동 - 대중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음식물 섭취 또는 흡연하는 행위 - 체육 행사 전 또는 체육 행사 중 음주 등을 하는 행위 - 근무 중 사적인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30)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4.0 관리 - 스튜어딩

6.2 의료요원(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수행 업무

- 의료요원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인 경우,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차 응급처치가 가능함

가. 의료요원 직무

- 의료인³¹⁾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함
- 응급구조사³²⁾란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의미함(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의료요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구조사를 말하며, 의료요원의 세부 직무는 다음과 같음

31) 의료법 제2조(의료인)

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표 44. 의료요원 직무

구분	내용
의료요원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체육 행사 기본 정보 숙지(행사장 구조 파악, 종목별 부상발생빈도 및 사고 유형 등)실외 행사 시, 즉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위치에 배치 및 상주응급처치 시설 위치, 응급차 대기 장소 및 협력 의료기관 상황 등 현장 의료 세부 사항 확인참여자 입장 전부터 안전 요원이 퇴장할 때까지 현장 상주참여자가 멀리서도 의료요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복장 착용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응급처치 수행응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이송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 수행

6.3 안전요원 · 보안요원 · 의료요원 확보 계획

- ‘3.2 참석 예정 인원 관리’에서 도출된 행사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요원, 보안요원 및 의료요원을 내·외부 위탁을 통해 적절히 확보해야 함

가. 안전요원·보안요원·의료요원 확보 계획

- 안전 관련 인력 확보 시, 내·외부 인력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련 자격 또는 수료증 등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함(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스포츠안전관리사, 소방안전관리사, 안전요원 등 국가자격, 민간자격 및 관련 법에 따른 법정교육 수료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스포츠안전 관련 특성화된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함)
- 상기 기재된 체육 행사 관련 모든 인력들은 격기 종목(복싱 및 태권도 등) 및 구기 종목(야구, 축구 및 럭비 등) 등 종목별 특성에 맞게 인원을 확보해야 함
- 안전요원 확보 계획³³⁾
 - ▷ (공통) 안전요원은 일반적으로 예상 참여자 250명 당 1명의 안전요원 비율로 확보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예시

예상 참여자가 1,100명일 경우 5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해야 하며(안전요원 비율 산정 시, 250명이 안 되는 예상 참여자는 1명으로 산정해야 함)

33)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4.0 - 스튜어딩

- ▷ (참여자 특성) 참여자가 노약자, 유소년 등 안전지침을 명확하게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
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더 많은 안전요원 배치를 고려하여야 함

예시

참여자가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참여자가 노약자일 경우, 참여자 100명 당
안전요원 1명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 행사장 특정 구역에서는 더 높은 인력 배치를 고려하여야 함

- ▷ (행사 장소) 안전요원의 인원 수는 실내, 실외 및 실외(이동형) 등 체육 행사 장소에 따라
다르며 실외(이동형)-실외형-실내형 순으로 많이 배치할 것을 권고함
- 보안요원 확보 계획
 - ▷ 체육 행사 진행 시 VIP 및 선수 보호, 대회 운영 본부의 일반 참가자와 분리 등을 위해 행
사 규모와 형태에 맞게 보안요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함
 - ▷ VIP 룸, 선수 및 심판 대기실, 대회운영실 및 미디어 룸 등 관람객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를 해야 함
 - ▷ 보안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보안 출입 통제 구역은 보안요원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함
- 의료요원 확보 계획
 - ▷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는 의료행위 및 처치가 가능
한 전문 의료요원(의사,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중 1명과 응급차 1대 이상을 반드시 함께
확보해야 함³⁴⁾
 - ▷ 행사장을 복수로 지정하여 사용할 경우, 각 행사장마다 의료요원을 확보해야 함
 - ▷ 영국 SGSA에 따르면, 참여자 예상 인원이 1만 명을 넘을 시, 의사 1명이 체육 행사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국내 체육 행사 또한 SGSA의 기준을 준용하여
의료요원을 확보할 것을 적극 권장함)
 - ▷ 따라서 체육 행사 개최 시 행사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1명의 의료요원은 반드시 확보해
야 하며, 그 이상의 의료요원은 종목단위별 국내 및 국제 규정을 참조하여 확보해야 함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6.4 안전관리 인력 배치 계획

- 1.1항의 ‘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주최, 주관기관 및 대행사 등 다수의 안전관리자를 지정 할 수 있음
- 안전요원은 고정형 안전요원과 이동형 안전요원을 행사장 특성에 맞게 적절한 비율로 구성 하여 배치할 수 있음
- 의료요원은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하며, 행사 성격, 예상 참여자 수와 밀도 등 사전 정보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파악해야 함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배치 계획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에 대한 배치 계획을 참조하여 행사 규모 및 행사 장소에 따른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함

표 45.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배치 계획

구분	내용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배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가 행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수 지정할 수 있음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p>예시</p> <p>마라톤 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자 2명(출발구역 안전관리 1명, 도착구역 안전관리 1명 등) 지정</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장 중앙에 위치한 대회 운영 본부 등에 위치하여 행사 안전관리를 관리 감독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행사장 내 중요한 지점(출입구역, 이동구역 및 관람구역 등)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참여자가 안전하게 체육 행사에 참여하는지 점검해야 함

표 46. 안전요원 배치 계획

구분	내용
안전요원 배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요원은 고정형 안전요원과 이동형 안전요원으로 구분하고, 인원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여 안전요원 인력을 운영해야 할 것을 권고함 장애인 행사 시, 안전요원 중 별도의 장애인 도우미를 배치하여 해당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고정형 안전요원은 하단의 기재되어 있는 장소를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모니터링 지점 - 주차장 입구 및 주차장 실내(주차 안내) - 체육 행사장 출입구 - 체육 행사장 내 관람석과 연결된 출입구 - 경기장과 관람석 경계 구역 - VIP룸, 선수 및 심판 대기실, 미디어룸 및 통제실 이동형 안전요원은 체육 행사장 내 참여자 통제 및 모니터링 등의 경험이 많은 유능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함 경험이 많은 안전요원과 경험이 적은 안전요원을 병행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체육 행사 특성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함 안전요원 배치 시, 최소한의 안전요원 인원수를 명시해야 함 SGSA에 따르면, 안전요원이 단독으로 안전요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육 행사장 안전관리 경험이 최소 4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안전요원 배치 시, 눈에 잘 띠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안전요원 수행 업무를 표시하는 AD카드를 부착해야 함

나. 의료요원 배치 계획

- 의료요원은 응급의료실에 상주할 경우와 상주하지 않을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료요원 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의료요원 배치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47. 의료요원 배치 시 고려사항

구분	내용
의료요원 배치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요원 배치 시, '6.2 의료요원(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수행 업무'에 언급된 종목별 부상발생 빈도 및 사고유형 등을 숙지하는 것 외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유형 및 성격 - 예상 참여자 수와 참여자 밀도(긴 대기시간 포함) - 예상 참여자 특성(연령 및 성별 등) - 예상되는 참여자 행동

표 48. 의료요원 배치 계획

구분	내용
의료요원 배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요원이 응급의료실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 응급의료실의 위치는 다음과 같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가 응급의료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행사장 전체에 명확한 응급의료실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모든 안전요원들이 응급의료실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함 - 들것, 응급차 및 휠체어 등이 출입할 수 있는 접근경로와 출입구가 있어야 함
의료요원 배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요원이 응급의료실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의료요원의 위치는 다음과 같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행사) 체육 행사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지정된 위치에 배치하여 상주 - (실외 행사) 광범위한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지정된 위치에 배치하여 상주하며, 특히 안전관리자와 연락 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위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응급차에 탑승하여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형 체육 행사의 경우, 관람객 전용 의료요원 배치도 계획해야 함



7.0

행사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방안

-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1천명 이상 체육 행사)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체육 행사도 동일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함
-

7.1 안전교육 계획 수립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안요원의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체육 행사 진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및 보안요원은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료요원 등도 체육 행사 진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에 의한 행사 브리핑을 통해 행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 안전교육 대상 선정

- 체육 행사에 투입되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법정교육 이수가 필요함
- 그 외 의료요원 등 행사 참여 인력의 경우 체육 행사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브리핑(행사 개요, 주요 임무, 행동강령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함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5.2항의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6시간 이상), 안전요원(1시간 이상)을 대상으로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제공해야 함
- 보안요원(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에 따라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체육 행사 내 보안요원이 투입되는 경우 안전관리자는 해당 인력 또한 교육 대상자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연장의 경우,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1.1항의 ‘마. 공연법’과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지정된 후 안전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또한, 안전관리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지정된 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안전교육 내용은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 참조)
- 외부 대행사를 통해 안전요원, 보안요원 등을 모집하는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 이수 현황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서 내 반영하여야 함

나. 안전교육 계획

- ‘가. 안전교육 대상 선정’에서 언급한 안전교육 대상과 안전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한 파악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내 대상별로 법정교육에 대한 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안전교육 이수가 완료되는 시점은 반드시 체육 행사 내 첫 번째 참여자가 도착하기 전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
- 체육 행사 운영 전, 스포츠안전재단(스포츠안전아카데미, <https://edu.sportsafety.or.kr>)에서 제공하는 법정교육을 활용하여 7.1항의 ‘가. 안전교육 대상 선정’에서 언급한 대상자 전체가 사전에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행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표 49. 체육 행사 안전교육(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2])

구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방법 • 참석자 안전대책 수립 및 대피경로 확보 • 체육 행사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 체육 행사 안전점검 방법 및 시기 • 안전조직 구성 및 인력 선발·교육·배치 • 체육 행사 장소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 	6시간 이상
안전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행사 개요 • 역할별 담당 업무 • 비상 상황 대처 및 응급처치 방법 	1시간 이상

- 안전요원, 의료요원 등 행사 참여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가. 안전교육 대상 선정’에서 언급한 브리핑을 시행하기 위해 경기 시작 전 구체적인 브리핑 시간, 장소 등을 계획서 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2 안전점검 계획 수립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점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가. 안전점검 계획

- 안전점검의 경우 5.2항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체육 행사 개최 전 안전계획 수립 시 행사장 내 안전점검 계획은 구체적으로 계획서 내 명시되어야 함
- 안전점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시점부터 행사가 종료 때까지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점검 계획 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함
 - ▷ 안전점검 시기
 - ▷ 안전점검 시행자
 - ▷ 점검결과에 대한 문서화
 -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계획 등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체육 행사 안전점검은 7.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최소 1회, 필요시 그 이상 외부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위탁할 수 있음
- 외부기관 위탁 시에도 안전관리계획서 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함
 - ▷ 외부 전문기관명
 - ▷ 점검형태(사전, 운영점검 등)
 - ▷ 점검시기
 - ▷ 결과서 활용 방안(개선 권고사항 이행 등)
- 외부기관의 점검 위탁 계획 수립 시, 스포츠안전재단(스포츠행사 안전관리포털, <https://event.sportsafety.or.kr>)에서 제공하는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점검 컨설팅³⁵⁾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점검 외 별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4.2항에서 언급한 시설 안정성 파악을 위해 사전 검토해야 하는 시설점검 결과서를 기반으로 행사장 내 위험구역은 집중적으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체육 행사를 위한 시설을 행사 당일부터 임차하여 사전 안전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사 운영 중 지정된 담당자가 행사 시작 전 필수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앞서 언급한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 위탁 또한 필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35)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행사 안전관리포털 공식 홈페이지(<https://event.sportsafety.or.kr/>)」



8.0

행사 전

관계 기관 협조 필요사항 및 협조방안

-
- 체육 행사 개최 전에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보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규모 또는 고위험 행사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이를 통해 행사 운영의 안전성과 대응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
-

8.1 관계 기관 정의 및 역할

-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미연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체육 행사 특성에 따라 관계 기관과 사전 협조 내용 및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함

가. 관계 기관의 정의

- 관계 기관은 체육 행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개최자와 협조하거나 행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말함. 대표적인 체육 행사 관계 기관으로는 병원,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이 있음³⁶⁾
- 체육 행사의 개최 장소와 종목별 특성, 참가 인원 등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사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사전 협조가 필수적임

나. 관계 기관의 역할

- 관계 기관 및 주요 협조 내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3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의2)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2024

표 50. 관계 기관 및 주요 협조 내용

관계 기관	주요 협조 내용
지자체(시·군·구)	행사 안전관리계획서 심의(필요시), 공공장소 사용 허가, 재난관리부서 협조 등
소방서	구조·구급요원 배치, 소방차 주차장소 지정 화재 예방 점검, 화재 등 비상시 현장 지휘 체계 구축 등
경찰서	질서 유지, 교통 통제, 군중 안전관리, 경호·경비 계획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 등
보건소 및 병원	응급의료 협조, 감염병 예방조치, 의약품 지원 등
시설관리공단	시설 임차, 시설 안전점검관리 등
기타	기상청(날씨),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 한국전력공사(전기), 국토안전관리원(시설), 체육 행사 협력 기관(대행사, 시설 병원 등)

표 51. 202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계 기관(예시)

관계 기관	주요 협조 내용
지자체 (경상남도)	행사 전반 안전관리계획 수립, 경찰력·소방력 배치 등 경기 등 행사 안전 관련 역할 지원
소방서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대비 소방력 이동 배치 및 지원
경찰서	경기장·행사장 주변 교통 통제, 폭력·테러 등의 사고에 대비 공연장 내·외부 경찰력 배치
대한(장애인) 체육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안전매뉴얼 제작(개최 시도 공동) 각 시도 선수단 스포츠 안전 서비스 가입 및 안전교육 실시 공지 개최 시도와 공동으로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道 체육회 道 장애인체육회	경기 진행과 관련한 안전관리 및 사고배상
MBC C&I / (주)렛츠	개·폐회식 공연 연출 관련(시설/운영/출연자 등) 안전관리 전반 총괄

표 52. 제 25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관계 기관 예시

관계 기관	주요 협조 내용
지자체(인천시)	행사장 안전관리 총괄 및 합동 안전 점검 시행 (인천시 사회재난과, 미추홀구 안전총괄과, 연수구 안전관리과)
미추홀 소방서	합동 점검, 사고 및 화재 발생 시 조치 수행
미추홀 경찰서 /연수경찰서	합동 점검, 경찰서 및 모범운전자 등 코스 운영 및 교통통제 협조
중부 모범	행사장 내 주차장 안내 및 관리
경인응급구조단	총괄응급의료 담당 및 응급전문인력 파견

8.2 관계 기관 협조

- 체육 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병원, 경찰서, 소방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협조 요청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관련 공문서 등을 통해 공식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야 함

가. 관계 기관과의 협조 시기

- 행정안전부 발행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³⁷⁾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권고. 특히 순간 최대 밀집 참여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체육 행사인 경우 군중 관리 및 교통 통제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것을 권고함
- 경찰·소방·의료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받도록 권고하며, 체육 행사 전·중·후 전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함
- 요청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즉각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행사 안전관리 책임 이행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체육 행사 개최자는 공문 발송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지원 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함

37)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2024.9

나. 관계 기관 협조 방법

-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시 문서 수·발신(공문, 이메일, 회의록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권고함
-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 내에 기재하여야 하며 협조 완료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을 권고함
- 안전 문서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 관련 수·발신 문서와 증빙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공문 예시]

대한000협회

수신 00병원장

(경유)

제목 제10회 대한000협회 회장배 전국대회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제10회 대한000협회 회장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본 협회에서는 행사 중 응급차 1대를 비롯한 의료인력 2명을 운영 예정이나, 상황이 중대한 응급환자 발생 시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4. 귀 병원은 행사장에서 제일 근접한 종합병원으로 대회운영 중 응급환자 발생 시 귀 병원의 의료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가. 행 사 명: 2025년 제10회 대한000협회 회장배 전국종합대회

나. 기 간: 2025년 8월 1일(금) ~ 8월 4일(월)

다. 장 소: 00시 00구 00로 00, 다목적 체육센터

라. 주최주관: 대한000협회

마. 행사규모: 선수단, 안전요원 등 행사 참여 인력, 관중 포함
약 1,000명

바. 협조요청: 본 대회 개최에 대한 인지, 상황 발생 시 협조 요청

붙임

제10회 대한000협회 회장배 전국대회 안전관리계획서 .끝.

[공문 예시]

대한000협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 제54회 전국종합00선수권대회 안전대비 사전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2025년 제54회 전국종합00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대회기간 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협조를 위해 대회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유 드리오니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가. 행 사 명: 2025년 제54회 전국종합00선수권대회

나. 기 간: 2025년 8월 1일(금) ~ 8월 4일(월)

다. 장 소: 00시 00구 00로 00, 다목적 체육센터

라. 주최주관: 대한000협회

마. 행사규모: 선수단, 안전요원 등 행사 참여 인력, 관중 포함 약 1,000명

바. 협조요청: 각 담당 기관별 해당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협조

붙임 제54회 전국종합00선수권대회 안전관리계획서 1부. 끝.

수신 00소방서장, 00경찰서장, 00병원, 00병원장



9.0

행사 전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
- 최근 기후변화 및 다양한 이유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과 더불어 체육 행사 특성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을 작성토록 포함되어 있어, 체육 행사 안전사고 유형들을 분석해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

9.1 안전사고 유형 분석

- 안전사고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기후온난화로 인한 폭염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의 사회재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가. 자연·사회재난 안전사고 유형

- 국내 재난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 따라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함
-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예시 자연재난 사고 사례

- 2024년 1월 NFL 경기에서 경기 중 기온이 -4°F (약 -20°C)였고 심한 바람으로 인한 체감온도 저하로 인해 팬들 다수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 치료
- 2024년 4월 뉴욕·뉴저지에 규모 4.7의 지진으로 MLB 팀의 연습 및 경기 중에도 지진 감지
- 2024년 8월 국내 마라톤 대회 중 참가자 29명이 더위로 인하여 쓰러짐

-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함

예시 사회재난 사고 사례

-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 축구경기장에서 관중 난입으로 인해 경찰의 대처(최루ガ스 발포)로 팬들이 경기장 밖으로 급히 탈출하는 중 병목 및 혼란으로 압사 사고 발생
- 2024년 7월 국내 야구경기장에서 경기 시작 전 우측 중견수 뒤쪽 스탠드 상단에 설치된 이벤트용 화염 기둥 장치가 오작동하며 화재 발생
- 2025년 1월 영국의 축구장 내 상품 판매 키오스크, 2025년 6월 미국 야구장 내 구장 내 매점에서 화재 발생

9.2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체육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에 대해 유형별 자연·사회재난 발생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자연재난의 경우 유형에 따라 설정된 발령 기준 등을 고려하여 체육 행사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함

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자연재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발표기준³⁸⁾을 이해해야 함

38) 기상청나우누리. 「기상특보 발표기준 (<https://www.weather.go.kr/w/community/knowledge/standard.do>)」

표 53. 기상특보 발표 기준

유형	주의보	경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강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90.0km/h(25m/s) 이상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108.0km/h(30m/s)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C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 -12°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C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 -15°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자연재난의 근본적인 발생 방지라기보다 9.1항의 ‘가. 자연·사회재난 안전사고 유형’에 언급된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재난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책(폭염: 폭염대비물품, 한파: 방한용품 등) 준비)
- 체육 행사 유형별 적용 가능한 자연재난 기준을 파악하고, 기상특보 발표기준 및 체육 행사 현장상황 등에 따른 체육 행사 지속 여부 결정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해야 함
-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사 주최, 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등에 의한 회의소집을 통해 협의하며, 전문기관(응급구조, 경기장 시설관리 주체 등)과의 긴급자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결정에 반영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자연재난 발생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행사 유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을 계획해야 함. 세부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스포츠안전아카데미, <https://edu.sportsafety.or.kr/>)에서 제공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음

예시 유형별 행사장 위험요소 체크리스트(폭염)

점검항목	설명
1. 공통	
<input type="checkbox"/> 그늘 공간 설치 여부	이동식 천막, 차양막, 천정 구조 등으로 햇빛 차단
<input type="checkbox"/> 무더위쉼터(냉방존) 운영 여부	에어컨 또는 이동식 냉방기 설치 공간 존재 여부
<input type="checkbox"/> 음수대 및 수분보급체계	생수, 이온음료 등 현장 비치, 정기 보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폭염특보 대응 기준 마련	체감온도 기준으로 행동 기준 수립 여부
<input type="checkbox"/> 온열질환 응급체계 구축	응급키트, 응급구조인력, 병원이송체계등 확보 여부
<input type="checkbox"/> 안내 방송 및 홍보물 게시	폭염 예방 안내방송, 전광판 자막, 홍보물 게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위험구역 차단 여부	복사열 심한 아스팔트, 노출 금속 구조물 등 제한 여부
2. 옥외 경기장형 체육 행사	
<input type="checkbox"/> 경기장 바닥 복사열 점검	인조잔디, 아스팔트 등 고열 발생 여부
<input type="checkbox"/> 그늘막 설치 여부(벤치, 관중석)	선수 대기석, 심판석 등 햇빛 완전 차단 여부
<input type="checkbox"/> 경기시간 조정 가능성 확보	오전 또는 저녁 시간으로 시간대 변경 가능성 검토
<input type="checkbox"/> 응급이송 통로 확보	경기장 → 대기구역 → 응급차 진입로 장애물 확인
3. 마라톤 및 도로행사	
<input type="checkbox"/> 급수대 설치 간격 적정성	1~2km 간격, 냉수 및 이온음료 배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중도포기자 대피소 지정	중간 지점별 쉼터 및 의자/텐트 비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도로 노면 온도 확인	아스팔트 복사열 측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의료진-응급차 순환 배치 여부	경기 이동 경로에 따라 순환 배치 여부 확인
4. 단체 운동회 및 학교 체육대회	
<input type="checkbox"/> 참가자 보호자(아동,노약자) 대응 방안	쉼터, 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자 중심 안전조치
<input type="checkbox"/> 안전요원 교육 여부	자원봉사자 포함한 열사병 증상 인식 교육 여부
<input type="checkbox"/> 안전방송 주기 설정	어린이도 쉽게 이해 가능한 방송 메시지 구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참가 인원 밀집 시간대 분산	인원 분산 및 휴식시간 확보 운영계획 여부
5. 실내 경기장 포함 복합행사	
<input type="checkbox"/> 실내 ↔ 야외 동선 폭염안전 고려	야외 이동 시 우산, 쉼터 등 연계 대응 존재 여부
<input type="checkbox"/> 입장 대기열 대응 조치	야외 대기 줄이 길 경우 그늘막 설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냉방 설비 정상 작동 확인	에어컨, 스풍기, 환기시스템 정상 여부

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사회재난 유형별 특성 및 발령기준을 파악해야 함

표 54. 미세먼지 발령 기준

유형	주의보	경보
미세먼지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초미세먼지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사회재난의 근본적인 발생 방지라기보다 9.1항의 ‘가. 자연·사회재난 안전사고 유형’에 언급된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표 55. 사회재난 유형별 발생 방지 방안

사회재난 유형	방지 방안
화재	소화기, 소화전 등과 같은 소방물자 확보
교통사고	주차구역 내 차량 이동 통로와 보행자 이동 통로 구분
다중운집 인파사고	인파 밀집 예상 구역 인력 배치 및 유동인구 흐름도 계획
미세먼지	행사 취소 및 연기 기준 확보, 행사장 이동(실외 → 실내) 계획 마련
감염병	사전 참여자 건강 상태 확인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사회재난으로부터 체육 행사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재난 유형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내 포함시켜야 함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사회재난 발생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행사 유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을 계획해야 함

예시 미세먼지에 따른 경기 취소 규정 사례

- 대한축구협회
 - 초미세먼지($PM_{2.5}$) $150 \mu\text{g}/\text{m}^3$ 이상 또는 미세먼지(PM_{10}) $3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경기일 연기 적극 권장
- 한국야구위원회(KBO)
 - 초미세먼지($PM_{2.5}$) $150 \mu\text{g}/\text{m}^3$ 이상 또는 미세먼지(PM_{10}) $3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경기운영위원의 판단으로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

9.3 기타 고려사항

- 체육 행사 중 발생하는 재난 외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종목별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을 검토하고 발생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함

가. 응급처치

- 일반적으로 체육 행사 중 발생하는 재난 외 응급상황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 할 수 있어야 함
 - 체육 현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절차(3C)를 따라야 함
 - ▷ **Check(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의 안전 여부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실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능
 - ▷ **Call(신고):** 상황을 확인한 후에는 즉시 119 등 전문 구조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
 - ▷ **Care(조치):** 신고 후에는 전문 구조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
 - 체육 행사 현장에서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함
 - ▷ 체육 행사 참여 전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함
 - ▷ 체육 행사 중 발생되는 심정지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4항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의서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 투입되는 인력들에게 체육 행사 중 참여자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하게 대처(참여자들을 체육 행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무를 부여함
 -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스포츠응급처치 매뉴얼에 제공된 내용을 참고하도록 권고함

나.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 9.1항에 언급된 기타 안전사고 외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고 유형을 파악해야 함

예시 종목별 사고사례

- 2017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에서 선수가 친 파울볼에 2세 여아가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안전사고 발생
- 2018년 프랑스 LPGA 여자골프대회에서 선수가 친 티샷이 갤러리 여성의 오른쪽 눈을 직격하는 안전사고 발생
- 2021년 투르 드 프랑스 자전거 경기에서 관중이 들고 있던 응원 팻말이 선수와 충돌하면서 대규모 연쇄 추들이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 종목별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 야구 경기 중 발생하는 파울볼에 대비하여 주변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를 이용하여 날아오는 파울볼에 대한 주의를 주거나 행사 중 지속적으로 장내 안내방송을 송출할 계획 마련
 - ▷ 골프 코스 내 타구 비거리를 고려하여 갤러리 구역과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 ▷ 사이클과 마라톤 경기의 경우 관람객과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선 확보 계획 마련
- 이 외 종목별 안전사고 유형 파악을 위해서는 이전 대회 및 동일 대회 중 발생된 안전사고 유형을 확인하여 종목별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를 파악해야 함
- 만약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회 안전사고 유형 파악을 위해서 안전사고 일지 작성은 하도록 권고함
- 미국의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방안 마련을 위해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 관리하는 화재 안전코드³⁹⁾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39) NFPA, 「NFPA 101 Life safety code (2024)」

표 56. NFPA 101 Life safety code(2024)

구분	주요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안전성평가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적절한 안전조치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의 성격과 참가자 - 의료응급상황 - 고정 구조물 및 임시 구조물 - 지진 - 시설내부 및 인근에서의 위험물 사고 - 군중밀도 및 출구위치를 고려한 군중동선 - 화재위험성 - 악천후 - 참석자 및 시민에 의한 소란 - 시설관리자, 행사참가자, 비상대응기관 간의 관계소화기, 소화전 등과 같은 소방물자 확보
수용인원별 출구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인원 500명 초과 1,000명 이하의 행사는 최소 3개 이상의 출구(피난로) 설치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의 행사는 최소 4개 이상의 출구(피난로) 설치
통로 경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로의 경사도가 1:8을 초과하는 경우 계단 설치 통로의 경사도가 1:20 이상, 1:8 이하인 경우에는 경사로 설치 허용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명 이상의 참석자가 모이는 행사에는, 참석자 250명당 1인의 안전관리자(Crowd Manager) 선임, 배치
군중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0 ft² (929m²)이상의 장소에서는 군중밀도를 7 ft² (0.65m²)당 1명 미만으로 유지 10,000 ft² (929m²)미만의 장소에서는 군중밀도를 5 ft² (0.46m²)당 1명 미만으로 유지



10.0

행사 전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시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에 대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체육 행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언제,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보고 및 연락 체계 가동이 무엇보다 중요함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관계자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조치를 요청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이 펼쳐지므로 명확한 조치 방안과 연락 체계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함
-

10.1 안전사고 대응 체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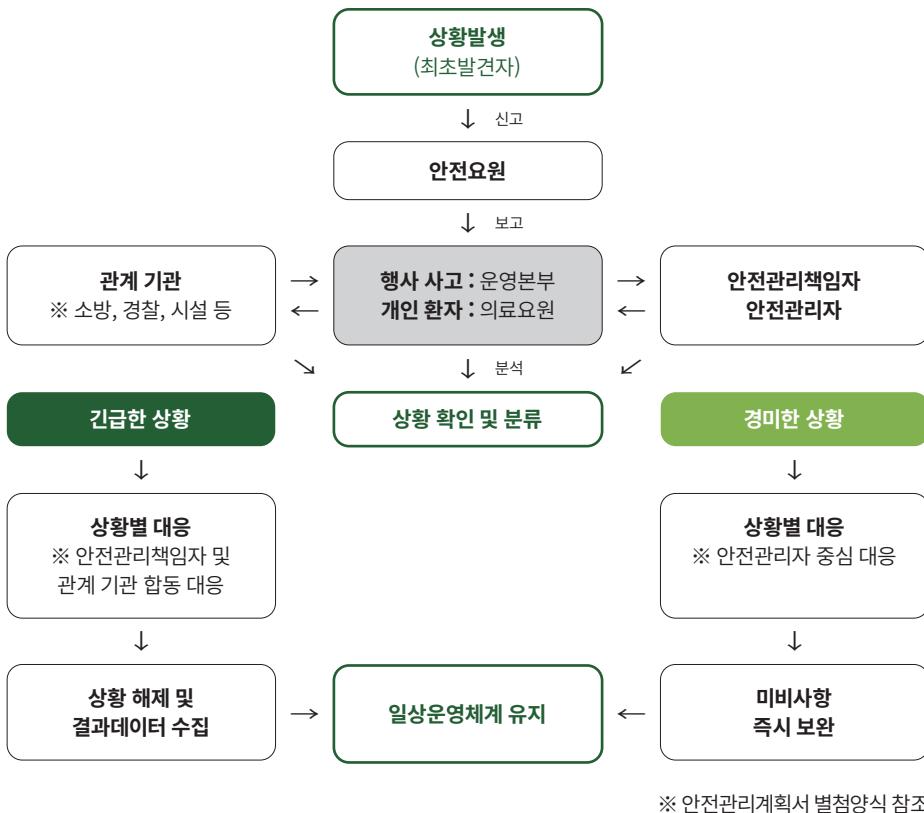
-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최초 발견자는 안전사고 대응 체계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안전사고 경증에 따라 병원 등 관계 기관에 연락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함
- 안전사고 대응 시, 최초발견자부터 관계 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및 시설관리 주체 등 외부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가. 안전사고 대응 체계도

- 안전사고가 처음 발생하면 이를 처음 인지한 사람(최초발견자)이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함
 - ▷ 주변 안전요원에게 도움 요청 및 운영본부 또는 의료요원에게 발생 상황을 보고해야 함
 - ▷ 이 초기 조치는 신속한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함
- 상황 보고를 받은 후, 해당 내용은 관계 부서에 전달되며 사고의 성격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함
 - ▷ 행사 중 사고: 운영본부가 중심이 되어 분석함
 - ▷ 개인 환자 발생: 의료요원이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함
- 성격 파악 후 다음과 같이 분류함
 - ▷ 긴급한 상황: 즉각적으로 다양한 관계 기관 대응이 필요한 상황
 - ▷ 경미한 상황: 자체 처리가 가능하고 확산 우려가 낮은 상황

- 긴급한 경우는 화재, 심정지, 대형 낙상, 군중 압사 등의 생명·시설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상황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 관계 기관(소방, 경찰, 시설 관리팀 등)이 함께 즉각 합동 대응을 해야 함
 - ▷ 상황별로 역할을 나눠 신속하게 응급처치, 통제, 구조, 병원 이송 등이 이루어짐
 - ▷ 사건이 종결되면 상황 해제를 선언하고, 결과 및 조치 사항 데이터 수집,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경미한 경우는 넘어짐, 약간의 부상, 장비 이상 등과 같이 긴급하지 않지만 처리해야 할 상황으로,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보완 조치를 진행 해야 함
 - ▷ 미비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함
- 모든 상황에 대해 적절한 사후 조치 및 일상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해야 함

예시 안전사고 대응 체계도



나. 안전사고 대응 체계도 수립 시 고려사항

- 체육 행사 전 예상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9.1항 안전사고 유형분석)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 최초 발견자 → 안전요원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 관계 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구조화해야 하며, 중복/누락 없이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 8.2항에 따라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시설관리팀 등 외부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무전기, 핸드폰, 메신저 등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체계를 갖추고, 투입된 모든 인력들이 대응 체계를 숙지해야 함
- 대응 체계도는 문서만 있으면 안 되며, 모의훈련 및 비상대피 훈련, 내부회의 등을 통해 실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10.2 연락 체계 구축

- 체육 행사 주최 및 주관기관, 대행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보안요원, 의료요원 등 행사 참여 인력과 소속 임직원 등이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병원 및 경찰서 등 외부기관과의 연락체계 역시 유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가. 내부 연락 체계 구축

- 10.1항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도 흐름을 고려하여 내부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체육 행사 주요 인력인 5.2항에서 임명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주관단체 소속 임직원, 대행사(인력, 시설, 이벤트 담당) 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연락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체육 행사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최초발견자가 될 수 있는 6.1항의 안전요원, 보안요원에게 상위 보고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공유해야 함
- 6.2항의 의료요원 도움을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통신 체계를 마련해야 함

나. 외부 연락 체계 구축

- 10.1항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도 내 긴급한 상황일 경우를 고려하여 8.1항에서 설명한 관계 기관과 외부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함
- 9.1항에서 설명하는 체육 행사 안전사고 유형들 중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를 파악 하여 8.2항 내 해당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 체육 행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중 안전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관계 기관과 연락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사전 점검해야 함

10.3 사고별 시나리오 수립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 등은 이에 따라 본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함

가. 사고별 행동요령 수립

- 체육 행사 개최자는 9.1항의 ‘가. 자연·사회재난 안전사고 유형’의 안전사고 유형별 행동요령을 수립해야 함

표 57.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구분	행동요령
폭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참여자의 체감온도 변화 및 폭염경보 변화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등 실시간 기상정보 안내 • 고위험군(노인, 어린이 등)에 대한 관중석 쿨링존 운영 등 조치 안내 • 폭염에 따른 주의사항 지속적 안내(방송 등)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동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발생 시,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전기 및 가스 등을 차단하도록 안내

구분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승강기를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 - 안내방송을 시행할 때는 평소보다 침착하게 방송하여 선수 및 관중이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 - 대피행동요령, 사고상황, 이동경로, 대피소 도착 후 행동요령과 같은 핵심 내용은 반복적으로 안내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피해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신고하고 상황을 전파하도록 안내 - 지진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소방서에 정확하고 침착하게 화재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안내 - 가능하다면 세부 화재 내용과 인명피해 여부 안내 •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방송, 전광판 자막 및 안전요원을 활용하여 안내 - 안내방송을 할 때는 선수 및 관중이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 - 대피행동요령, 사고상황, 이동경로, 대피소 도착 후 행동요령과 같은 핵심내용은 반복적으로 안내 • 대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발생 시 유리창, 간판 등이 떨어져 위험하므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도록 안내 - 선수와 관중이 모두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대피하도록 안내 -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 유도 및 안내 -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을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접근하지 않도록 안내 - 층별로 대피가 가능한 위치(옥상, 피난구역, 피난계단 등)를 알려 혼잡 방지 - 이용자가 동시에 동일한 출구로 집중되지 않도록 침착한 상황 설명과 대피 안내
태풍 및 호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연락망을 통해 체육활동 참가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침수된 도로 및 교량 위치 안내 •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창문이나 유리문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안내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물의 접촉을 금지하도록 안내 • 전도, 감전 등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소방서나 인근 병원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

구분	행동요령
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수와 관중을 실내로 이동시키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장갑을 착용하거나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도록 안내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 접근을 피하고, 이동시 미끄럼 주의사항 안내 저체온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참가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차를 활용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안내
한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파 특보 발령 시, 참여자의 안전 확인 후 실외 이동 제한 안내 한랭 질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선수단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안내

표 58. 사회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구분	행동요령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중심리에 의한 혼란 방지를 위해 침착한 대응 안내 대피유도는 각 층 안전요원이 비상계단으로 관중 유도 및 안내 지정된 주요 교차점에 안전요원 배치 및 비상계단 사용 유도 및 안내 장애인, 노약자 및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우선 대피 및 안내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안내 낮은 자세로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 텅굴기 등 안내 대피 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안내 안전요원에 의해 우선 대비, 집합장소로 이동하도록 안내 방송 등을 통해 관중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교통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을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곳에 정차하도록 안내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안내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119 신고하여 응급차 요청하도록 안내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차량 위치, 상대방 번호판 등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도록 안내 사고 즉시 보험사 및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 후속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등 및 삼각대 등을 설치하도록 안내

구분	행동요령
다중 운집 인파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운집 인파사고 발생 시, 출입구에서의 진입인파를 차단해야 하며, 진입인파 차단을 위해서는 참여자가 진입하는 외부부터 해산 조치 수행 •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전에 체육 행사장, 축제장, 공연장 등 방문 장소 혼잡상황과 주변 이동경로 확인 • 군중밀집 시 주요 안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원활한 보행 흐름을 위해 오른쪽(양방향 통행 시)으로 통행 안내 - 많은 사람이 모인 좁은 길, 비탈길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의 필요 안내 - 보행 중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면 위험하므로 이동 흐름 주의 보행 안내 - 보행속도가 느려지거나, 다른 사람과 신체가 닿으면 즉시 자리 이탈 안내 - 위험이 느껴지면 신속하게 112 또는 119로 신고 안내 - 군중 속에 갇혔을 경우 보행이 멈춰서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떠밀리게 되면 힘에 저항하지 않고 밀리는 방향으로 몸을 맡김 - 이 때,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한쪽 손으로 반대쪽 팔뚝을 잡아 가슴을 보호하고 숨 쉴 공간을 확보(가방 활용)하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없다면 머리는 두 팔로 감싸고, 다리는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 몸을 공처럼 둉 그렇게 맡아 몸을 보호
미세 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과 환경부 홈페이지 및 기상특보(재난특보 등)를 자주 확인하여 재난 정보 지속적으로 확인 및 안내 • 해당 종목이 재난대응 취약성 등급 중 고위험군에 포함된다면, 발령기준에 대한 조치단계 격상 및 안내 • 안전취약계층 참여 경기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 발령기준보다 격상하여 대응 • 체육 행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을 경우, 사전에 마련한 대비책을 기준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 안내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환자 발생 시, 관계 기관(지자체, 보건소 등) 신고하도록 안내 • 관계 기관의 조치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 격리공간 대기 조치 • 의심환자의 격리상태 유지 및 이송 안내 • 이송 직후 격리공간 폐쇄 및 소독 시행 • 참여자 대상 지속 주의 안내 및 의심증상 신고 안내

예시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개최자)⁴⁰⁾

기상정보 사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청 특보(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체감온도 예보) 상시 모니터링 폭염 영향예보(위험단계별 대응요령) 숙지
의사결정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염 단계별 대응계획 마련 (실사·연기·종단 기준 수립) 총괄 책임자 및 반별 책임자 지정 관계 기관(119, 보건소, 병원 등) 협력체계 구축
현장시설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장 주변 그늘막, 휴식 공간 확보 음수대, 아이스박스, 냉방 기기(선풍기, 쿨러 등) 설치 무더위 쉼터(에어컨 또는 냉방 텐트 등) 확인
의료·구조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열질환 응급키트, 냉찜질팩, 응급의료품 구비 의료요원 배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차·이동동선 사전 확보
홍보·안내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관람객 대상 폭염 행동요령 홍보물 배포 자막, 현수막, 스피커 방송 준비, 모바일 알림 또는 단체 문자 발송 시스템 준비

- 체육 행사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측하여 사고별 행동요령을 분리하여 계획해야 함
- 5.1항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6.1항의 안전요원과 보안요원, 6.2항의 의료요원 직무를 고려하여 역할별 책임 구분과 임무를 부여해야 함
- 8.2항의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협력 및 상황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체육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방법(방송, 배너, 현수막 등)으로 행동요령을 안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사고별 행동요령 계획 수립은 10.1항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40) 스포츠안전재단, 「폭염 대응매뉴얼(2nd Edition)」, 2025

나. 사고별 안내방송 시나리오 수립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서 내 9.1항의 안전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체육 행사에 적용되는 안전사고별 안내방송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함

예시 안전사고 유형별 안내방송 시나리오

화재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장명)을 이용하시는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장소명)에서 발생한 화재는 즉시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뛰지 마시고 안전요원의 유도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여 주십시오. (장소명)에서 발생한 화재는 즉시 진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유도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여 주십시오. (장소명)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의 진압 활동을 위해, (목표물명) 방향으로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고, 안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장명)을 이용하시는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앞서 지진에 의한 피해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뛰지 마시고 침착하게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주십시오. 앞서 발생한 지진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황 조치를 마칠 때까지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목표물) 방향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기장 근처에 위치한 ○○공원으로 대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계단으로 침착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통행 혼잡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장명)을 이용하시는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관람객이 한 곳으로 몰리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오른(왼)쪽 통로 혹은 양쪽 출구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안전요원이 관람객이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기열을 만들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멈추지 마시고 질서 있게 열에 맞춰 이동하여 주십시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내방송 시나리오 수립 시 안전사고 유형별 전달방식(방송, 확성기, 육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마련해야 함(전체 일괄 방송으로 인해 오히려 참가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켜 2차 사고 발생 우려)
- 체육 행사 안내방송 시나리오 송출 시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할 것을 권고함



11.0

행사 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
- 최근 체육 행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는 단순한 실수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준비 부족과 계획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육 행사 개최자는 체육 행사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명시하는 항목을 모두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며, 이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 이자 사회적 책임임을 이해해야 함

 - 앞서 언급한 3.1항부터 10.3항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서 언급한 안전관리계획서 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구성한 내용이며, 추가적으로 아래 항목을 작성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내 포함할 수 있도록 권고함
-

11.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시기

- 안전관리계획서는 체육 행사 개최 2주 전까지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개최 장소 및 시설 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개최 전까지 변경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제13조의2)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⁴¹⁾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체육 행사 개최 2주 전까지 수립하기를 권고함
- 단, 수립 이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제3항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최 전까지 변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4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의2)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2024

11.2 통합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주최 및 주관기관 및 대행사 등 관계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고 문서화되어야 하며, 관계 기관 등의 업무분장과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가.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성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 조직체계가 명확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조직체계 구성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주최 및 주관기관의 부서별, 인력별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함
 - ▷ 비상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8.1항에서 설명하는 관계 기관(응급의료, 위기대응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함
 - ▷ 5.2항에서 언급한 안전관리자 임명에 있어, 외부 대행사(인력, 이벤트, 시설 등)에 위탁할 경우 명확한 임무와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주최 및 주관기관의 합법적인 책임과 권한, 결재 범위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함

나. 조직체계 구성 시 고려사항

- 체육 행사 조직체계 구성 시 조직의 규모를 기준으로 3.1항의 체육 행사 개요 및 3.2항의 참석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업무분장 시 체육 행사의 일반적인 업무 외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균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하며, 제한된 인력에게 업무가 과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외부 대행사 위탁 시 체육 행사 내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최 및 주관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11.3 안전물자 현황 파악

- 체육 행사에 사용되는 안전물자는 계획한 수량에 맞춰 적절한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누락 및 방치가 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가 적절히 관리해야 함
- 체육 행사에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차 등은 관련 법령 및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물자가 배치되는 장소도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배치해야 함

가. 안전물자 확보

- 체육 행사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다음과 같은 안전물자를 제공받아야 함
 - ▷ 안전 관련 인력들은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피복(의류, 모자, 조끼 등)을 착용
 - ▷ 체육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무전기 등의 통신장비 보유
 - ▷ 체육 행사장 내 배치된 인력별(주차장, 관람구역, 출입구역 등) 안전물자(경광봉, 호루라기, 야간: 빛 반사용 물자 등)를 보유
- 체육 행사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물자를 준비해야 함
 - ▷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물자 확보
 - ▷ 응급환자 발생 시 제공될 응급, 구조용품 및 응급차 확보
 - ▷ 체육 행사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될 안전관리 물자(차단봉, 라바콘 등) 확인

나. 안전물자 확보 시 고려사항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물자 확보 및 배치 계획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야 함
 - ▷ 안전물자 종류(응급차, 소화기, AED, 경광봉, 안전조끼 등)와 필요수량 등을 파악해야 함
 - ▷ 6.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는 의료행위 및 처치가 가능한 전문 의료요원(의사,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중 1명과 응급차 1대 이상을 반드시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르면,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주요 안전물자(응급차, 소화기, AED 등)의 경우 주요배치 위치 및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5.0항과 6.0항에 언급된 모든 인력들에게 공유되어야 함
 - ▷ 체육 행사에 이용되는 안전물자의 경우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함
- 주최 및 주관기관이 안전물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자명, 수량, 제원, 유효기간, 인증여부, 수리 이력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관리대장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을 권고함
- 관리대장을 기반으로 물자별 유효기간 초과 여부, 기능적 결함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안전물자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체계를 확보해야 함⁴²⁾

42) 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배포용) 1st Edition」

11.4 참가자 서약서

- 마라톤 등 체육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체육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계약에 해당하여, 서약서의 불공정한 면책조항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참가자 서약서의 조항은 개최자와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률상 공정성과 책임의 범위가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여야 함

가. 서약서 작성 및 주요 포함사항

- 참가자 서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 체육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개최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 ▷ 개최자의 책임 범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
 - ▷ 보험(공제) 가입 내역 및 보장 한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보험의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개최자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음을 명시
 - ▷ 참가자의 건강상태 점검 의무 및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중단·신고 등 대응 절차
 - ▷ 참가자의 과실, 부주의,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개최자는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

- 서약서에는 참가자 본인의 서명 또는 전자동의 절차를 포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설명 후 인자·동의가 확인되어야 함
 -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확인·동의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나. 서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등 개최자 면책을 전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함
- “보험사 규정 또는 한도 내에서만 보상한다”는 식의 보험한도 중심 문구는 개최자의 책임 제한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험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표기해야 함
- “질병으로 인한 사고는 전적으로 참가자 책임”이라는 문구는 참가자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최자의 부주의나 미흡한 응급 대처로 인해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개최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함께 명시해야 함

예시 참가자 유의사항 및 서약서(안)

• 체육 행사 개최자의 안전사항 및 책임 범위

- ① 체육 행사 개최자(이하 개최자)는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전·중·후 전 과정에 걸쳐 안전요원 배치, 응급차량 및 의료요원 운영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와 의료·구호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② 또한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최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였으며, 가입한 보험(공제)의 보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입기관명: 스포츠안전재단)

구분	담보 내용	보장금액
대인배상	개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률상 대물 손해배상금	가입한 담보의 보장금액
	개최자의 배상책임은 없으나, 타인(참가자 등)에게 발생한 상해(경기 중 포함)에 대한 치료비	가입한 담보의 보장금액
치료비		

※ 본 보험은 개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참가자 개인의 질병이나 신체적 문제 등 참가자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개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개최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개최자는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천재지변, 기상 악화, 안전사고 발생,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회를 중단·취소하거나 코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서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개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참가자의 안전사항 및 동의

- ① 참가자는 대회 참가 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참가하여야 합니다.
- ② 경기 중 어지럼증, 통증,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진행요원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의료요원의 판단에 따라 병원 이송될 수 있습니다.
- ③ 대회 중 참가자가 의식 상실·실신 등으로 명시적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요원은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응급조치 시, 참가자의 질병 등에 따라 처치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상 특이사항 등 개최자가 인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개최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 ⑤ 참가자의 질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개최자가 현장에서 합리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개최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참가자는 상기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본 서약이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의 일부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대회운영 정책(참가신청/환불 등) 관련(생략)
- 개인정보 동의 관련(생략)

- 상기 개최자의 안전사항 및 책임 범위, 참가자의 안전사항을 이해했습니다.
- 참가자 본인은 건강상태를 점검하였고 이상 발생 시 의료요원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참가신청/환불 등 대회운영 정책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 참가자 유의사항 및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법정대리인 직접 내용 확인 및 서명 필수

년 월 일

참가자 성명: 홍길동 (인)
법정대리인 성명: 홍길동 (인)

11.5 안전예산 편성

- 체육 행사 참여자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15.2항에 따른 안전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예산 부족으로 인한 안전 관련 인력 및 물자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해야 함

가. 안전예산 확보

- 체육 행사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계획과 더불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정적 기반, 즉 ‘예산’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체육 행사의 예산은 참가자 규모, 유형, 장소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안전 관련 자원은 반드시 요구되어야 함
 - △ 안전요원, 보안요원, 의료요원 등 안전 관련 인력 확보
 - △ 응급구호 장비 확보(응급차, AED, 응급/구조 용품 등)
 - △ 교육훈련(인력별 법정의무 교육, 투입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
 - △ 공제 및 보험 가입(주최자배상책임공제 등)
 - △ 안전물자 확보(무전기, 피복 등)
 - △ 안내물자 확보(AD카드, 유인물, 배너, 포스터 등)

나. 스포츠안전공제(보험) 의무가입

- 체육 행사 참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체육 분야의 보험가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화됨(1.1항의 ‘나. 스포츠안전공제(보험) 관련법’ 참조)
 - ▷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보험 등 가입)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0의2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 ▷ 체육인복지법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 스포츠클럽법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다. 안전예산 편성 계획

- 안전예산 편성은 사고 예방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요소로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예산 편성 계획은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 체육 행사 전체 예산대비 안전예산의 규모를 상대적인 비율로 파악해야 함
 - ▷ 전년도 또는 최근 3개년 대비 안전 예산 편성 주요 변화점을 파악하여(안전사고 이슈 파악 등), 해당 연도 체육 행사에 반영될 안전예산 편성을 계획해야 함
 - ▷ 구체적인 안전 관련 예산 내역에는 11.5항의 ‘가. 안전예산 확보’에 의거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안전 관련 자원을 바탕으로 안전예산 편성을 계획해야 함
- 체육 행사 준비 시 갑작스러운 예산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체육 행사 개최자는 반드시 계획된 안전예산 편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연법의 경우, 전체 예산대비 일정 예산 이상을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1.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공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9에서 언급한 8가지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 관련 인력에게 주요 사항들에 대해 공유해야 함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표 59.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구분	내용
체육 행사 개요 작성 (3.1항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명(제0회 ○○종합체육대회 등) 행사기간 및 시간(전체 기간, 식전 행사, 개회식 및 폐회식 등) 행사 주최(주최, 주관 및 대행사 등)
체육 행사 참석 예정 인원의 세부 작성 (3.2항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인원(선수, 관람객, 안전/운영인력 등) 및 참가자 특성 파악 순간 최대 밀집 예상구역 및 인원(1일 최대 참여 인원, 시간, 장소) 체육 행사장 내 최대수용인원 산정 공제 및 보험가입(가입금액, 대인/대물, 재난안전의무보험 법적 요구사항 준수)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작성 (4.0항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시설물(4.1항 경기구역과 4.2항 경기 외 구역) 임시 설치물(무대 시설, 이벤트 구역, 이동식 화장실 등) 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5.2항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책임자: 주최기관 책임자 안전관리자: 주최 및 주관기관 담당자(각 1명 이상) 11.2항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조직도 구성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주요 임무와 연락처 제공

구분	내용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 확보계획 및 배치계획 작성 (6.3항 및 6.4항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행사에 투입되는 안전 관련 인력(안전, 보안, 의료 등) 확보 현황 및 배치도 안전요원 배치 계획(안전요원 규모, 주요 배치 구역 등) 보안요원 배치 계획(보안요원[경비원 배치신고 대상] 규모, 주요 배치 구역 등) 의료요원 배치 계획(의료요원 규모, 자격사항, 주요 배치 구역 등)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방안 작성 (7.0항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항에 따른 안전 관련 인력 안전교육 운영 계획(교육 이수 증빙서류 별도 관리) 7.1항의 ‘나. 안전교육 계획’에 따른 안전요원 브리핑 운영 계획 7.2항에 따른 안전점검 운영 계획
관계 기관과 협조 필요사항 및 협조 방안 작성 (8.2항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기관 협조 조직도 관계 기관 협조 사항, 협조 여부(유/무선 및 공문 등) 협조 요청 완료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또는 증빙자료 보유
체육 행사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방지 방안 작성(9.0항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행사에 적용될 사고 유형 파악 체육 행사장 내 예상되는 병목 구간 파악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별 예방 대책 및 단계별 추진 방안 마련
체육 행사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방안 작성 (10.0항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행사 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별 안내방송 시나리오 작성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소통 및 연락 체계 구축

나. 안전관리계획서 공유

- 11.6항의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따라 작성된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체육 행사 개최 전 5.0항과 6.0항에 포함되는 안전 관련 인력들에게 주요 사항들에 대해 공유해야 함
- 11.6항의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의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방안은 체육 행사 참여자 모두에게 적절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중 언제든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체육
행사 중

-
- 12.0 체육 행사 안전관리(운영)**
- 12.1 행사 개요 및 참여자 변동사항 파악
 - 12.2 안전물자 검토
 - 12.3 참여자 이동선 및 인파밀집 관리
 - 12.4 의료, 소방 및 응급 등 안전구역 설정 검토
 - 12.5 안전요원의 교육 이수 및 행사 참여 인력 대상 업무분장 확인
 - 12.6 행사 참여인력 배치 확인
 - 12.7 안전사고 대응방안 적정성 검토 및 대응절차
 - 12.8 안전 관련 안내물 검토 및 부착

- 13.0 체육 행사 안전관리(구역)**
- 13.1 경기구역
 - 13.2 주차구역
 - 13.3 출입구역
 - 13.4 이동구역
 - 13.5 관람구역
 - 13.6 부대시설
 - 13.7 접근불가구역
 - 13.8 비상구역
 - 13.9 미디어 구역
 - 13.10 시설 안전물자 검토
- 14.0 체육 행사 안전 점검**
- 14.1 체육 행사 안전점검 시행
 - 14.2 점검 결과 검토 및 개선
 - 14.3 체육 행사 조직 구성원 디브리핑 시행



체육 행사 중 체크리스트

12.1 행사 개요 및 참여자 변동사항 파악 165

가. 안전관리계획 확인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현장에 도착 또는 당일에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8가지 항목(특히 참여자 변동 사항) 중 누락되거나 현장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는가?

나. 참여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체육 행사 당일 참여자가 예상한 것과 달리 증가한 경우 해당 대책이 현장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12.2 안전물자 검토 167

가. 응급 및 안전용품

- 자동심장충격기(AED), 이동식 소화기, 응급차, 라바콘 등 응급 및 안전용품은 적절히 배치 되었으며, 각 용품은 행사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나. 행사 관련 피복 및 장비

- 종목별 및 체육 행사 유형에 따라 안전물자(안전요원 피복 및 모자, AD카드, 몽골텐트 및 통신장비 등)가 적절히 배부/배치되었는지 확인했는가?

다. 식음료

- 주최 및 주관기관에서 준비한 식음료 외에 허가되지 않은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 식음료 제공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12.3 참여자 이동동선 및 인파밀집 관리 171

- 가. 주차구역 관리
 - 주차장 만차, 이중주차 및 불법주차 대책 마련을 확인했는가?

- 나. 출입구역 관리
 - 참여자 밀집을 분산하기 위해 차단선 및 안전요원의 적절한 배치를 확인했는가?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출입구역 입퇴장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입퇴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다. 이동구역 관리
 - 참여자가 좌석 이동을 막고 관중석 통로에 서성이거나 바닥에 앉지 않도록 확인했는가?
 - 행사가 시작되면 입구 밖 안전요원 일부만 남고 행사장 내부 안전관리를 위해 적절한 장소로 이동했는가?
 - 이동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 배치를 확인했는가?

12.4 의료, 소방 및 응급 등 안전구역 설정 검토 175

- 가. 의료구역 적정성 검토
 - 관람객이 의료구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위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나. 소방구역 적정성 검토
 - 소방구역은 유사 시 대처가 용이하도록 경기장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 다. 응급차 대기구역
적정성 검토
 - 응급차 대기구역은 경기구역을 기준으로 선수/관람객 부상 상황에 대비하여 최단 거리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했는가?

12.5 안전요원의 교육 이수 및 행사 참여 인력 대상 업무분장 확인 177

- 가. 안전요원 교육 이수
및 행사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내용 확인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은 체육 행사 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9의제4항 별표4의 2에 기재된 교육 내용을 이수했는지 확인했는가?

- 나. 행사 참여 인력 대상
체육 행사 브리핑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행사 참여 인력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 인력의 업무 내용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브리핑 실시를 확인했는가?

12.6 행사 참여 인력 배치 확인 179

- 가. 안전요원 배치 확인
-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장 전 구역에 안전요원 배치 여부를 확인했는가?
-
- 나. 의료요원 배치 확인
- 안전관리자는 고정형 안전요원과 이동형 안전요원을 정해진 비율대로 분리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치했는지 확인했는가?
-
- 나. 의료요원 배치 확인
- 의료요원 배치 시, 의료요원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 경기 유형 및 성격을 파악했는지 확인했는가?

12.7 안전사고 대응방안 적정성 검토 및 대응절차 181

- 가. 유형별 안전사고
대응방안 적정성 확인
- 안전관리책임자는 자연재난(폭염, 태풍 및 호우, 대설, 한파 등) 및 사회재난(화재, 미세먼지 및 교통체증 등)에 대한 행동요령을 확인했는가?
-
- 나. 안전사고별 관계 기관
업무협조 사항 확인
- 각 재난 유형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 협조체계가 구축된 것을 확인했는가?
-
- 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가 현장에서 계획한 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12.8 안전 관련 안내물 검토 및 부착 185

- 가. 안내물 설치 가이드
- 안내물은 체육 행사 참여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안전 안내물 및 정보 안내물은 안내물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했는가?

13.1 경기구역 191

- 가. 경기구역(FOP)
안정성 확인
- 경기구역의 시설 안정성 확인을 위해 해당 종목의 규정을 확인했는가?
-
- 나. 경기구역(FOP) 시설
설치물 확인
- 보조경기구역이 연습 전용구역으로 활용될 경우, 각 팀별 선수단 연습 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각 팀별 선수단이 연습 전용구역에 한 번에 밀집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 나. 경기구역(FOP) 시설
설치물 확인
- 경기구역 및 보조경기구역에 종목 특성이 반영된 설치물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시설관리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치물별 점검표를 확인했는가?

13.2 주차구역 193

- 가. 최대 수용 인원을 고려한 주차공간 확보 및 운영**
- 주차구역 주차대수는 최대수용인원, 체육 행사 종목/유형 및 체육 행사 규모를 고려하여 확보했는지 확인했는가?
 - 예상 참여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체육 행사를 방문했을 경우 별도 주차공간 확보 등 대비책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나. 동선 분리**
- 주차구역 안전관리를 위해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 분리, 선수/VIP/장애인 등 참여자별 동선 분리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 다. 주차구역 안전요원 배치**
- 체육 행사 시작 전과 종료 후 주차장 이용자가 밀집되는 시간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차량 및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 안전요원 배치를 확인했는가?

13.3 출입구역 196

- 가. 최대 수용 인원 관리**
- 안전관리책임자는 입장지점의 관람객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장지점의 참여자 흐름률이 적절히 유지되는지 확인했는가? (SGSA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당 평방미터당 660명 이하로 참여자 수를 제한)
- 나. 참여자 분산 관리**
- 특정 구역에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 지점이 체육 행사장 주변에 고르게 분포되었고 행사장 출입구가 개방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장 입장에 소요되는 시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출입구 개방이 필요할 시 출입구를 개방했는지 확인했는가?
- 다. 참여자 안내**
- 참여자가 밀집되는 시간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입/퇴장이 될 수 있도록 출입구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물 등을 통해 적절하게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13.4 이동구역 199

- 가. 이동구역 적치물 등 관리
- 이동구역의 장애물 적치 등 이동에 방해가 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상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는가?
- 나. 참여자 안내
- 경기장 내부로 들어오는 입구와 퇴장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안전요원이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13.5 관람구역 201

- 가. 관람구역 내 동선관리
- 행사장 관람구역과 경기구역 분리를 통해 관람구역 이동 동선이 확보됐는지 확인했는가?
- 나. 관람구역 안전관리
- 관람구역 내 이동 동선에 설치되어 있는 적치물 및 기타 설치물 등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관람구역에 입장한 참여자들이 난간 등에 기대어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도록 안내물 또는 안전요원 배치했는지 확인했는가?

13.6 부대시설 203

- 가. 부대시설 관리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매점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 대기열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지 확인했는가?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부대시설 설치가 안전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했는가?

13.7 접근불가구역 205

- 가. 접근불가구역 관리
-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가 접근불가구역을 지정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 접근금지가 요구되는 제한 구역은 접근금지에 대한 안내와 조치가 안내물 등을 통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했고 접근통제를 위해 안전요원이 배치됐는지 확인했는가?

13.8 비상구역 207

- 가. 비상대피 시, 동선 및 적치물 관리
- 화재 위험 등 즉시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체육 행사 내 모든 참여자가 출입구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 나. 비상구역 대피 유도등
- 비상대피 시, 비상대피 경로는 다수의 통로와 입구를 통해 관람객이 신속히 분산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비상대피 통로가 상시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상구 및 대피경로의 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는가?
- 나. 비상구역 대피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은 비상시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는가?

13.9 미디어 구역 211

- 가. 미디어 구역 동선 관리
- 일반 참여자와 미디어 차량 및 관계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 나. 미디어 설비 관리
- 미디어 설비가 참여자 이동에 방해가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참여자가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구역에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했는가?

13.10 시설 안전물자 검토 213

- 가. 소방용품 및 설비 확인**
- 소화전/소화기 등 소화용품 앞에 부적절한 설치물 또는 적치물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 나.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 의료기기 확인**
-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체육 행사장 내 참여자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특정 구역에 설치되었고,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과 함께 비치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 행사장 내외부에 참여자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알 수 있는 안내표시 및 안내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
- 행사장 내외부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상시 작동 가능한지 현장에서 확인했는가?
-
- 다. 기타 안전물자 확인**
- 대기열이 발생하여 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주차구역이나 출입구역 등에 대한 동선관리, 대기열 설정 등을 위해 사용되는 바리케이트와 라바콘 등 안전물자가 충분하게 준비됐는지 확인했는가?

14.1 체육 행사 안전점검 시행 217

- 가. 체육 행사 종 안전점검**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제시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기준으로 행사 진행 중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는가?
-
- 나. 외부 전문기관 활용 및 협조**
- 해당 대회의 특성, 규모, 장소 여건 및 예상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점검 항목을 보완하여 시행했는가?
-
- 최소 연 1회, 체육 행사 안전점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외부기관(스포츠안전재단)의 프로그램을 고려 및 활용했는가?

14.2 점검 결과 검토 및 개선 221

- 가.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 체육 행사는 시설 및 운영 준비 상황에 대한 개최자의 자체 점검 결과와 외부 전문기관(스포츠안전재단 등)의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개최 여부 및 후속 조치를 결정했는가?
- 나. 체육 행사 안전관리 수준 유지 관리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안전계획, 점검 및 행사 운영 중 시설 확인 등을 모두 종합하여 체육 행사 안전관리 수준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했는가?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경기 이상 등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했는가?

14.3 체육 행사 조직 구성원 디브리핑 시행 223

- 가. 디브리핑 시행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구역별 이슈 사항 복기 등 디브리핑을 실시하여 필요 시, 사후 종장기 조치를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했는가?
 - 디브리핑 결과는 별도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했는가?



12.0

행사 중

체육 행사 안전관리 _ 운영

-
- 체육 행사 안전관리(운영) 파트는 사전에 계획한 참석인원에 대한 변동사항 파악, 안전물자 확인 및 참여자 이동동선 및 인원밀집 점검 등이 포함되며, 안전사고 대응방안 적정성 내용도 확인해야 함
-

12.1 행사 개요 및 참여자 변동사항 파악

- 체육 행사 개최 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사전에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 내용의 변동사항 발생 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안전 관련 인력에게 공유해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개최 전 안전관리계획 내용이 변경될 시, 비상 상황 대응계획을 포함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함

가. 안전관리계획 확인

- 체육 행사 中 안전관리란 1.1항의 ‘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 대상 체육 행사 및 조치 사항,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주요 항목, 안전 교육 내용, 체육 행사 안전점검 내용 및 안전점검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표기되어 있는 체육 행사 종목, 기간 및 참석 예정 인원 등 8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함
- 참여자 변동 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서 변동 사항 파악
 -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현장에 도착 후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 야 할 8가지 항목 중 누락되거나 현장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함
 - ▷ 특히, 해당 체육 행사의 참여자 변동 사항(참여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발생 시, 안전관리책임자는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변동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안전요원 등 체육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게 변동 사항을 공유해야 함

나. 참여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체육 행사 당일 관람객이 사전에 계획한 인원보다 많아질 경우, 다음 대책이 포함될 수 있음
 - ▷ 체육 행사장 효과적인 차량 주차를 위한 주차구역 대책
 - ▷ 체육 행사장 출입구 주변의 참여자 밀집화에 대한 대책
 - ▷ 체육 행사장 내 통로 등 과밀화에 대한 대책
 - ▷ 체육 행사 종료 후, 참여자 퇴장 동선 과밀화에 대한 대책
 - ▷ 참여자 과밀화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의료계획 등)
 - ▷ 관람객 증가로 인한 미디어(체육 행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장내 방송 송출 빈도 증편 등) 대책
- 3.2항의 '다.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수'의 비상대피 인원 수용능력에서 평가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비상대피 시간의 적절성 평가와 참여자 비상 대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함

12.2 안전물자 검토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에 사용되는 응급 및 안전용품, 피복 및 장비, 식 음료, 응급 및 안전용품 등이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며, 행사 관련 장비와 응급용품 등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와 적정규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함
- 계획된 물자, 수량, 제원, 유효기간 및 인증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시 신속하게 부족한 물자를 확보해야 함

가. 응급 및 안전용품⁴³⁾

- 자동심장충격기(AED), 이동식 소화기, 응급차, 라바콘 등 응급 및 안전용품은 적절히 배치해야 하며, 각 용품은 행사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응급용품
 - ▷ 11.3항의 '나. 안전물자 확보 시 고려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관람석 수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 것을 권고함

43) 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배포용) 1st Edition」 05. Product(물자)

- ▷ 순간 최대 밀집인원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는 의료행위 및 처치가 가능한 전문 의료요원(의사,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중 1명과 응급차 1대 이상을 반드시 함께 확보해야 함⁴⁴⁾(단, 체육 행사, 종목 등의 개별 규정에 따라 추가확보 할 수 있음)
- ▷ 응급용품의 경우, 행사/종목 특성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구성해야 하며, 추가적인 의료요원 확보 및 의료 부스 마련이 가능할 경우 선수용과 관람객용으로 구분하여 대상에 적합하게 응급용품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이동식 소화기는 상시 가능 수준으로 눈에 잘 띠는 곳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시설관리 주체에서 점검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가 되는지 확인해야 함

■ 안전용품

- ▷ 행사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안전관리 물품(종목특성 물품, 차단봉, 라바콘 및 유도봉 등)을 확보하여 행사에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안전용품은 적절한 장소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물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점검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함

나. 행사 관련 피복 및 장비⁴⁵⁾

■ 피복 및 장비

- ▷ 안전요원 피복 및 모자 등 제공되는 물자는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 ▷ 안전요원, 의료요원 등 수행 직무별로 피복 색상을 다르게 했는지 확인해야 함
- ▷ 전국(장애인)체전 등 중앙에서 통일된 복장으로 일괄 지급한다면, 주관기관에서 별도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부착했는지 확인해야 함
- ▷ 인력별 피복 및 모자 등은 참가자들이 해당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글자와 마크 등의 표식이 삽입됐는지 확인해야 함

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45) 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배포용) 1st Edition」 05. Product(물자)

- ▷ 제공되는 피복 및 모자 외 수행 직무별 AD카드 등을 부가적으로 제작하였는지, 해당 AD 카드는 단순 비표형식이 아니라 출입권한, 비상연락처 및 역할별 임무카드 등을 포함하여 제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종목별 또는 실내체육 행사와 실외체육 행사에 따라 안전물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실외 체육 행사 시, 폭염 대비 몽골텐트 등) 종목 유형 및 체육 행사 유형에 따라 안전물자가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안전요원은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를 위해 적절한 장비와 용품 등을 지원받았는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보조 안전장비를 추가로 지원받았는지 확인해야 함(호루라기, 구조용품, 방한 장비, 기타 보호장비 등)
- ▷ 위기대응구역에 배치된 인력은 지급하는 물품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며 응급상황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물을 지원받았는지 확인해야 함

■ 통신장비

- ▷ 안전 관련 필수 인력(안전요원 등)에게는 무전기와 같은 통신장비를 제공받았고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함
- ▷ 행사장, 주차장, VIP 및 의료구역 등 각종 구역이 광범위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과 같은 일반기기보다 즉시 통신이 가능한 기기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해야 함
- ▷ 모든 안전 인력에게 통신장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중요 구역별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지정하여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다. 식음료⁴⁶⁾

- 행사장 내 반입되는 식음료는 주최 및 주관기관 또는 종합안내소에서 배급하는 것을 권고하며, 식음료 제공 또는 판매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46) 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배포용) 1st Edition」 05. Product(물자)

■ 식음료 위생 등

- ▷ 주최 및 주관기관에서 준비한 식음료 외에 허가되지 않은 판매업체가 행사장 내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행사 특성에 따라 주최 및 주관기관에서 배급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식음료는 종합안내소에서 배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야외에서 배급할 시,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음료 등을 제공을 금하거나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지급해야 하며, 아이스박스 및 냉장고 등을 활용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관리

- ▷ 식음료 제공 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등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통은 뚜껑을 닫아 위생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2.3 참여자 이동동선 및 인파밀집 관리

- 주차구역, 출입구역 및 이동구역은 3.2항의 ‘다.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수’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 등이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재확인해야 함
-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요원의 통제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참여자의 조급함을 유발하여 혼잡을 일으킬 수 있고,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요원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출입구역은 행사 시작 1시간 전후부터 많은 참여자가 밀집되는 구역이므로 필요시 차단선을 설치하여 밀집을 분산해야 하며, 참여자 퇴장 시 한꺼번에 많은 참여자가 입장지점으로 몰리기 때문에 안전요원의 적절한 안내를 통해 과밀집을 방지해야 함
- 행사장 주변 또는 주차장부터 행사장 입장지점, 관람구역 내 통로 등 이동구역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참여자가 몰리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행사장 밖의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인파밀집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에서 제공하는 군중안전 관리 행동요령 매뉴얼⁴⁷⁾의 참조를 권고함

47) 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군중안전관리 행동요령 매뉴얼(배포용)」 02 군중관리 프로세스 재정리

가. 주차구역 관리

- 4.2항의 ‘가. 경기 외 구역의 정의 및 구역별 안전관리 고려사항’에서 언급한 필수 고려사항이 모두 올바르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외에 위험요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함
- 주차구역 과밀집을 방지하고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만차, 이중주차 및 불법주차 등을 방지해야 하며, 효율적인 주차 안내를 위해 주차를 위한 물품 등을 이용하여 주차 관리를 해야 함
- 주차구역 과밀집 방지 및 보행자 보호⁴⁸⁾
 - ▷ 참여자를 위한 주차 공간을 적절히 확보했는지,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함
 - ▷ 주차구역 내 이중주차와 보행자 방해 주차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불법 주차를 방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 주차 후 경기장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주차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효율적인 주차 안내를 위해 물품(야광장비, 안내봉, 안내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 시야에 보이는 위치를 고려하여 주차 지도 및 안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48) 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배포용) 1st Edition」 04 Place(장소)/「스포츠행사 군중안전관리 행동요령 매뉴얼(배포용)」 02 군중관리 프로세스 재정리

나. 출입구역 관리

- 4.2항의 ‘가. 경기 외 구역의 정의 및 구역별 안전관리 고려사항’에서 언급한 필수 고려사항이 모두 올바르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외에 위험요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함
- 참여자 밀집을 분산하기 위해 차단선 및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출입구역의 입장 및 퇴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입/퇴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 **출입구역 안전 확보⁴⁹⁾**
 - ▷ **(입장)** 참여자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또는 장기 대기열 차단선을 설정하고, 안전요원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 ▷ **(입장)** 대열 정렬, 선두 유도 및 분단 유도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원활한 입장을 지원해야 하며, 참여자가 몰리는 줄을 파악하여 참여자 밀집을 분산해야 함
 - ▷ **(입장)**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출입구역에서 집계되는 참여자 수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참여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입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관리해야 함
 - ▷ **(퇴장)** 입장은 참여자가 시간 차이를 두고 행사에 참여하지만 퇴장은 행사 종료 시 동시에 출입구역이 과밀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여자의 원활한 퇴장을 위해 입장보다 더 많은 안전요원의 배치 및 안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 ▷ **(퇴장)** 선수 퇴장을 위해 별도 안전요원이 주차장 입구 동선을 미리 확보하고 신속하게 선수 탑승 차량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퇴장)**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참여자의 퇴장 흐름이 빠르거나 느리지 않도록 이동 속도를 관리해야 하며, 경기장 밖 사람들의 과밀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49) 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군중안전관리 행동요령 매뉴얼(배포용)」 02 군중관리 프로세스/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7.0 동선 – 입구 재정리

다. 이동구역 관리

- 4.2항의 ‘가. 경기 외 구역의 정의 및 구역별 안전관리 고려사항’에서 언급한 필수 고려사항이 모두 올바르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외에 위험요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함
- 이동구역 안전 확보를 통해 참여자 밀집 방지 및 분산 유도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이동구역 모니터링을 통해 이동 구역 참여자 밀집을 방지해야 함
- 이동구역은 참여자가 주차장 도착 시부터 행사장 내부(출입구역, 이동구역, 관람구역, 부대 시설, 접근불가구역, 비상구역, 미디어구역 및 경기구역 등)에서 이동 가능한 모든 구역의 동선을 포함함
- **이동구역 안전 확보**⁵⁰⁾
 - ▷ 행사가 시작되면 입구 밖 안전요원 일부만 남고 행사장 내부 안전관리를 위해 적절한 장소로 이동해야 함
 - ▷ 참여자가 이동 통로를 막지 않도록 하고, 좌석 이동을 막고 관중석 통로에 서성이거나 바닥에 앉지 않도록 해야 함
 - ▷ 행사장 앞쪽에서 참여자 과밀집으로 인한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면 안전요원 간 손을 잡아 통제선을 구축해야 함
 - ▷ 매점 및 화장실 등 휴식 시간 등에 참여자가 몰릴 경우 과밀집이 예상되므로, 안전요원의 적절한 배치 및 안내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함
 - ▷ 이동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예, 이동구역 혼잡 등)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을 배치했는지 확인해야 함
 -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이동구역 과밀 수준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참여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이동구역 상황을 확인해야 함

50)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9.0 동선 – 부대시설 근처 통로 및 출입구
재정리

12.4 의료, 소방 및 응급 등 안전구역 설정 검토

- 의료구역, 소방구역 및 응급차 대기구역이 적절한 장소에 위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응급 차 및 소방차 등이 원활한 진입을 통한 신속한 외부 이동을 위해 행사장 내 이동 동선은 적절히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가. 의료구역 적정성 검토

- 의료구역이 경기구역과 경기 외 구역에 각각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 그렇지 않을 시 각 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 관람객이 의료구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나. 소방구역 적정성 검토

- 소방구역은 경기장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 위치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방차가 행사에 지원될 경우,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다. 응급차 대기구역 적정성 검토

- 응급차 대기구역은 경기구역을 기준으로 선수/관람객의 부상 상황에 대비하여 최단거리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응급차 배치 시 응급차 후면이 행사장 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다만, 경기장 안으로 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경우, 응급차 전면은 경기장 쪽을 향하게 하여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응급차 대기구역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이동 동선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함

12.5 안전요원의 교육 이수 및 행사 참여 인력 대상 업무분장 확인

- 안전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전 행사 참여 인력⁵¹⁾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기재된 교육내용을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행사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전 행사 참여 인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내용을 브리핑해야 하며, 참여자 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와 안전관리 인력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등의 대책을 설명해야 함

가. 안전요원 교육 이수 및 행사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내용 확인

- 안전요원 등 행사 참여 인력의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9의제4항 별표 4의 2에 기재된 교육내용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요원 등 안전관리 인력의 직무 내용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해당 인력의 업무분장 내용을 확인해야 함
- 행사 참여 인력 교육 내용 확인
 -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전, 행사 참여 인력이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수료증 등)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 내용⁵²⁾을 포함해야 함

51) 행사 참여 인력은 단기인력을 의미하며, 안전요원, 보안요원, 의료요원 등으로 구성됨

5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① 체육 행사 개요
 - ② 역할별 담당 업무
 - ③ 비상상황 대처 및 응급처치 방법
- ▷ 상기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함
- 안전요원을 포함한 행사 참여 인력의 업무 분장 내용 확인
 - ▷ 6.1항과 6.2항에 나와 있는 안전요원, 보안요원 및 의료요원의 직무를 고려하여 모든 인력들이 업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함

나. 행사 참여 인력 대상 체육 행사 브리핑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행사 참여 인력에 대해 업무 확인 등 브리핑을 실시해야 하며, 행사 참여 인력이 계획 대비 부족 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안전요원 브리핑
 -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요원, 의료요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 인력의 업무 내용을 기반으로 안전관리 브리핑을 실시해야 함(안전요원 대상 지급되는 핸드북 관련 내용 포함)
 - ▷ 안전요원, 의료요원에 대한 브리핑은 참여자 증가 예상 또는 안전요원 등의 부족 등으로 주차구역, 입장구역, 부대시설 및 체육 행사장 내 통로, 참여자 퇴장 동선 등 위험 예상 구역에 대한 브리핑과(변경사항 포함) 안전사고 대책, 화재 등 비상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 ▷ 기존 본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된 안전요원의 세부 업무에 대해 인식시켜야 함

12.6 행사 참여 인력 배치 확인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같이 올바르게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가. 안전요원 배치 확인

- 체육 행사장 예상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안전 관련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립한 계획서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안전요원 배치 확인
 - ▷ ‘12.1 행사 개요 및 참여자 변동사항 파악’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자가 체육 행사장 전 구역에 안전요원의 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고정형 안전요원과 이동형 안전요원으로 분리하여 배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관리 경험이 많고 유능한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안전관리자는 이동형 안전요원이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계획된 시기에 배정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배치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 12.5항에서 기술한 법정 교육 내용을 이수하였고 수료증을 취득한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안전관리계획 대비 안전요원 등 인력 부족 시, 대응 방안
 - ▷ 안전요원이 체육 행사 당일 적게 참석한 경우, 다음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① 고정형 안전요원 비율을 줄이고 이동형 안전요원 비율을 높임
 - ② 위험구역을 평가하여 주요 위험구역에 안전요원 집중 배치

나. 의료요원 배치 확인

- 의료요원 배치 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과 경기 유형 및 성격을 파악해야 하며 안전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응급차가 효율적으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의료요원 배치 확인**
 - ▷ 의료요원 배치 확인 시, 6.2항에 언급된 종목별 부상발생 빈도 및 사고유형 등을 숙지하는 것 외에 6.4항에 언급된 의료요원 배치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의료요원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실내 또는 실외 경기일 경우 의료요원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기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의료요원을 적절히 배치했는지 확인해야 함
 - ▷ 의료요원이 응급의료실에 상주 또는 비상주일 경우를 고려하여 의료요원이 적절히 배치 되었고 응급차 이동 동선이 효율적으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의료요원 근무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고 본 매뉴얼에서 기준으로 삼은 마지막 안전 요원까지 퇴장하는 시점까지 의료요원이 근무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함

12.7 안전사고 대응방안 적정성 검토 및 대응절차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사회재난 및 기타 안전사고에 대해 대응방안의 적정성과 대응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관계 기관 등과 구축된 협조체계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함

가. 유형별 안전사고 대응방안 적정성 확인

- 9.2 항 및 10.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 등이 대회 당일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 등이 재난 유형별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6.1항에서 언급한 안전관리 핸드북을 지참하여 대회 당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는 재난 유형 및 기준에 따라 체육 행사가 취소 또는 중지될 경우, 참여자 또는 관람객에게 신속하게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함
- 자연재난 대응방안 적정성 확인
 - ▷ 기후성 재난(폭염, 태풍 및 호우, 대설, 한파 등) 대응 방안 적정성 확인
 -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1일 전부터 종료시까지 기상청과 환경부의 홈페이지 및 기상특보(재난 특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회를 취소 또는 중지해야 함

-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요원 등이 기후성 재난에 대해 ‘주의보’ 및 ‘경보’ 등 발령기준에 따른 행동요령을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함
-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발령기준에 따라서 경기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체육 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체육 행사 속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단독으로 체육 행사를 중지시킬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함
-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기후성 재난으로 인한 선수 및 관람객 등의 열사병 및 동상 등 발생을 대비하여 인근 병원, 소방서 및 경찰 등과의 협조체계를 확인해야 함
- ⑤ 안전관리책임자는 풍수해, 지진 및 폭염 매뉴얼을 숙지하고 체육 행사에 대응해야 함

▷ 지진 대응 방안 적정성 확인

-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진에 대한 체육 행사 대응 방안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함
-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요원 등이 단계별 행동요령과 대피장소에 따른 행동요령을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함
-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 전날 지진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체육 행사를 연기할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체육 행사 운영 중 지진 규모 4.0 이상일 경우 체육 행사를 중단하여야 함
-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진 발생 대비를 위해 구축한 관계 기관들의 협조체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사회재난 대응방안 적정성 확인

▷ 화재 발생 방지 및 대응 방안 적정성 확인

- ① 각 행사장 소화전, 소화기 및 사용법 교육, 주요 구역 소화기 배치 및 행사장 인근 소방서와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화재 발생 방지 적정성을 확인해야 함
- ② 안전요원은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③ 화재발생 시, 예상 시나리오, 안전관리 인력(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 요원)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해야 하며 관계 기관(소방서 등)의 협조체계를 확인해야 함

▷ 미세먼지 대응 방안 적정성 확인

-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1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상청과 환경부의 홈페이지 및 기상특보(재난 특보 등)를 확인해야 함
-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요원 등이 미세먼지 ‘매우나쁨’, ‘주의보’ 및 ‘경보’ 등 발령기준에 따른 행동요령을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함
-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발령기준에 따라서 경기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체육 행사 진행 여

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체육 행사 속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단독으로 체육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함

▷ 교통체증 대응 방안 적정성 확인

-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 당일 교통체증이 예상될 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 배치, 관계 기관 협조 방안 등 상황별 대응 방안을 확인해야 함
-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구축한 관계 기관들의 협조체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기타 안전사고 대응방안 적정성

▷ 재난 외 기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적정성 확인

-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의 안전 여부와 환자 상태의 확인, 상황 확인 후 전문 구조기관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전문 구조인력 도착 전까지의 응급처치 방법 등 확인, 신고, 조치의 3가지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체육 행사 중 안전요원들이 심정지 등 참여자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하게 참여자들을 행사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야 함

▷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고 대응방안 적정성 확인

-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인전요원이 종목별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정한 대응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 ②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전사고 일지작성을 통해 종목별 안전사고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안전사고별 관계 기관 업무협조 사항 확인

- 각 재난 유형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업무협조를 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관계 기관 담당자가 현장에 배치되어야 함

- 안전사고에 대한 관계 기관 리스트(소방서, 경찰서, 병원, 시설관리공단, 기타 관계 기관 등) 및 주요 협조 내용은 8.1항의 ‘나. 관계 기관 역할’과 ‘8.2 관계 기관 협조’ 등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함

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 체육 행사 중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시 10.1항에서 언급한 바와 안전사고 대응 체계도에 의거하여 사고 대응을 실시해야 함, 따라서 모든 참여자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상황발생) 현장 내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즉시 안전요원 또는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함(선수 등의 참여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즉시 의료요원에게 우선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상황파악) 상황 인지와 동시에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관계기관(의료, 소방, 경찰 등)은 사고의 성격과 경위 등을 파악하여야 함
 - ▷ (상황분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계기관(의료, 소방, 경찰 등)은 발생한 안전사고가 개인 생명 등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긴급한 상황인지, 작은 부상 등 일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상황인지에 대한 상황분류를 실시해야 함
 - ① (긴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으로 분류된 안전사고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주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상황별 대응을 실시해야 함(선수 등의 참여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고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우선적으로 조치된 내용에 대해 즉시 파악하여야 함)
 - ② (경미한 상황) 경미한 상황으로 분류된 안전사고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을 실시해야 함
 - ▷ (상황해제) (경미한 상황은 미비사항 보완 후 상황해제) 긴급한 상황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상황해제 후 일상운영체계 유지 또는 경기 중단 등의 판단을 관계 기관 등과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또한, 사고 발생 시점부터 사후처리 과정까지 모든 내용들은 안전관리책임자가 검토하고 문서화 할 것을 권고함

12.8 안전 관련 안내물 검토 및 부착

- 안내물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출구로 가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원거리에서도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안내물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안내물은 위험, 경고, 주의 및 미끄럼 방지 등을 경고하는 안전 안내물, 좌석안내, 방향 및 동선 안내, 안전물자 안내 등의 정보 안내물, 그리고 상업용 안내물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물 설치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대관하는 체육 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 정보물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체육 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안내 정보물이 부착되어 있어도, 체육 행사 개최자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꼭 제작하여 부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안내물 등을 별도로 부착해야 함

가. 안내물 설치 가이드

- 안내물은 체육 행사 참여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안전 안내물 및 정보 안내물은 안내물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상업용 안내물은 안전 안내물 및 정보 안내물을 가리는지 확인해야 하며, 참여자의 시선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안내물 설계 확인⁵³⁾

▷ 12.3 참여자 이동동선 및 인파밀집 관리 파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내물만을 보고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① 통로는 안내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명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② 비상구 안내물은 픽토그램 형태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출구’ 또는 ‘비상구’라는 문구가 포함된 텍스트로 보완했는지 확인해야 함
- ③ 출구 또는 비상구 경로로 이어지는 안내물이 우선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체육 행사장 출구 방향으로 쉽게 식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④ 안내물은 입장 지점으로 가는 명확한 경로를 표시하는지 확인해야 함
- ⑤ 안내물은 주차장, 안내 센터, 응급의료실, 승강기, 화장실 및 비상구 위치를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 안내물은 적절한 위치와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⑥ 안내물은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는 다양한 광고물 등과 혼재되어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내물이 너무 많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체육 행사장 안내물은 다음의 일반적인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함

- ① 안내물은 참여자의 시선을 제한하거나 참여자의 동선을 방해하는지 확인해야 함
- ② 모든 안내물은 깨끗하게 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③ 자필로 작성한 안내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자필로 작성한 안내물 사용 금지 권고)
- ④ 출입로에 설치된 안내물은 참여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빛에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⑤ 출입로 표시 안내물은 통로를 따라 반복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53)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16.0 정보통신 및 통제

나. 안내물 확인⁵⁴⁾

■ 안전 안내물

- ▷ 안전 안내물은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광이 부족한 구역에 있는 경우, 인공조명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위험, 경고, 주의 및 미끄럼 방지 등의 안내 문구가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체육 행사 개최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내물 등 안내 정보물을 추가로 부착해야 함
- ▷ 시설관리 주체에서 관람석 난간, 시설물 중 파손된 부분, 접근금지 구역 등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안내물을 빠짐없이 부착했는지 확인해야 함

■ 정보 안내물

- ▷ 정보 안내물은 체육 행사장 또는 특정 제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물이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정보 안내물은 안전 안내물과 혼동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안전 안내물과 혼동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 정보 안내물은 안전 안내물을 가리거나 압도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함
- ▷ 정보 안내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체육 행사 개최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내물 등 안내 정보물을 추가로 부착해야 함
 - ① 경기장 평면도: 축소된 경기장 평면도를 매표소와 정문 등 적절한 곳에 표시해야 하며, 경기장 평면도에는 ‘현재 위치’ 표시가 포함되어야 함. 색상 정보는 색맹인 참여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나 기호로 함께 제공해야 함
 - ② 경기장 규정: 금지 품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③ 방향 안내: 경기장 내외부 방향이 표시되어야 함
 - ④ 좌석번호 안내: 관중석에 있는 좌석번호 관련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 ⑤ 안전물자 안내: 행사 중 제공되는 식음료 정보,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화기 등 응급 및 안전물자 관련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54)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16.0 정보통신 및 통제

■ 상업용 안내물

- ▷ 상업용 안내물 범주에 속하는 안내물은 안전 안내물 또는 정보 안내물을 가려서는 안 되며, 참여자의 시선을 제한하지 않도록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안전 안내물 또는 정보 안내물에 활용되는 주요 색상의 과도한 사용을 피하는지 확인해야 함





13.0

행사 중

체육 행사 안전관리_구역

-
- ‘4.1 경기구역’과 ‘4.2 경기 외 구역’ 항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행사장 구역을 참여자의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동선에 따라 주차구역, 출입구역(입구 또는 출구), 이동구역, 관람구역, 부대시설, 접근불가구역, 비상구역, 미디어구역, 경기구역 등 각 구역 및 구역 내 안전물자로 구분하여 안전관리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체육 행사 안전관리(구역)는 ‘12.0 체육 행사 안전관리_운영’의 내용과 연계하여 체육 행사 시설 관점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및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

13.1 경기구역

- 경기구역의 시설 안정성 관리는 ‘4.1 경기구역’ 항의 종목별 경기구역 규정 및 법령 내용에 따라 체육 행사 중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구성됨
- 경기구역에 비치된 설치물은 시설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목(예, 화재 및 응급구조 관련 용품 등)은 재점검을 해야 함

가. 경기구역(FOP) 안정성 확인

- 체육 행사는 구기 종목, 라켓 종목, 투기 종목, 수상(수중) 종목, e 스포츠 종목 등 많은 종목 별 체육 행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목별 경기구역의 시설 안정성은 해당 종목의 규정을 확인해야 함

예시 55)

프로축구는 경기구역의 피치(FOP) 사이즈, 안전구역, 보조구역, 잔디 관리, 주당 최대 사용 시간, 온도조절시스템, 잔디 성장 조명시스템, 흡기 및 통풍 시스템, 하이브리드 잔디 등 경기구역(FOP)의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후략)

55)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장 시설기준 가이드라인, 제3장 경기구역

- 보조경기구역은 체육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구역이나 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역이므로 보조경기구역도 경기구역으로 포함하여 시설 안정성을 확인해야 함
 - ▷ 단체 종목의 경우, 보조경기구역이 연습 전용구역으로 활용될 경우, 팀별 선수단 연습 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며 팀별로 이와 같은 내용을 수시로 전달해야 함(팀별 선수단이 연습 전용구역에 한번에 밀집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보조경기구역이 없는 행사의 경우 선수들이 경기 전 몸을 풀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몸을 풀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만 선수들이 몸을 풀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 ▷ 보조경기구역은 시설물의 파손, 미끄럼 방지 등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공해야 하며, 해당 공간에서는 관람객 입장이 제한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권고함

나. 경기구역(FOP) 시설 설치물 확인

- 경기구역 및 보조경기구역에 종목 특성이 반영된 설치물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시설관리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치물별 점검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13.9 미디어 구역’에 언급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경기구역에 설치된 카메라, 모니터, 영상 및 음향 장비 등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13.2 주차구역

- 체육 행사 운영 시 행사 참여자의 과밀집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관리 구역 중 하나로서 행사 참여자의 최대 수용 인원을 고려한 주차공간 확보 및 과밀집을 예방할 수 있는 차량과 인력에 대한 동선 분리등 안전관리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체육 행사 진행 중 주차구역 안전관리는 3.2항 및 12.3항에 따라 참여자 이동동선 및 인파밀집 관리 등 관련 내용과 연계하여 주차구역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가. 최대 수용 인원을 고려한 주차공간 확보 및 운영

- 체육 행사 참여 최대 수용 인원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주차공간 확보 및 행사 참여자들의 안전 이용을 위한 주차구역(3.2항의 ‘다.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 수’, 12.3항의 ‘가. 주차구역 관리’ 참조) 관리 내용을 확인해야 함
 - ▷ 주차구역의 주차대수는 최대수용인원을 고려하되 체육 행사 종목, 규모, 참여형 및 관람 형 등에 따라 관람자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⁵⁶⁾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체육 행사 참여자(선수, 행사 관계자, 참여자 등)를 위한 적정 주차공간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함

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 ▷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와 예상 참여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체육 행사를 방문했을 경우
별도 주차공간 확보 등 대비책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주차장은 주차라인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시 주차장 등을 활용할 경우, 안내
선이나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주차 보조선이 없는 경우, 별도로 표식 및 줄 등을 활용하여 표기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하며 사용 가능한 상태로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장애인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임시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 필요)

나. 동선 분리

- 주차구역의 안전관리를 위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 분리 및 선수, VIP, 장애인 등 참여자별
동선 분리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보행자와 차량 이동 동선은 반드시 분리하여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원활한 행사 운
영을 위해 VIP 및 관계자 등 주차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비표제
작/운영)
- 선수단 전용 주차장은 행사장 또는 선수 대기실과 가장 가까운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운영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다. 주차구역 안전요원 배치

- 12.1항의 안전관리계획 확인 항목을 반영한 주차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6.4항
의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배치 계획’ 참조) 및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체육 행사 시작 전과 체육 행사 종료 후 주차장 이용자가 밀집되는 시간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차량 및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교통 흐름 통제 및 입·출차 안내, 주차를 위한 안내 활동 등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주차구역 내 위험구역의 경우(차량과 보행자가 겹치는 구간, 그 외 차량통제가 필요한 구역 등)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 차량 이동 및 주차장 접근 시 서행 안내, 주차구역 내 이중주차 및 보행자 방해 주차 등에 대해 지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주차구역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복장을 갖추고 주차 공간 내 효율적인 차량 유도를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 ▷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주차구역 내 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동이 제한이 되는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금지 안내표식을 설치하고 선수와 참여자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확인해야 함

13.3 출입구역

- 체육 행사 중 출입구역 안전관리는 3.2항의 ‘나. 체육시설 수용인원 산정’, ‘다.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수’, ‘라. 참여자 특성 파악’, ‘12.3 참여자 이동동선 및 인파밀집 관리’ 등 관련 내용과 연계하여 출입구역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가. 최대 수용 인원 관리

- 3.2항의 ‘다.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간 최대 인원수에 도달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경기 시작 1시간 전⁵⁷⁾이므로 체육 행사장의 출입구 개수를 고려하여 입장 지점의 최대 수용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일반적인 상황 외, 체육 행사 내 각종 이벤트 등으로 인해 참여자가 순간적으로 밀집할 경우도 고려하여야 함)
- 3.2항의 ‘다.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SGSA⁵⁸⁾의 경우, 행사장 출입구역의 흐름률은 입장 지점에서 시간당 1평방미터당 66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출입구와 시간당 통과 참여자 수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역의 최대 수용인원을 산정해야 하며 현장에서 이를 확인해야 함

57)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2.0 스포츠 경기장의 안전한 수용능력 산정하기

58)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2.0 스포츠 경기장의 안전한 수용능력 산정하기

나. 참여자 분산 관리

- 특정 구역에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 지점이 체육 행사장 주변에 고르게 분포되었고 행사장 출입구가 개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출입구역 주변에 구역 안내도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경기장에 접근하는 참여자가 사용할 입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동식 안전 펜스를 사용하여 체육 행사장 접근로를 여러 개의 통로로 나누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요원은 참여자를 적절한 통로로 안내하기 위해 올바르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각 출입구역에서 집계되는 참여자 수를 모니터링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 출입구역의 입장 속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행사장 밖에 남아 있는 참여자가 입장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평가해야 하며, 대기하는 참여자가 출입구역의 최대 수용 인원보다 많을 경우, 대기하는 참여자를 위한 추가 출입구를 개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입/퇴장 참여자들이 서로 겹쳐 동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장과 퇴장 동선은 명확하게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다. 참여자 안내

- 행사장 출입구역에 참여자가 밀집되는 시간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입/퇴장을 지원하도록 출입구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물 등을 통해 적절하게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관람구역과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입/퇴장 할 수 있도록 분산 안내하는지 확인해야 함
- 행사장 입장 및 퇴장 시, 주차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가까운 출입구역에 참여자가 과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대기열이 길어지지 않도록 출입구 안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안내는 모든 참여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안내를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등은 성능이 적합한지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출입구역 내 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동이 제한이 되는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금지 안내표식을 설치하고 선수와 참여자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확인해야 함

13.4 이동구역

- 4.2항의 ‘가. 경기 외 구역의 정의 및 구역별 안전관리 고려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육 행사 운영 시 이동구역은 행사 시작부터 행사 종료까지 행사 참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 출입구역, 이동구역, 관람구역, 부대시설, 접근불가 구역, 비상구역, 미디어 구역 등의 모든 이동 통로를 포함함
- 체육 행사 중 이동구역 안전관리는 ‘3.2 참석 예정 인원 관리’, ‘12.3 참여자 이동동선 및 인파 밀집 관리’ 등 관련 내용과 연계하여 체육 행사 진행 중 이동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 이동구역의 경우 선수 준비운동, 참여자 대기장소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내하여야 함

가. 이동구역 적치물 등 관리

- 3.2항의 ‘다.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수’에서 언급한 이동구역의 장애물 적치 등 이동에 방해가 될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상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 구역별(출입구역, 부대시설) 대기열이 발생될 경우, 일반 참여자들이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함
-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대가 진입할 수 있는 경로와 참여자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출구 안팎으로 장애물 또는 적치물 등이 방지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함

- ▷ 체육 행사 필요 물품, 선수별 개인 장비 등을 출구 안팎으로 적치하여 동선에 방해를 주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 ▷ 임시 설비물(가벽, 몽골텐트 등) 등이 입/출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쓰레기통은 이동할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와 동선을 막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바닥을 미끄럽게 하여 동선을 방해하거나 낙상사고를 일으키는 쓰레기, 휴지 및 액체 등은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화장실, 음식점 및 기타 부대시설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은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이동구역 내 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동이 제한이 되는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금지 안내표식을 설치하고 선수와 참여자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확인해야 함

나. 참여자 안내

- 경기장 내부로 들어오는 참여자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동 입구와 퇴장 경로는 명확하게 표시되었고, 측면과 횡방향으로 표지판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경기장 내부로 들어오는 입구와 퇴장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예, 출입구와 계단 주변 통로의 혼잡 방지 등)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안전요원이 안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안전요원은 경기장 내 안내 센터, 응급실, 승강기, 화장실, 매점 및 흡연구역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해 참여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선수, 지도자, 일반 참여자(선수 가족 등)를 포함한 모든 체육 행사 참여자가 행사장 내 이동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안내물 또는 안전요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단체 종목의 경우, 비교적 많은 인원의 선수들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이동 동선과 겹치는지 확인하고 분리하여 운영 필요

13.5 관람구역

- 관람구역은 관람객과 선수, 미디어, VIP 및 관계자 등이 분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단체 종목의 경우 비교적 많은 선수들이 한 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관람객과 선수 등이 겹치지 않게 관리해야 함
- 관람구역에 자재 등 불필요한 물품이 적재되어 있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쓰레기 등이 방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관람구역 내 위험요소(난간, 계단 등)에 대해 참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함

가. 관람구역 내 동선관리⁵⁹⁾

- 행사장 관람구역과 경기구역의 분리를 통해 관람 구역 이동 동선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행사장 내부가 협소하거나 출입구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관람구역 확보가 어려울 시,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선수와 참여자가 겹치지 않도록 이동 동선이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59) 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배포용) 1st Edition」 04 Place(장소)

- ▷ 행사장 주변에 관람석이 있는 경우, 관람석과 행사장 사이에 별도의 바리케이드, 차단봉 등의 설치 또는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경기구역 이동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주의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기구역에 참여자의 출입 통제를 위한 차단봉 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나. 관람구역 안전관리⁶⁰⁾

- 관람구역 통로에 이동을 방해하는 등 위험요소는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함
 - ▷ 관람구역 내 이동 동선에 설치되어 있는 적치물 및 기타 설치물 등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참여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전선 및 장비 등은 보호용품 또는 테이프 등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었고 이동 시 부딪힐 수 있는 장비 등은 접근금지 안내 표식을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함
 - ▷ 장애인 관람구역의 경우, 항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적치물 등이 쌓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관람구역 내 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동이 제한이 되는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금지 안내표식을 설치하고 선수와 참여자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확인해야 함
 - ▷ 12.8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급한 안내물이 관람구역에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고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함
- 관람구역에 입장한 참여자들이 난간 등에 기대어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도록 안내물 또는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관리하여야 함

60) 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배포용) 1st Edition」 04 Place(장소)

13.6 부대시설

- 부대시설이 참여자 이동 동선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매점 및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은 참여자의 긴 대기줄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매점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 대기줄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간이 매점 및 화장실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가. 부대시설 관리⁶¹⁾

- 체육 행사장 부대시설은 음식점, 매점, 이벤트 공간(체험부스 등), 화장실, 흡연실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대시설은 대기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함
 -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매점, 화장실 등 부대시설의 대기열이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 음식점, 매점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은 퇴장 경로상의 참여자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경기장 부대시설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 등은 참여자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61)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7.0 동선 – 입구와 대한축구연맹 경기장 시설기준 가이드라인 재정리

- ▷ 참여자가 식음료 구입을 위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혼잡을 야기하지 않도록 매점 및 음식점이 충분한 개수와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고정 설치된 매점 부스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임시 간이매점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임시 간이매점 설치 시 관람객 이동 동선에 방해가 되는지 확인해야 함
 - ▷ 모든 화장실은 참여자의 어떤 좌석에서도 접근이 쉽도록 모든 구역에 균등하게 설치되었고 충분한 수의 남녀 화장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흡연실은 관람객 통행이 많지 않은 구역 중 일부를 할당하여 배치하였고, 흡연구역의 담배 연기가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외부로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부대시설 이동경로 등에 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동이 제한이 되는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금지 안내표식을 설치하고 선수와 참여자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확인해야 함
- 1.1항에서 언급한 공연법에 따라 해당 법령에 적용되는 무대시설의 경우 시설 설치가 안전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함

13.7 접근불가구역

- 전기실 및 설비실 등 접근불가구역은 일반 참여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지, 일반 참여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는지, 안내물 등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VIP 구역, 미디어 구역, 운영분부 등 접근불가구역은 일반 참여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 요원 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가. 접근불가구역 관리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접근불가구역(접근제한구역)의 제한 조치 내용을 상시적으로 확인해야 함^[62]
 - ▷ 접근불가구역은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접근제한구역으로서 체육 행사 규모, 종목, 행사장 시설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수단 구역 및 심판실과 관계자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계자 구역은 미디어 구역, VIP 구역, 전기실, 설비실, 가스실, 운영분부 등으로 구분됨

62)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점검사항(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13서식 7항)/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배포용) 1st Edition」 04 Place(장소) 재정리

- ▷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가 접근불가구역을 지정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접근금지가 요구되는 제한 구역은 접근금지에 대한 안내와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접근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전기실, 설비실 등 시설 관계자 이외의 인원 접근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주의 및 통제가 되는지 확인해야 함
- ▷ 접근불가구역의 출입문은 잠금 상태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접근불가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식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행사 운영 중 유사시 즉시 개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또는 배치된 안전요원이 개방 방법에 대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참여자 또는 관계자를 통제할 경우,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AD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회(행사) 장소에서 접근 권한에 따라 적절한 통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경기구역과 관람구역 사이에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하여 참여자가 경기구역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선수 대기실이 전용 이동 통로에 배치되었다면, 참여자가 대기실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선수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AD카드를 통해 접근 구역 기준에 따른 출입 통제가 가능하며, 전기실, 설비실, 가스실 등 위험구역은 관계자 외 접근금지 안내물을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13.8 비상구역

- 비상구역 최대수용능력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체육시설물 화재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나쁠수록 행사장 최대수용능력도 이에 따라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함
-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출입구가 적절히 분산되어 있어 참여자가 신속하게 행사장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동 경로에 적치물 등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함
- 비상 대피 시, 이동 동선에 있는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비상구 표시등이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SGSA⁶³⁾에 따르면 체육 행사장 통로 등 실내 조도는 최소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가. 비상대피 시, 동선 및 적치물 관리

- 화재 위험 등 즉시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육 행사 내 모든 참여자가 출입구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해야 함
 - ▷ 비상구 경로 전체에 걸쳐 참여자의 현재 위치에서 출입구까지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한 환경인지 검토해야 함

63)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17.0 기계 및 전기 설비

▷ 체육 시설의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화재 발생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체육 시설의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 높음

표 60. 화재위험유발지수(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등급	평가점수	위험수준
A	80 이상	20 미만
B	60 이상 79 이하	20 이상 39 이하
C	40 이상 59 이하	40 이상 59 이하
D	20 이상 39 이하	60 이상 79 이하
E	20 미만	80 이상

예시 ⁶⁴⁾

SGSA의 경우, 체육 시설에 대한 화재 평가 등급을 고위험, 중위험 및 저위험 등급의 3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위험 등급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설명
고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연성 건축구조물 • 화재, 열 및 연기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건축구조물 • 좌석 및 바닥 등 아래에 쓰레기나 적치물이 쌓일 수 있는 빈 공간이 존재 • 매점 등 부대 시설과 비상구 경로 사이에 불연성 구역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 존재
중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확산 위험이 낮음 •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음 • 효과적인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 위험이 낮음 •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음 • 화재로 의한 생명 위협 위험이 낮음

64)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15.0 소방 안전

- 비상대피 시, 비상대피 경로는 다수의 통로와 입구를 통해 관람객이 신속히 분산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체육 행사장 모든 구역에서 비상대피 경로가 하나 이상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상대피 경로 부재 시, 다른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이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행사 규모에 맞게 분산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구의 개수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하며 관람객을 대피시켜야 할 경우 비상구에서 가까운 관람객부터 대피하도록 해야 함
 - ▷ 비상대피 경로는 경기장 부대시설과 연결된 다수의 통로와 입구를 통해 관람객이 신속히 분산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시, 비상대피 경로를 확보해야 함
 - ▷ 모든 비상구는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만일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비상구가 있을 시,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해당 부분이 고려된 피난 안내도를 재부착했는지 확인해야 함
 - ▷ 특별한 상황으로 특정 비상구 출입문 개방이 제한될 경우에는 위급 상황 시 빠르게 개방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가 구축되었는지, 담당 근무자 열쇠 소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대비했는지 확인해야 함
 - ▷ 재난 상황 등 비상구 이용 시 장애인 참가자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의 문제로 제한될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여 대비했는지 확인해야 함
 - ▷ 비상대피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별도 집결지(대피소 등)를 마련해야 하며 참여자들이 집결지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비상구 및 대피경로의 적치물이 없어야 하며, 비상대피 통로가 상시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비상구 및 대피 경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함
 - ▷ 비상구로 사용되는 통로에 자재 적재나 보관 유무 확인해야 함
 - ▷ 쓰레기와 폐기물 적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비상구의 시인성을 차단하거나 저해하는 설치물이나 물품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행사 참여자들이 비상구 이용이 용이하도록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 피난 안내도 등의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함

나. 비상구역 대피 유도등⁶⁵⁾

- 비상구역 대피 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1항의 ‘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비상시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대피 유도등의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함

▷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피난구 바로 위에 설치되므로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함

예시



▷ (통로유도등) 복도통로 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되며, 행사장 이동구역의 이동경로를 따라 비상 대피 경로를 안내하며, 통로유도등의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함

예시



▷ (객석유도등) 행사장 객석의 통로나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 비상 시 피난구의 방향을 나타내며,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함

예시



- 유도등은 비상시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함

65) 한국소방안전원 웹진(소방안전플러스), 「소방안전, 알기쉬운 소방상식」

13.9 미디어 구역

- 미디어 구역은 일반 참여자와 미디어 차량 및 관계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미디어 설비는 참여자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참여자가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구역에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가. 미디어 구역 동선 관리⁶⁶⁾

- 미디어 구역의 이동 동선은 일반 참여자 이동 동선과 분리되어 운영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함
 - ▷ 미디어 구역과 일반 구역을 명확히 하고 관람객, 선수, 참여자들의 동선을 분리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 ▷ 미디어 종사자 및 관련 인원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 출입구와 구역 내 이동을 위한 전용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미디어 인력의 이동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펜스, 유도선,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66)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2.0 스포츠 경기장의 안전한 수용능력 산정하기

- 안전요원의 미디어 구역 동선 관리를 통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밀집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 점검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미디어 구역 이동경로 등에 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동이 제한이 되는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금지 안내표식을 설치하고 선수와 참여자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했는지 확인해야 함

나. 미디어 설비 관리⁶⁷⁾

- 모든 케이블은 모든 참여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함
- 케이블은 통로나 통로를 따라 설치하거나 가로질러 설치해서는 안 되며, 참여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됨
- 경기장 내부 주변에 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케이블은 매립하거나 케이블 덕트에 설치해야 하며, 케이블 덕트는 튼튼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함
- 미디어 설비는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느슨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함
- 미디어 설비(드론 등)가 참여자에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 장비를 고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해야 함

67)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2.0 스포츠 경기장의 안전한 수용능력
산정하기

13.10 시설 안전물자 검토

- 소방용품과 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설관리 주체에서 점검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 의료기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사장 내에 비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행사장 내 적절한 구역에 안내물을 설치하여 참여자가 비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함
- 소방용품과 응급 의료기기 이외에 체육 행사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바리게이트, 차단봉, 라바콘 등 안전물자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함

가. 소방용품 및 설비 확인

- 소화설비(자동소화장치, 옥내외 소화전 등),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을 포함하여 확인해야 함
- ‘12.7 안전사고 대응방안 적정성 검토 및 대응절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화용품은 화재 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안전물자이므로 소화용품(소화전, 소화기 등) 앞에 부적절한 설치물 또는 적치물이 있으면 이를 해체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함
- 소화전 함이 벽면 밖으로 돌출될 경우, 통행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12.8항의 ‘가. 안내물 설치 가이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눈에 잘 띠는 경고 안내물 등을 부착했는지 확인해야 함

- 11.3항의 ‘나. 안전물자 확보 시 고려사항’과 12.2항의 ‘가. 응급 및 안전용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동식 소화기는 눈에 잘 띠는 곳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시설관리 주체에서 점검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함
- 13.4항의 ‘가. 이동구역 적치물 등 관리’, 13.6항의 ‘가. 부대시설 관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흡연구역은 별도로 설치하고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또는 방화사(모래) 등을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함

나.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 의료기기 확인

- ‘11.3 안전물자 현황 파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르면,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 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현장에서 이를 확인해야 함
 - ▷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체육 행사장 내 참여자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특정 구역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자동심장충격기(AED)는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장 내에 일정 규격의 보관함에 보관하되, 도난 경보장치 등 적절한 도난 방지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과 함께 비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행사장 입구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행사장 내부에서도 참여자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안내물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 체육 행사 시 사전 협조한 응급차 내 AED를 포함한 필수 의료기기가 구비되어 있고 각 물품이 상시 작동 가능한지 현장에서 한번 더 확인해야 함

다. 기타 안전물자 확인

- ‘12.3 참여자 이동동선 및 인파밀집 관리’, 13.5항의 ’가. 관람구역 내 동선관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열이 발생하여 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주차구역이나 출입구역 등에 대한 구역별 동선관리, 대기열 설정 등을 위해 사용되는 바리게이트와 라바콘 등 안전물자가 충분하게 구역별로 준비되어 있는지 항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함



14.0

행사 중

체육 행사 안전점검

-
- 체육 행사 전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며, 체육 행사 운영의 안전관리 체계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보완 사항과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야 함

 - 점검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개선 사항은 행사 중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 분석하여 차기 대회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14.1 체육 행사 안전점검 시행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제시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기준으로 하여 행사 진행 중 정기·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법정 점검 항목은 반드시 이행하되 본 대회의 특성, 규모, 장소 여건 및 예상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인 점검 항목을 추가·보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체육 행사 중에 안전점검표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해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하여 조치해야 함
- 체육 행사 중 안전점검은 스포츠안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

가. 체육 행사 중 안전점검

- 체육 행사 개최자는 체육 행사 중 안전점검을 시행할 시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정해진 일시에 시행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서 내의 내용과 대조 및 확인하여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안전요원 교육 시 점검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숙지시켜야 함
- 7.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제시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기준으로 하여 행사 진행 중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법정 점검 항목은 반드시 이행하되 본 대회의 특성, 규모, 장소 여건 및 예상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인 점검 항목을 추가·보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중 항목별 충족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음

표 61. 항목별 충족 기준 예시

구 분	항목 충족 예시
행사 참여자 (행사 운영자, 선수, 관람객 등) 이용 시설 안정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구역과 관람구역을 분리하여 운영 통로에 이동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요소는 안전하게 처리 행사 참여자별(행사 운영자, 선수, 관람객 등) 별도의 출입 시설을 적절히 운영
비상구 개폐 및 비상등 점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구 출입문은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 있거나 열기 쉽도록 장치 비상등은 고장 없이 작동
전기실 등 접근 제한 구역의 제한 조치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실 및 설비실 등 참여자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주의 및 통제 안내 접근 제한 구역은 참여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 있음
행사장 내 응급 용품 종류, 규모 및 사용 가능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행사 규모 및 종목 특성에 따라 응급구조 및 구급 용품 등을 적절하게 보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물품(차단봉, 유도봉, 무전기 등)을 충분하게 보유
안전 표지판 및 안내물의 적정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장 내/외 제공되는 안내물(유인물, 배너, 표지판, 포스터 등)은 목적에 부합하여 적절하게 제작 및 활용 행사장 안전을 위한 안내물(유인물, 배너, 표지판, 포스터 등)은 적절한 장소 및 위치, 시간에 따라 활용

- 점검결과 ‘미실시’, ‘미흡’으로 도출된 경우 조치일자 및 조치사항에 대해 점검표 내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1. 행사 개요

행사명		체육 행사 개최자	
기간/장소		종목	
참석 예정 인원		안전관리 책임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일자	점검결과	조치일자 및 조치사항 ※ 점검결과가 미실시·미흡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① 행사 참석 예정 인원 및 행사 장소 · 시설 현황 사전 파악		실시 [] 미실시 []	
② 안전관리 인력 지정, 업무분장 수립 및 관계자 공유(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 등)		실시 [] 미실시 []	
③ 인파 밀집 예상지역 및 출입로 등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계획 수립		실시 [] 미실시 []	
④ 안전사고 유형별 시나리오 마련 및 대피계획 수립		실시 [] 미실시 []	
⑤ 행사 참여자(행사 운영자, 선수, 관람객 등) 이용시설의 안정성 확인		양호 [] 미흡 []	
⑥ 비상구 개폐 및 비상등 점등 확인		양호 [] 미흡 []	
⑦ 전기실 등 접근 제한 구역의 제한 조치 내용 확인		양호 [] 미흡 []	
⑧ 행사장 내 응급 용품 종류, 규모 및 사용가능 여부 확인		양호 [] 미흡 []	
⑨ 안전 표지판 및 안내물의 적정성 확인		양호 [] 미흡 []	

점검자 :

(서명 또는 암)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나. 외부 전문기관 활용 및 협조

- 7.2항의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점검 수행은 자체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최소 연 1회, 필요시 체육 행사 안전점검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스포츠안전재단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⁶⁸⁾
- 스포츠안전재단에서는 사전점검 컨설팅, 운영점검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점검 컨설팅의 유형은 아래와 같음
 - ▷ **사전(개최 전)점검:** 행사개최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계획, 시설·장소 상태, 인력 및 물자 배치계획 등을 검토하고, 본 대회 운영 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제공함
 - ▷ **운영(개최 중)점검:** 행사 진행 중에 안전관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미흡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지원. 또한, 차기 대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후 개선 권고 사항을 제시함
 - ▷ **신청 대상:** ‘3.1 체육 행사 개요’에서 언급한 체육 행사 개최 주최 및 주관단체, 외부 대행사 등
 - ▷ **신청 절차:** 체육 행사 개최 2주 전 신청 권고
- ‘7.2 안전점검 계획 수립’에서 언급한 대로 외부 점검 위탁 시 안전관리계획서 내 외부 기관의 점검 계획 또한 명시해야 함
- 안전점검은 스포츠안전재단 안전관리실 안전연구팀에 신청 가능함(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포털(<https://event.sportsafety.or.kr>))
- 스포츠안전재단의 사전 점검 컨설팅을 이행한 체육 행사 개최자는 사전 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언급된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이 되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함
- 스포츠안전재단의 운영점검 컨설팅 진행 시 원활한 인터뷰 협조 및 점검현장 동행 등 안전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운영점검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위험 요인은 즉시 개선 및 중장기 개선 등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해야 함

6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의2)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2024

14.2 점검 결과 검토 및 개선

- 체육 행사는 시설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은 참가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가.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 체육 행사는 시설 및 운영 준비 상황에 대한 개최자의 자체 점검 결과와 외부 전문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개최 여부 및 후속 개선 조치를 결정하여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관련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자(경기감독관, 경기이사 등)에게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자체 점검 결과와 14.1항의 ‘나. 외부 전문기관 활용 및 협조’에서 언급한 스포츠안전재단의 사전/운영 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할 수 있음

나. 체육 행사 안전관리 수준 유지 관리

-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는 모든 위험 요소를 포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점검표 외 종목별, 행사 유형에 따른 추가적인 체육 행사 전반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 실제로 계획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를 점검해야 하며, 계획과 실행 간의 보완 사항이 있는지 상시 확인해야 함
- 안전점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외에 ‘12.0 체육 행사 안전관리_운영’과 ‘13.0 체육 행사 안전 관리_구역’의 세부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항을 점검하여 체 육 행사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 안전계획, 점검, 행사 운영 중 시설 확인 등을 모두 종합하여 최소 일 1회 이상은 안전관리책 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체육 행사 안전관리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함

14.3 체육 행사 조직 구성원 디브리핑 시행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행사 중 발생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기록하여야 하며, 사고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 대비 실제 진행된 내용에 대해 안전 관련 인력에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가. 디브리핑 시행

- 디브리핑이란 체육 행사 주최 및 주관기관의 안전 관련 인력들이 각 위치에서 임무 종료 후 활동 과정을 복기하고 평가하는 회의 또는 절차를 말하며, 체육 행사장 내에서 구역별 이슈 사항, 위험 요인 대응, 개선 필요 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내용 등을 검토하는 과정임
- 디브리핑 참가 대상은 다음과 같음
 - ▷ 디브리핑 회의 진행은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시행함
 - ▷ 디브리핑 참가 대상은 안전 요원·보안 요원·시설관리 주체·의료요원 등이 있으며, 참여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 행사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가 설정함
 - ▷ 디브리핑에 참가해야 하는 인력 대상 ‘디브리핑 시행 일시, 장소’에 대한 안내는 사전에 이뤄져야 하며, 디브리핑 시 보고 되어야 하는 이슈 사항에 대해 교육해야 함
- 디브리핑에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디브리핑은 14.2항의 ‘가.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서 시행한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구역별 보고자와 해당 이슈 사항을 복기하며, 필요시 사후·중장기 조치를 위한 개선 사항을 논의함

- ▷ 점검결과 내용 이외에도 놓치는 사항이 없도록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구역별 인력의 모든 이슈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수집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의료요원, 경기 감독관 등이 작성하는 ‘사고 보고서’ 및 ‘처치 기록표’ 등에 대한 자료 수집도 필수적임
- 디브리핑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62. 디브리핑 결과 보고서 작성 양식 예시

디브리핑 결과 보고서 주요 목록	
• 회의 일시	00년 00월 00일 00시
• 회의 장소	00기관 00회의실
• 회의 참석자	안전관리책임자 000, 안전관리자 000, 안전요원 등등
 • 체육 행사 중 경기구역/경기 외 구역 주요 상황 보고(위험 요인 상/중/하 순서에 따라) • 차기 행사 반영 논의(부서별 피드백)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체육 행사 후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15.0 체육 행사 안전관리 현황 종합 검토

- 15.1 체육 행사 안전 관련 자료 수집
- 15.2 안전관리 주요 이슈 분석

16.0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

- 16.1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16.2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1) 개요
- 16.3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1) 구조

- 16.4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1) 기대가치



체육 행사 후 체크리스트

15.1 체육 행사 안전 관련 자료 수집 231

가. 안전관리계획 이행 수준 평가

- 행사 종료 이후, 사전에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계획 대비 실제 운영 일치 정도와 미흡한 사항을 분석했는가?

-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계획에 명시된 안전조치가 실제로 수행됐는지 확인했는가?

15.2 안전관리 주요 이슈 분석 232

- 가. 안전관리 주요 이슈
분석 방법**
- (사고 발생 시) 상황발생~상황해제까지의 모든 사항들에 대해 문서화하였는가?
-
- 안전관리계획서,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안전요원 상시적 제안 의견, 체육 행사 디브리핑 결과보고서, 행사 참여자 피드백(설문조사 및 SNS 등), 사고보고서(의무실 응급처치 기록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관리 주요 이슈를 분석했는가?
-
- 안전관리 이슈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도와 발생 빈도를 평가했고, 심각도와 빈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지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했는가?
-
- 나. 차기 체육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 체육 행사가 종료된 후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활동과 발생한 위험 요인, 사건/사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했는가?
-
-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개선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차기 대회를 위한 예산, 물자 및 인력 확보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했는가?
-
- 다. 안전예산 집행 내용
검토**
- 체육 행사 개최 시, 수립한 안전관리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을 비교 분석하고 예산 내역 중 안전관리 주요 이슈를 반영하여 차기 체육 행사 안전관리 예산 항목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 여부를 검토했는가?



15.0

행사 후

체육 행사 안전관리 현황 종합 검토

-
- 체육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활동과 발생한 위험 요인, 사고·사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함
 - 이를 통해 행사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의 취약점과 개선점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후 검토와 개선 방안 수립 절차는 차기 체육 행사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법령 및 관련 지침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15.1 체육 행사 안전 관련 자료 수집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참여자가 모두 퇴장하고 체육 행사가 종료되면, 안전관리 인력, 안전관리 물자 및 참여자 밀집 방지 계획 등 행사 안전관리 내용에 대해 안전관리 내용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내용은 세부 항목별로 문서로 작성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체육 행사 진행에 반영되어야 함

가. 안전관리계획 이행 수준 평가

- 관중을 포함하여 모든 참여자의 철수를 통해 안전한 행사의 종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본 매뉴얼에서는 3.1항의 ‘다. 체육 행사 일정’에 언급한 대로, 체육 행사 종료 시점을 공식 경기나 폐회식이 끝난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 안전요원이 퇴장한 시점 이후로 설정함
- 따라서, 행사 종료 이후에 사전에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계획 대비 실제 운영의 일치 정도와 미흡 사항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계획 대비 실제 운영 비교는 14.1항의 “가. 체육 행사 중 안전점검”에서 언급한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계획에 명시된 안전조치가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완전 이행·부분 이행·미이행으로 구분 평가를 할 수 있음
-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체육 행사가 계획한 바와 같이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문 등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도록 이행 수준이 평가되어야 함
- 부분 이행 및 미이행했던 사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개선안 도출까지 구체적 보완책 마련을 논의해야 함

15.2 안전관리 주요 이슈 분석

- 체육 행사 종료 시, 체육 행사 전·중·후의 안전관리 내용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체육 행사 안전관리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이를 확인해야 함

가. 안전관리 주요 이슈 분석 방법

- 체육 행사 전·중·후의 안전점검 결과와 행사 운영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문서 및 매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관리 주요 이슈를 분석해야 하며, 주요 이슈 분석에 활용되는 문서 및 매체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 안전관리계획서
 - △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 △ 안전요원의 상시적 제안 의견
 - △ 체육 행사 디브리핑 결과보고서
 - △ 행사 참여자 피드백 (설문조사, SNS, 홈페이지 등)
 - △ 사고발생 관련 문서 일체(사고보고서, 응급처치 기록지, 보험청구내역 등)
- 안전관리 분석은 계획 미흡, 인력 및 물자 부족, 위험구역 관리 및 대응 절차 미흡 등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동일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함 특히, 체육 행사 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황발생부터 상황해제까지의 모든 결정, 조치사항 등 전 과정에 대한 결과물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함
- 해당 이슈가 안전에 미친 영향의 심각도(경미/중대/심각)와 발생 빈도를 평가해야 하며, 심각도와 빈도가 높은 항목은 우선 개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나. 차기 체육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 체육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활동과 확인한 위험 요인, 사고·사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함
- 이를 통해 행사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상의 취약점과 개선점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체육 행사 종료 후 작성·수집된 모든 안전 관련 문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는 것을 권고함
- 문서의 신뢰성과 공식성을 확보하고, 차기 행사 계획 수립 및 유사 사례 대응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수집된 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선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며 차기 대회를 위한 예산, 물자, 인력 확보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다. 안전예산 집행 내용 검토

-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체육 행사 예산 중 안전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실제 집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체육 행사 개최 시 수립한 안전관리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을 비교 분석하고 예산 내역 중 안전관리 주요 이슈를 반영하여 차기 체육 행사 안전관리 예산 항목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0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
- 국내 체육 행사는 대형화·다변화되며 국민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는 달리, 체육 행사/종목의 다양화, 다중 인파의 밀집 등 안전사고의 잠재적 위험 또한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단편적·사후적 대응 중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선제적 위험예방과 조직적 관리체계의 부재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재단은 상단에서 기술한 대로 체육 행사 운영자가 행사 개최 전·중·후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을 구축·보급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매뉴얼의 존재만으로는 현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이를 시스템 및 규격으로 체계화하고, 외부 검/인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은 이러한 매뉴얼의 내용을 제도적인 틀 안에 정착시켜, 체육 행사 개최자가 지속적으로 개선·활용·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향후 모든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16.1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체육 행사 내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⁶⁹⁾. 국내 체육 행사는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사후적 대응 중심의 관리가 주를 이루는 것이 현 실정임
- 2025년 3월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구조물 추락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체육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었으며,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근 사고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직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선진적 안전경영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을 시사함

69) 스포츠안전재단, 『제3차 스포츠행사 안전사고 통계연보(2019~2023)』.

16.2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1) 개요

- KSSF20211은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체계화·표준화하기 위해 마련된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체육 행사(대회) 운영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각종 전국 단위 및 단일 스포츠이벤트에 적용 가능하며, 인증을 통해 주최기관은 공신력 확보, 위험관리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가. KSSF20211의 정의와 목적

-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1)은 국내 체육단체에서 개최하는 체육 행사와 이에 참여하는 선수, 관중 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내 유일의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임
- 표준(매뉴얼/절차서/가이드)을 구축하고, 해당 내용을 국내 체육 행사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 주최/주관 단체의 ‘표준화된’ 안전관리 능력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함

나. KSSF20211의 개요

-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1)의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63. KSSF20211 기본 사항

구 분	내용
적용대상	국내 체육단체에서 개최(주최/주관)하는 모든 스포츠이벤트(체육 행사/대회)
목표	국내 체육 행사 개최에 필요한 안전관리의 ‘표준 [*] ’ 구축 및 적용 ※ 유효기간: 3년 * 매뉴얼(1종)/절차서(7종)/가이드(1종)
참여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경영방침 수립, 최종 문서 승인 등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위험성평가(점검), 교육, 문서 작성/검토 등
절차	기관 선정 → 컨설팅(3회) → 심사(2회: 서류 및 현장) → 심의 및 인증 (컨설팅) 재단 소속 컨설턴트 방문, 신청기관의 문서(매뉴얼/절차서/가이드) 구축 지원 (심사) 심사(검/인증) 전문 기관의 문서 적합성, 현장 적용도 등 확인
비용	조건부 무료 ※ 세부 내용은 재단 문의

- 위에서 언급한 절차의 인증사업 각 단계별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음

표 64. KSSF20211 기본 사항

구분	세부내용
1. 인증사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포츠안전재단(안전경영시스템 인정기관) 사업 공고 실시(공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소개/안내문/신청서 포함 배포 ②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국내 체육단체 신청접수 및 최종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2명 매치/시간 할애 필수 - 연간 기관 주최/주관 행사 5개 이상 - 재단 안전관리 사업 활용(교육, 점검, 요원매칭, 공제 등)
2. 인증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단에서 양성/위촉한 '스포츠안전 컨설턴트' 기관 사무실 방문 ② 시스템에서 규격화 하고 있는 문서 생성을 위한 컨설팅 실시(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매뉴얼 1부 생성(인증범위 설정, 규격이해 등) • 매뉴얼 내 항목별 절차서 총 7부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예지 및 후속조치 관련 절차서 - 목표 및 추진계획 관련 절차서 - 교육훈련 및 자격 관련 절차서 -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절차서 - 문서관리 절차서 - 비상시 대비 및 대응 관련 절차서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내부심사 관련 절차서 • 인증범위 개수별 안전가이드 생성 ③ 인증심사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모의심사 실시
3. 1차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포츠안전재단(안전경영시스템 인정기관)에서 계약한 ISO 전문심사기관 심사원 2명 기관 사무실 방문 ② 서류기반 문서심사 실시(문서 구성의 적정성 검토 등)

구분	세부내용
4. 2차 현장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포츠안전재단(안전경영시스템 인정기관)에서 계약한 ISO 전문심사기관 심사원 2명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스포츠이벤트 현장 방문 ② 문서 내 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 내용 현장 적용 여부 확인, 심사 (안전경영방침 게시, 안전요원 배치, 응급차 위치 등) ③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 등 안전 관련 인력 현장 인터뷰 ④ 서류+현장심사 내용 종합 및 심사결과 안내
5. 인증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사기관 → 인정기관 심사결과보고서 송부 ② 재단 사업담당부서 인증심의 및 확정
6. 인증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정기관 → 시스템 구축기관 최종 인증결과 발송(공문) ② 인증 수여식 실시(시스템 구축기관 + 인정기관 + 심사기관)
7. 사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증 획득(인증 수여식 일자 기준) 후 1년 도래시점에 스포츠안전재단(안전경영시스템 인정기관)에서 계약한 ISO 전문심사기관 심사원 2명 기관 사무실 방문 ② 1년 간 진행했던 안전경영시스템 결과물 및 추진사항 심사 인증유지를 위한 개선사항 도출
8. 갱신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초 인증 획득 후 3년 도래시점에 최초 인증 심사 시 진행했던 1차(서류), 2차(현장) 심사 실시 ② 인정기관에서 인증심의 및 인증갱신 여부 확정

16.3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 구조

- KSSF2021은 매뉴얼, 절차서, 가이드 등 문서 계층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관리 활동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규정하여 일관성과 실행력을 보장하고 있음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의 핵심 기준과 절차를 인증 규격 내 문서 체계에 반영함으로써, 현장 적용성과 제도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음

가. 서류별 세부사항

표 65. 서류별 세부사항

구 분	내용	비고
매뉴얼(1종)	시스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위 문서	
절차서(7종)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실행규칙	
가이드(1종)	체육 행사(대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

나.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의 안전관리 요구사항

표 66. 서류별 세부사항

구 분	번호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 주요 요구사항
4. 조직상황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 관련 법/제도 분석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이 지켜야 할 대상 범위 설정 안전관리에 있어 협조가 필요한 기관 범위 설정
5. 리더십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의 안전경영방침 수립 및 게시/공유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안전 관련 조직체계 수립 및 게시/공유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임직원 및 스포츠이벤트 단기인력 대상안전경영시스템 내용숙지 및 직/간접적 참여
6. 기획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부문 SWOT 분석 위험예지 활동 및 후속조치 절차서 수립
	6.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예지 활동(안전점검, 위험성 평가 등) 2) 활동 결과에 따른 감소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및 추진계획 절차서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스포츠안전 목표, 추진방향 설정 2) 안전경영시스템 추진계획표 수립 및 공유
7. 지원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임직원 및 단기인력 등 스포츠이벤트 관련 대상 스포츠안전교육 계획수립/이수/결과검토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이벤트별 안전사고 데이터(설문조사 등) 및 사고대처방안 정리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경영시스템 주요의견 정리(내용변경 관련 요청사항 등)
8. 운용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절차서/가이드 및 기관별 안전 관련 규정 통합적 문서관리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스포츠이벤트 전체 안전가이드 수립/적용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이벤트 내 발생 가능한 비상대피/대응 체계 구성 비상대피/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게시/공유 기관 임직원 및 단기인력 대상 비상대피/대응 모의훈련 실시/평가/개선
9. 성과평가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내부심사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의 안전경영시스템 경영검토
10. 개선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운영현황, 실적, 모니터링, 평가, 경영검토 등을 반영한 지속적인 KSSF2021 개선

다. 안전경영시스템과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은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차원의 시스템적 기틀을 의미함
- 본 매뉴얼은 단일 체육 행사 단위의 실행 매뉴얼로 설명할 수 있음
- 따라서 매뉴얼을 활용하여 체육 행사를 운영하는 실천과 평가의 과정은 인증 시스템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인증 체계가 다시 매뉴얼 작성과 실행의 기준이 되는 순환적 강화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음

16.4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 기대가치

- 인증 획득을 통해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개최자에게 신뢰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체육 행사(대회) 운영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음
- 표준화된 안전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체육 행사(대회) 운영 노하우를 축적·확산할 수 있으며, 단일 이벤트를 넘어 국내 스포츠 전반에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음

가. 기대효과

-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인력 및 예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참가자 및 관중을 대상으로 체육 행사(대회) 개최 시 무엇보다도 ‘안전’을 중요시 한다는 책임 있는 단체로 인식 가능하도록 함
-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청기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부에 대한 규격화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

나. 이점 및 장점

- 절차 간소화에 따라 구축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고, ISO와 동일한 형태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인증 구축 후에도 인정기관(스포츠안전재단)으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음

별첨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체육행사명

2025. 0. 0.

기관 로고

※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체육행사 개요	00
1. 개요	00
2. 주요 일정	00
3. 개최 장소 및 주요 시설	00
II.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	00
1. 체육행사 안전관리 조직	00
2. 안전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00
3.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운영 계획	00
4. 관계기관 협조	00
III. 상황별 안전사고 대책	00
IV. 안전관련 예산 편성내역	00
1. 안전예산 개요	00
2. 안전관련 예산내역	00
참고	00

I 체육행사 개요

① 개 요

■ 행사명: 제0회 ○○종합체육대회

■ 행사기간: 2025. 0. 0.(-) ~ 0.(-)

- 식전행사: 2025. 0. 0.(-) 00:00

- 개회식: 2025. 0. 0.(-) 00:00

- 폐회식: 2025. 0. 0.(-) 00:00

■ 행사장소: ○○종합운동장 등 00개 경기장

■ 주최/주관/대행사

- 주최: ○○○(대표 ○○○ / 연락처 000-0000-0000)

- 주관: ○○○(대표 ○○○ / 연락처 000-0000-0000)

- 대행사: ○○○(대표 ○○○ / 연락처 000-0000-0000)

■ 안전인력

- 안전관리책임자: ○○○(소속 / 연락처 000-0000-0000)

- 안전관리자: ○○○(소속 / 연락처 000-0000-0000)

※ 안전관리책임자: 주최기관 책임자

※ 안전관리자: 주최/주관기관 담당자(2명 이상)

■ 참가인원: 0명

- 참가자 0명, 선수단 0명, 심판 0명, 운영인력 0명

- 순간 최대 밀집 예상 인원

• 1일 최대 참여 인원: 2025. 0. 0.(-) / 0명

• 1일 최대 참여 시간대: 2025. 0. 0.(-) / 00:00

• 1일 최대 참여 장소: 2025. 0. 0.(-) / 00:00

■ 보험가입: ○○○ (가입액: 0원)

- 대인: 0원 1인당 / 0원 1사고당

※ 재난안전의무보험 법적 요구사항 준수

- 대물: 0원 1사고당

- 참가자 치료비: 0천원 1인당 / 0천원 1사고당

■ 매표방법: 현장예매, 인터넷, 무료

※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요 일정

■ 행사일정 및 시간계획

구분	날짜	시간	내용	비고
식전행사	0. 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개회식	0. 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종목별 경기	0. 0.(-)	00:00~00:00		
	0. 0.(-)	00:00~00:00		
	0. 0.(-)	00:00~00:00		
	0. 0.(-)	00:00~00:00		
	0. 0.(-)	00:00~00:00		
	0. 0.(-)	00:00~00:00		
	0. 0.(-)	00:00~00:00		
	0. 0.(-)	00:00~00:00		
	0. 0.(-)	00:00~00:00		
	0. 0.(-)	00:00~00:00		
	0. 0.(-)	00:00~00:00		
	0. 0.(-)	00:00~00:00		
	0. 0.(-)	00:00~00:00		
	0. 0.(-)	00:00~00:00		

③ 개최 장소 및 주요 시설

■ 주요 시설 * 복수 경기장일 경우 시설별 작성

○ ○ 종합운동장

시설 이미지

○ ○ 축구장

시설 이미지

○ ○ 농구장

시설 이미지

※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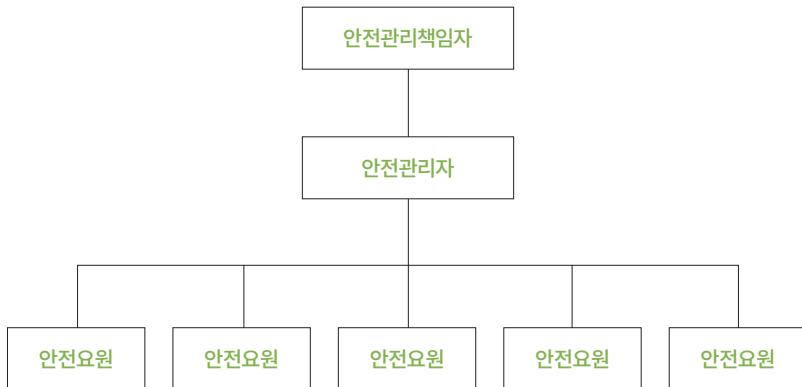
■ 임시 설치물

구분	정면도	규격(m^2)	사용내역(용도)
포토존 (0개)			
체험부스존 (0개)			
무대시설 (0개)			

III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

① 체육행사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 조직도



※ 체육행사 규모, 특성 등 고려하여 안전관리 조직 구성

■ 기능별 임무 * 기능별 관리자만 기재, 세부 인력은 [참고2] 비상연락망 기재

구분	성명	소속/직위	주요 임무	연락처
안전관리책임자	○○○			000-000-0000
안전관리자	○○○			000-000-0000
안전관리	○○○			000-000-0000
보안/경호	○○○			000-000-0000
응급의료	○○○			000-000-0000

※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안전인력 및 안전물자 확보/운영 계획

■ 안전인력 확보 현황

구분	인원	안전인력				책임자(연락처)	비고
		안전	보안	의료	운영		
계	0명	0명	0명	0명	0명		
경기장 내부	0명	0명	0명	-	0명	○○○ 안전관리자 (000-0000-0000)	
주차구역	0명	0명	0명	-	0명		
의료구역	0명	-	-	0명	-		
출입구역	0명	0명	0명	-	0명		

■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안전요원 규모 : 0명

- 주요 배치 위치

구분	안전요원	안전요원 위치	비고
계	0명		
내용	0명	○○경기장 1층 출입구	응급처치 자격
	0명	○○경기장 2층 A-2 관람구역 출입구	
	0명	○○경기장 외부 주차구역	
	0명	○○경기장 1층 경기구역 출입구	

■ 보안요원 배치 계획 * 경비업법 의거 경비원배치신고 대상자만 운영 가능

- 보안요원 규모 : 0명
- 주요 배치 위치

구분	보안요원	보안요원 위치	비고
계	0명		
내용	0명	○○경기장 1층 VIP 대기구역	응급처치 자격
	0명	○○경기장 1층 A-1 출입구역 물품검색대	
	0명	○○경기장 2층 VIP 관람구역	
	0명	○○경기장 2층 관람구역 중앙	

○ 의료요원 배치 계획

- 의료요원 규모 : 0명
- 주요 배치 위치

구분	의료요원	의료요원 위치	비고
계	0명		
내용	0명	○○경기장 1층 중앙 의료구역	간호사
	0명	○○경기장 외부 A-4 앞 의료구역	응급구조사

※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요원 배치 계획

- 운영요원 규모 : 0명
- 주요 배치 위치

구분	운영요원	의료요원 위치	비고
계	0명		
내용	0명	○○경기장 1층 중앙 의료구역	간호사
	0명	○○경기장 외부 A-4 앞 의료구역	응급구조사

■ 안전물자 확보 및 배치 계획

- 안전물자 종류 : 소화기, AED, 경광봉, 안전조끼 등
- 물자현황 및 배치 위치

구분	수량	주요 배치위치 및 지급현황	점검여부	점검자	점검일자
구급차	0개	- ○○경기장 1층 0개 - ○○경기장 2층 0개	✓	○○○ 안전관리자	2025. 0.0.(-)
소화기	0개	- ○○경기장 1층 0개 - ○○경기장 2층 0개	✓	○○○ 안전관리자	2025. 0.0.(-)
AED	0개	- ○○경기장 1층 0개 - ○○경기장 2층 0개	✓	○○○ 의료요원	2025. 0.0.(-)
경광봉	0개	- 00구역 안전요원 0개 - 00구역 보안요원 0개	✓	○○○ 안전관리자	2025. 0.0.(-)
무전기	0개	- 00구역 안전요원 0개 - 00구역 보안요원 0개	✓	○○○ 안전관리자	2025. 0.0.(-)
안전조끼	0개	- 00구역 안전요원 0개 - 00구역 보안요원 0개	✓	○○○ 안전관리자	2025. 0.0.(-)

■ 안전인력 배치도 * 복수 경기장일 경우 시설별 작성(인력별 색 구분)

○○종합운동장	배치도
○○축구장	배치도
○○농구장	배치도

■ 안전물자(구급차, 소화기, AED) 배치도

* 복수 경기장일 경우 시설별 작성 / 구급차의 경우 대기장소 및 이동경로 표시 필수

소화기 / AED	배치도
구급차	배치도

※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운영 계획

■ 안전교육 운영 계획 * 교육 이수 증빙서류(수료증 등) 별도 관리

- 교육대상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제4항 별표 4의2(체육행사 안전교육)
- 교육시간 : 6시간
- 의뢰기관 : ○○○
- 세부내용

구분	일시	장소	예상 수료인원
1차	2025. 0. 0.(-) 00:00	○○○ 강당	0명

- 교육대상 : 안전요원
-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제4항 별표 4의2(체육행사 안전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의뢰기관 : ○○○
- 세부내용

구분	일시	장소	예상 수료인원
1차	2025. 0. 0.(-) 00:00	○○○ 강당	0명
2차	2025. 0. 0.(-) 00:00	○○○ 강당	0명

- 교육대상 : 운영요원(자원봉사자 등)
- 교육내용 : 체육행사 안전확보를 위한 자체 안전교육 및 각 구역, 임무별 숙지교육
- 교육시간 : 0시간
- 의뢰기관 : ○○○ 및 자체교육
- 세부내용

구분	일시	장소	예상 수료인원
1차	2025. 0. 0.(-) 00:00	○○○ 강당	0명
2차	2025. 0. 0.(-) 00:00	주차구역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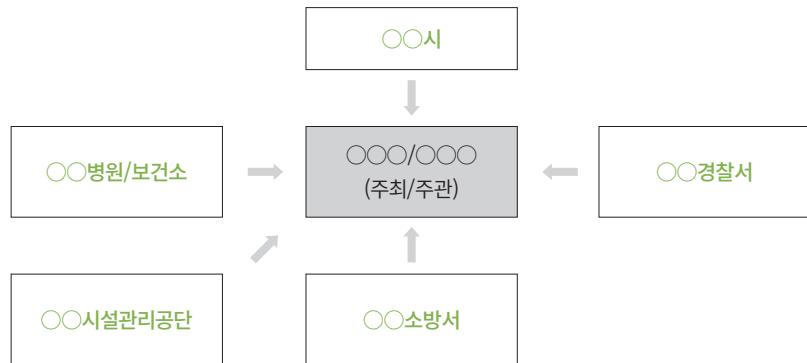
■ 안전점검 운영 계획

구분	점검자	점검시기/주기	점검일시	비고
사전점검 (행사 전)	안전관리책임자	행사 0일 전	2025. 0. 0.(-) 00:00	체육행사 안전점검표
	안전관리자	행사 0일 전	2025. 0. 0.(-) 00:00	체육행사 안전점검표
	주최/주관/ 관계기관 합동	행사 0일 전	2025. 0. 0.(-) 00:00	체육행사 안전점검표
	안전관리자 (서류 확인)	행사 0일 전	2025. 0. 0.(-) 00:00	소방/건축/전기 기 점검 결과서류
운영점검 (행사 중)	안전관리책임자	행사 0일 차	2025. 0. 0.(-) 00:00	체육행사 안전점검표
	안전관리자	행사 0일 차	2025. 0. 0.(-) 00:00	체육행사 안전점검표
외부기관 위탁 점검	○○○	행사 0일 전 (사전)	2025. 0. 0.(-) 00:00	외부기관 점검표
		행사 0일 차 (운영)	2025. 0. 0.(-) 00:00	
개선조치 확인	안전관리책임자	행사 0일 전	2025. 0. 0.(-) 00:00	조치내용 중심
		행사 운영 중	2025. 0. 0.(-) 00:00	
	안전관리자	행사 0일 전	2025. 0. 0.(-) 00:00	조치내용 중심
		행사 운영 중	2025. 0. 0.(-) 00:00	

※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관계기관 협조

■ 관계기관 협조 조직도



■ 관계기관 협조 사항

구분	연락처	협조내용	협조여부	비고
○○시	000-000-0000	교통 협조	✓(유선)	-
○○병원/보건소	000-000-0000	의료요원, 응급차량	✓(공문)	10km (약 5분)
○○소방서	000-000-0000	화재, 재난 상황 시 협조	✓(공문)	7km (약 4분)
○○경찰서	000-000-0000	교통 통제, 범죄 활동	✓(유선)	13km (약 7분)
○○시설관리공단	000-000-0000	체육행사 시설 대관	✓(유선)	2km (약 2분)

※ 협조요청 완료된 내용 반드시 문서 또는 증빙자료 보유

III 상황별 안전사고 대책

※ 체육행사 특성, 사고 유형 등 고려, 상황별 구분하여 작성

① 다중운집 인파사고

■ 다중운집 인파사고 방지 방안

- 사고 유형 :
- 예상되는 병목 구간 :
- 예방 대책 :
- 단계별 추진 방안 :
- 안내방송 시나리오(안) :

■ 다중운집 인파사고 발생 시 조치 계획(대책)

-
-
-
-

② 응급환자

○ 응급환자 방지 방안

- 사고 유형 :
- 예방 대책 :
- 단계별 추진 방안 :
- 안내방송 시나리오(안) :

○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계획(대책)

-
-
-

※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연재난 (○○)

※ 폭염, 황사, 지진, 풍수해, 대설, 한파 등 체육행사에 적용되는 주요 자연재난을 고려하여 작성

■ ○○ 방지 방안

- 사고 유형 :
- 예방 대책 :
- 단계별 추진 방안 :
- 안내방송 시나리오(안) :

■ ○○ 발생 시 조치 계획(대책)

-
-
-
-

④ 사회재난 (○○)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미세먼지, 감염병 등 체육행사에 적용되는 주요 사회재난을 고려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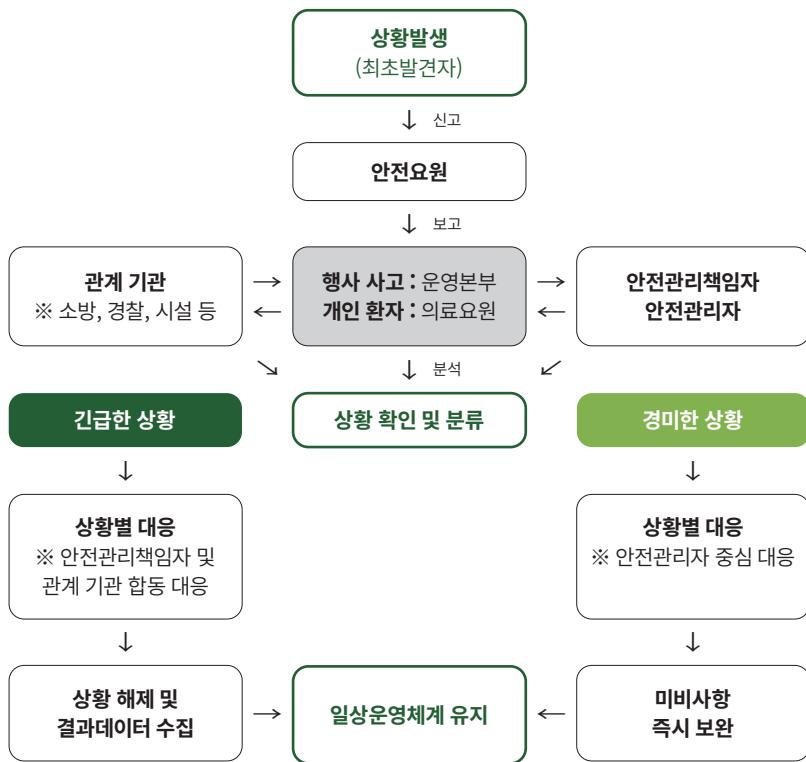
■ ○○ 방지 방안

- 사고 유형 :
- 예방 대책 :
- 단계별 추진 방안 :
- 안내방송 시나리오(안) :

■ ○○ 발생 시 조치 계획(대책)

-
-
-
-

⑤ 안전사고 발생 시 소통체계 (예시)



※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안전관련 예산 편성내역

① 안전예산 개요

- 체육행사 전체 예산대비 안전예산 비율 : 0% 수준
- 전년도 또는 최근 3개년 대비 안전 예산 편성 주요 변화점
 - ○○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AED 추가 구매
 - ○○ 이슈로 인한 구급차 추가 배치 등

② 안전관련 예산내역

구분	금액	상세내역
인력	안전요원	0원
	보안요원	0원
	의료요원	0원
	운영요원	0원
교육	안전교육	0원
	일반교육	0원
점검	외부기관 점검	0원
안전물품	구급차	0원
	무전기	0원
	조끼	0원
	AED	0원
공제 및 보험		
예비비		

참고1 비상연락망

※ 체육행사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이 포함되도록 작성

※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2 국민체육진흥법 참고사항

[1] 체육 행사 안전교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2])

체육 행사 안전교육(제11조의9제4항 관련)

대상자	교육 내용	교육 시간
1.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방법 나. 참석자 안전대책 수립 및 대피경로 확보 다. 체육 행사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라. 체육 행사 안전점검 방법 및 시기 마. 안전조직 구성 및 인력 선발·교육·배치 바. 체육 행사 장소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	6시간 이상
2. 안전요원	가. 체육 행사 개요 나. 역할별 담당 업무 다. 비상 상황 대처 및 응급처치 방법	1시간 이상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13서식]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1. 행사 개요

행사명		체육 행사 개최자	
기간/장소		종목	
참석 예정 인원		안전관리 책임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 일자	점검 결과	조치일자 및 조치사항 ※ 점검결과가 미실시·미흡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① 행사 참석 예정 인원 및 행사 장소·시설 현황 사전 파악		실시 [] 미실시 []	
② 안전관리인력 자정, 업무분장 수립 및 관계자 공유(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 등)		실시 [] 미실시 []	
③ 인파 밀집 예상지역 및 출입로 등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계획 수립		실시 [] 미실시 []	
④ 안전사고 유형별 시나리오 마련 및 대피계획 수립		실시 [] 미실시 []	
⑤ 행사 참여자(행사 운영자, 선수, 관람객 등) 이용시설의 안정성 확인		양호 [] 미흡 []	
⑥ 비상구 개폐 및 비상등 점등 확인		양호 [] 미흡 []	
⑦ 전기실 등 접근 제한 구역의 제한 조치 내용 확인		양호 [] 미흡 []	
⑧ 행사장 내 응급 용품 종류, 규모 및 사용가능 여부 확인		양호 [] 미흡 []	
⑨ 안전 표지판 및 안내물의 적정성 확인		양호 [] 미흡 []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본 매뉴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